# 투자설명서

2016년 9월 7일

(발 행 회 사 명) 주식회사 CMG제약

(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 기명식 보통주 20,000,000주

(모집 또는 매출총액) 52,800,000,000원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2016 년 9월 7일

2. 모집가액: 2,640원(확정)

3. 청약기간: 우리사주: 2016년 11월 02일 (1일간)

구주주: 2016년 11월 02일 ~ 2016년 11월 03일(2일간) 일반공모: 2016년 11월 07일 ~ 2016년 11월 08일(2일간)

4. 납입기일 : 2016년 11월 10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주)CMG제약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6길 14(청담동)

동부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2

대신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6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 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동부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대표이사등의 확인

환 인 서

우리는 당사의 대표이사 및 산고업무담당이사료서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 · 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하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이 투자설명서에 표시된 기재 또는 표시사항을 이용하는 자의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조의2 및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고있음을 확인합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 조에 의한 외감대상법인에 한함)

2016 년 /요월 의 일

주식회사 CMG제약

대표이사

신고업무담당이사 김 상

## 투자설명서 대표이사 확인(20161031)

# 【본 문】

# 요약정보

## 1. 핵심투자위험

[증권신고서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문]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이므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II.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가. 제약 산업의 성장 정체에 따른 위험 정부의 리베이트 규제 강화 및 약가 인하 등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지속되고 있어 제약산업 전반의 성장은 정체될 수 있습니다.
	나. 정부 규제 심화에 따른 위험 최근 제약 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로 영업환경이 위축된 상황이며, 향후에도 제약 산업은 정부 의 주요 규제에 따라 개별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완제의약품 시장의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시장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 제네릭 의약품 시장의 경우, <b>시장 규모를 고려 시 시장 집중도가 높고,</b> 내수중심의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라. GMP 관련 규제로 인한 설비투자 부담 증가 위험 정부의 선진국 수준 GMP 규정 도입에 따라 제약회사들의 설비투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제약 회사들의 유동성에 부담으로 작용 할 수 있습니다.
사업위험	마. 신약개발 관련 투자비용에 관한 위험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개발은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장기에 걸친 투자 및 연구기간이 소요되 며, 신약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이에 투자된 금액과 시간을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 창출 여부는 불확 실성이 높습니다.
	바. 구강용해필름 신규 사업에 관한 위험 당사가 집중하고 있는 구강용해필름(ODF, Orally Disintegrating Film) 산업의 경우 현재 성장 초기단계로 아직까지 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만큼 시장성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 혁신형 제약기업 미지정에 관한 위험 당사는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하는 <b>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지 못함에 따</b> 라 선정된 제약사 대비 정부지원 혜택이 적으므로 당사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 상품매출 비중 증가로 인한 위험 대체로 수익성이 낮고 불공정 계약조건이 많은 상품 매출의 경우 장기적으로 제약산업 전반의 경 쟁력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며 높은 원가율로 인해 개별 제약사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자. 한미 FTA에 따른 신약 특허권 강화에 관한 위험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로 인한 신약 특허권 강화는 단기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매출액 감소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가. 최대주주 변경 전 회사의 과거 연혁에 관한 위험

당사는 (주)차바이오텍이 최대주주의 지위에 등극하기 이전 잦은 사업내용의 변경 및 대표이사의 변경, 최대주주의 변경 사실과 더불어 1건의 합병 건 및 자금조달 건이 존재함에 따라, 이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우발재무 또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나. 자본감소 위험

당사는 2016년 반기말 현재 자본금 대비 자본총계가 높지 않은 기준입니다. 금번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자본잠식의 우려는 완화될 예정입니다. 다만 유상증자의 확정가액 결정에 따라 자본확충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당사의 수익활동이 악화되어 계속된 적자가 누적될 경우 자본총계감소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 매출액 및 수익성의 감소 위험

당사는 2015년 판매관리비 및 개발비 손상으로 인한 기타비용 증가로 영업적자 및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향후 예상치 못한 약가 관련 정부 규제 또는 정책에 의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라. 매출채권 손상 위험

당사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손충당금 설정을 지속하고 있으나, 일부 부실 거래처들로 인하여 추가적인 매출채권 대손상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대내외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매출 채권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마. 재고자산 진부화 위험

당사의 재고자산 관리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재고자산의 증가로 인한 관리비용 증가 및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적 저하 및 관리의 효율성 저하 시 관련 지표 들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른 위험

당사는 (주)차바이오텍을 모회사로 하는 차병원그룹에 소속되어 있으며, 의약 사업과 관련하여 자회사들 과의 특수관계거래가 있고, **내부통제시스템이 모든 이해상충가능성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 회사위험

#### 사. 개량신약 등 신규 제품에 관한 위험

당사의 아리피프라졸 ODF 등 신규 제품은 출시까지 **예상치 못한 일정 지연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도 단기간에 대규모 매출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 해외 진출과 관련한 위험

당사는 대만, 홍콩 및 마카오 지역 등에 대한 ODF 제품의 판매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에도 수출 비중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 제품들의 해당 국가 내 품목허가 승인 시기 및 향후** 매출 규모와 그로 인한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 자. 시설 투자와 관련한 위험

당사는 현재 신규 시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향후 업황의 변화에 따라 현재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신규 공장의 준공 및 인증 취득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생산 및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차. 연구개발비와 관련한 위험

당사는 표적항암제 신약 등의 개발을 진행중이나, 모두 비임상 진입 전으로서 실질적인 수익창출로 연결되기 까지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함에 따라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추가적인 연구개발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카. 무형자산과 관련한 위험

향후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제품이 성공하여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개발비 상각비가 증가할 수 있으며, 무형자산으로 자산화한 품목의 개발이 실패할 경우, 무형자산 손상차손이 발생함에 따라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타. 행정처분 및 소송으로 인한 위험

당사는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리베이트 혐의와 관련하여 2011년 및 2015년 각각 두차례에 걸쳐 과징금 및 2014년 1차례의 벌금을 부과받은 전례가 있으며, 향후에도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하여 소송 또는 행정처분 등의 사건이 발생 시 당사 영업활동 및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파. 연구개발인력 유출에 관한 위험

당사의 핵심인력 유출과 이로 인한 기술유출이 발생 시, 당사의 경쟁력이 하락하여 영업활동 및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가. 유상증자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관한 위험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이 향후 추가 상장될 경우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나. 실권주 발생시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차바이오텍은 보유 지분율에 해당되는 만큼 구주주 청약에 참여할 예정이며, 초과청약에도 참여할 예정이나, 최총 참여 여부는 (주)차바이오텍의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확정될 것입니다. 한편, 실권주가 발생하여 인수회사가 잔액인수 시 주식을 조기에 장내에서 대량 매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일시적인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다. 환금성 제약 위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투자위험

#### 라. 집단소송 관련 위험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 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 마. 금융감독기관의 관리감독 관련 위험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 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바. 증권신고서 기재 정정 및 일정 변경 관련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사. 투자위험요소 이외 기타 위험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한편, 기재사항은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원,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20,000,000	500	2,640	52,800,000,000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E 동부증권	기명식보통주	14,000,000	36,960,000,000	<ul> <li>▶대표주관수수료: 1억원(정액)</li> <li>▶ 기본수수료: (모집총액 x 1.8% - 대표주관수수료) × 70%</li> <li>▶ 추가수수료: 잔액인수금액 x 15.0%</li> </ul>	잔액인수
인수	: 대신증권	기명식보통주	6,000,000	15,840,000,000	<ul><li>▶ 기본수수료: (모집총액 x 1.8% - 대표주관수수료) × 30%</li><li>▶ 추가수수료: 잔액인수금액 x 15.0%</li></ul>	잔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16년 11월 02일 ~ 2016년 11월 03일	2016년 11월 10일	2016년 11월 07일	2016년 11월 09일	2016년 09월 27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급 액					
운영자금	13,800,000,000					
시설자금	39,000,000,000					
발행제비용	1,111,014,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 행사가격 행사기간						
-	_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_	_	_	_	_		

【주요사항보고서】	
	1) 금번 주식회사 CMG제약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 증자의 대표주관회사는 동부증권(주), 인수회사는 대신증권(주) 입니다.
	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I.5. 인수 등에 관 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모집가액은 예정가액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

약 초일(2016년 11월 02일(수)) 3거래일 전(2016년 10월 28일(금))에 확정되어 2016년 10월 31일(월)에 (주)CMG제약 홈페이지(www.cmgpharma.co.kr)를 통해 공고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 4) 상기 모집금액 및 발행제비용은 확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5)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의 청약기일이며,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기일은 2016년 11월 02일(수)이며, 일반공모의 청약기일은 2016년 11월 07일(월) ~ 2016년 11월 08일(화) (2영업일간) 입니다. 일반공모 청약공고는 2016년 11월 7일(월)에 (주)CMG제약홈페이지(www.cmgpharma.co.kr) 및 한국경제신문을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6) 일반공모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동부증권(주) 및 인수회사 대신증권(주)의 본·지점, 홈페이지, HTS 및 MTS에서 가능합니다. 단,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실권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일반에게 공모하지 않고,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 7)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명령 등에 따라 본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9)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타】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1. 공모개요

(단위:원,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20,000,000	500	2,640	52,800,000,000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주1) 이사회결의일: 2016년 08월 17일

주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확정된 금액입니다.

공모가격의 결정방법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3. 공모가격 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16년 08월 16일)을 기산일로 하여 아래의 산출 근거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16년 11월 02일)전 3거래일(2016년 10월 28일)에 확정되어 2016년 10월 31일 (주)CMG제약 홈페이지(http://www.cmgpharma.co.kr)에 공고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습니다.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 ■ 최종 발행가액 산출 근거

####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09월 27일) 전 제3거래일(2016년 09월 22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 및 증자비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상기 방법에 따라 산정된 1차 발행가액은 참고용이며, 구주주 청약일 초일 전 3거래 일에 확정발행가액을 결정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 [1차 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 2016년 09월 22일) (단위: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2016-09-22	4,400	4,737,885	20,570,879,135
2016-09-21	4,140	1,786,813	7,409,288,220
2016-09-20	4,220	2,181,000	9,331,978,655
2016-09-19	4,250	2,309,055	9,888,644,110
2016-09-13	4,250	4,435,959	18,423,719,800
2016-09-12	3,940	899,686	3,543,280,350
2016-09-09	3,955	1,455,943	5,838,974,760
2016-09-08	4,000	1,829,544	7,286,040,215
2016-09-07	4,060	828,479	3,372,048,540
2016-09-06	4,070	736,058	2,971,696,720
2016-09-05	4,040	887,270	3,610,831,160
2016-09-02	4,035	699,836	2,821,002,080
2016-09-01	4,000	1,079,418	4,301,536,345
2016-08-31	3,895	962,880	3,767,451,230
2016-08-30	4,015	877,004	3,495,679,360
2016-08-29	3,915	1,121,905	4,459,366,715

일자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2016-08-26	4,090	1,438,710	5,811,353,815
2016-08-25	4,020	1,052,932	4,249,211,990
2016-08-24	4,025	1,072,232	4,330,656,885
2016-08-23	4,050	1,656,227	6,696,583,645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A)	4,124	<del>-</del>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B)	4,285	-	
기산일 가중평균주가 (C)	4,342	_	
(A),(B),(C)의 산술 평균 (D)	4,250	(A + B + C) / 3	
기준주가 (E)	4,250	(C와 D중 낮은가액)	
할인율 (F)	25%	-	
증자비율 (G)	0.22546073	_	
예정 발행가액(호가단위 미만 절상)	3,020	Ex (1-F) / (1+(Gx F))	

##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근거

구주주청약 초일(2016년 11월 02일) 전 제3거래일(2016년 10월 28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구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 2차 발행가액 산정표 (2016. 10. 24~2016. 10. 28) ]

(단위:원,주)

일수	일자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1	2016-10-28	3,370	3,426,094	12,050,379,520
2	2016-10-27	3,705	4,650,906	17,661,746,980
3	2016-10-26	3,620	1,704,809	6,195,383,225
4	2016-10-25	3,560	2,750,379	9,765,309,545
5	2016-10-24	3,540	2,290,917	8,501,859,420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A)		3,655원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3,517원		

일수	일자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A,B의 산술평균(C)		3,586원	[(A)+(B)]/2		
기준주가[Min(B,C)]		3,517원	(B)와 (C)중 낮은 가액		
할인율		25.0%			
2차 발행가액		2,640원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		

##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 조의2에 의거 산정한 가격 산정표] (2016. 10. 26~2016. 10. 28)

(단위 : 원, 주)

일수	일자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1	2016–10–28	3,370	3,426,094	12,050,379,520
2	2016–10–27	3,705	4,650,906	17,661,746,980
3	2016–10–26	3,620	1,704,809	6,195,383,225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A)		3,675		
할인율		40%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 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2,205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은 상위 호가단위로

▶ 확정 발행가액 = Max {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구분	발행가액
1차발행가액	3,020원

구분	발행가액
2차발행가액	2,640원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 주가의 60%(호가단위 절상)	2,205원
확정발행가액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 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2,640원

≫ 이에 따라 최종발행가액은 2,64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일자	증자 절차	비고	
2016-08-17	이사회결의	- 발행주식수 및 배정비율, 예정 모집가액 등 결정	
2016-08-17	증권신고서 제출	-	
2016-08-18	신주발행 및 명의개서 정지 공고	- (주)CMG제약 홈페이지(http://www.cmgpharma.co.kr)	
2016-09-22	1차 발행가액 확정	-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전	
2016-09-26	권리락	-	
2016-09-27	신주배정 기준일	- 주주 확정 기준일	
2016-09-28 ~2016-10-06	주주명부 폐쇄	_	
2016-10-10	신주배정 통지	-	
2016-10-18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및 거래	- 5영업일간 거래	
2016-10-25	신주인수권증서 상장폐지	-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전 폐지	
2016-10-28	확정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전	
2016-11-01	발행가액 확정 공고	- (주)CMG제약 홈페이지(http://www.cmgpharma.co.kr)	
2016-11-02	우리사주조합 청약	_	
2016-11-02 ~ 2016-11-03	구주주 청약	_	
2016-11-07	일반공모 청약 공고	- (주)CMG제약 홈페이지(http://www.cmgpharma.co.kr) - 한국경제신문	
2016-11-07 ~2016-11-08	일반공모 청약	_	
2016-11-10	주금 납입 / 환불	-	
2016-11-18	주권 교부 예정일	_	

일자	증자 절차	비고
2016-11-21	신주 상장 예정일	-

주)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유상증자 방식

본 유상증자의 방식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입니다. 주주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1항 1호에 의거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1주당 0.21869690주의 비율로 배정하되,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주주 청약 미달에 따른 실권주 및 단수주가 발행하는 경우 실권주 및 단수주의 합계 주식(이하 "일반공모 배정분"이라 합니다)은 일반청약자에게 일반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일반공모 청약 후 잔여주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잔여주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인 동부증권(주) 및 인수회사인 대신증권(주)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①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를 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중략...)

- ② 주권상장법인은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을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가 인수인으로서 그 실권주 전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체결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의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 당시에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주주 간의 별도의 합의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하는 때에는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를 초과하는 내용의 청약(이하 이 호에서 "초과청약"이라 한다)을 하여 그 초과청약을 한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그 실권주를 배정하기로 하는 경우. 이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주식수를 초과할 수 없다.

## (...중략...)

-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 등의 이익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2.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후략)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

- ① 법 제165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제5~18조제3항을 준용한다.
- 1. 법 제165조의6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100분의 40
- 2. 법 제165조의6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100분의 10
- 3.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100분의 30
- ② 영 제176조의8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수요와 투자성향 등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한다.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상장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주주배정증자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하는 때에는 법 제165조의6제3항 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할 금융투자업자(주권상장법인과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정하여야 한다.
- ③ 영 제176조의8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및 유통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이란 금융투자업자가 회사 내부의 주문· 체결 시스템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투자자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유선·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할 투자자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탐색하는 것을 포함한다.

## 2. 공모방법

[공모방법: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모 집 대 상	주 수(%)	비고
우리사주조합 청약	600,000주(3.0%)	<ul><li>-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에 의거 3.0% 우선 배정</li><li>-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16년 11월 02일</li></ul>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19,400,000주(97.0%)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0.21869690주 - 신주배정 기준일 : 2016년 09월 27일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가능(구주주에게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수량만큼의 신주인수권 증서가 배정됨)
초과 청약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②조 2항에 의거 초과청약 - 초과청약비율: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 -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 가능 - 구주주청약일에 초과청약 접수
일반모집 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 우리사주 및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에 대해 배정됨
합 계	20,000,000주(100%)	-

- 주1)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 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 주2) 총 발행예정주식(20,000,000주)의 3.0%에 해당하는 600,000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합니다. 증 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의 설립되지 않은 상황이나 청약일 이전까지 설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주3)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21869690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 주4)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의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동 주식수에 초과청약비율(20%)를 곱한 수량을 한도로 초과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 ①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 ②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 ③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 주5) 우리사주조합 청약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 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우선 배정하며,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 한투자언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 ① 1단계: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각 청약자에 5시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90 %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 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 ② 2단계: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1주씩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 주6)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합니다.

주7) 단,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 제38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은 같은 법 제165조의7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제1항의 법인 외의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모집 등을 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할수 있다.

##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구 분	상세내역
A. 보통주식수	88,707,244
B. 우선주식수	-
C. 발행주식총수 (A+B)	88,707,244
D. 자기주식수 + 자기주식신탁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88,707,244
F. 유상증자 주식수	20,000,000
G. 증자비율 (F/C)	22.546073%
H.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F× 3%)	600,000
I. 구주주 배정주식수 (F-H)	19,400,000
J.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I/E)	0.218696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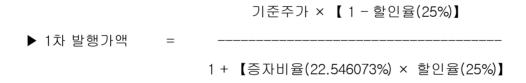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 발행가액 산정 방식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09월 27일) 전 제3거래일(2016년 09월 22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청약 초일(2016년 11월 02일) 전 제3거래일(2016년 10월 28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 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 {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④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 초일(2016년 11월 02일) 전 제3거래일(2016년 10월 28일)에 확정되어 2016년 10월 31일(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주)CMG제약 홈페이지(http://www.cmgpharma.co.kr)에 공고하여 개별 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항목		내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20,0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
구당 보답가락 또는 매물가락	확정가액	2,640원
ロンジャル ルマギッ	예정가액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확정가액	52,800,000,000원
		1) 우리사주조합

항목			내용			
		-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청약한도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로 합니다.  2) 구주주 -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 단위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개인별 청약한도는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와 초과청약가능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 입니다. 다만,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일반공모 - 최소청약 단위를 50주로 하며,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합니다. 또한, 청약한도를 초과				
	청 약 단 위			중도 배성군 의 100%임취 대도 합니다. 또한, 성각한도를 소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sup>1</sup> 분	청약단위	
			50주 이상	100주 이하	50주 단위	
			100주 초과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 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1,000,000 주 이하	100,000주 단위	
			1,000,000 주 초과 500,000주 단위		500,000주 단위	
	OJUT.	개시일		2016년 11월 02일	일	
	우리사주배정	종료일		-		
처아기이	구주주배정	개시일	2016년 11월 02일			
청약기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종료일	2016년 11월 03일			
	개시일		2016년 11월 07일			
일반모집 또는 매출		종료일		2016년 11월 089	밀	
우리사주			청약금액의 100%			
청약증거금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금액의 100%			
일반모집 또는 매출		청약금액의 100%				
	납 입 기 일		2016년 11월 10일			
배당기산일(결산일)		2016년 01월 01일				

주)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분	공고일자	공고방법
신주 발행 및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공고	2016년 08월 18일	(주)CMG제약 홈페이지 - http://www.cmgpharma.co.kr
발행가액 확정 공고	2016년 11월 01일	(주)CMG제약 홈페이지 - http://www.cmgpharma.co.kr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	2016년 11월 07일	한국경제신문 (주)CMG제약 홈페이지 - http://www.cmgpharma.co.kr 동부증권(주) 홈페이지 - http://www.dongbuhappy.com 대신증권(주) 홈페이지 - http://www.daishin.com
실권주 일반공모 배정공고	2016년 11월 09일	동부증권(주) 홈페이지 - http://www.dongbuhappy.com 대신증권(주) 홈페이지 - http://www.daishin.com

주) 청약결과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 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2) 청약방법

- ① 우리사주조합 청약: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대표주관회 사에서 일괄 청약합니다.
- ②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초과청약: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 ④ 일반공모 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각 청약처별로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합니다.
- ⑤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⑥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 ⑦ 기타

- a.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한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단, 구주주가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받는 주식을 청약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 및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펀드의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 b. 1계좌당 청약(배정)한도를 초과하는 청약 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c.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명의에 의해 청약해 약 합니다.

#### ⑧ 청약한도

a.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한도는 우리사

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로 합니다.

- b.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수에 신주배정비율(주주 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합니다)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합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 변동으로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한다.).
- c. 일반모집의 청약단위는 최소 청약단위를 50주로 합니다. 일반모집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3) 청약취급처

- a. 우리사주조합: 동부증권 주식회사 본· 지점
- b.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동부증권 주식회사 본·지점
- c. 구주주 중 명부주주 : 동부증권 주식회사 본· 지점
- d. 일반공모 청약자 : 동부증권 주식회사 및 대신증권 주식회사 본· 지점

### (4) 청약결과 배정방법

- ① 우리사주조합 청약: 모집주식수의 3.0%인 60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하되,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 만큼 배정합니다.
- ②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09월 27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21869690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③ 초과청약: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 ④ 일반공모 청약: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고, 이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는 5%를 우대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취급처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배정")합니다.
-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제 2조 제4항에 따른 인수의무비율에 따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iii) 단,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 (5)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의무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모두 부담합니다.

- ②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 i) 교부장소: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본·지점
- ii) 교부방법 및 일시

구분	교부방법	교부일시
우리사주조합 청약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 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	해당사항 없음
구주주 청약자	1), 2), 3)을 병행 1) 등기우편 송부 2) 동부증권의 본· 지점 교부 3) 동부증권의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1) 우편송부시: 구주주 청약일 초일인 2016년 11 월 02일 전 수취 가능 2) 동부증권의 본· 지점: 청약종료일 (2016년 11 월 03일)까지 3) 동부증권의 홈페이지 또는 HTS 교부: 청약종 료일 (2016년 11월 03일)까지
일반 청약자	1), 2)를 병행 1) 동부증권 및 대신증권의 본· 지점에서 교부 2) 동부증권 및 대신증권의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1) 동부증권 및 대신증권의 본· 지점: 청약종료 일 (2016년 11월 08일)까지 2) 동부증권 및 대신증권의 홈페이지 또는 HTS 교 부: 청약종료일(2016년 11월 08일)까지

※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i) 우리사주조합 교부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가 면제됨에 따라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인 동부증권(주)를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 ii) 구주주 교부방법

- 구주주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인 동부증권(주)를 통해 구주주 청약을 하시는 주주께서는 동부증권(주)의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해서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 iii) 일반청약자 교부방법

- 원칙적으로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 동부증권(주) 및 대신증권(주)의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투자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다운로드를 완료하신 이후에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전자문서 수신자의 사전동의 후 수신자가 전자문서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한 상태에서 전자문서 수신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형태의 투자설명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간주되어 청약이 가능합니다.
-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수신자가 동의할 것
-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③ 확인절차

a.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 청약하시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HTS를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b.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c. 홈페이지 또는 HTS/MTS를 통한 교부

-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④ 기타

a.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주주명부상 주주분들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지점방문을 통해 인쇄물을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동부증권(주) 및 대신증권(주)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받으실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 b. 구주주 청약시 동부증권(주) 이외의 증권회사를 이용한 청약 방법 해당 증권회사의 청약방법 및 규정에 의해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 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취급처별, 청약자 유형별 청약방법 요약

청약방법	청약절차	
070H	구주주	일반공모
영업점 내방 청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후 청약가능 (단,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령 거부 확인서류 제출 후 청약)
		①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다운로드

청약방법	청약절차	
성학명합	구주주	일반공모
HTS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 를 거친 후 청약	받는 것에 대한 사전 동의 ② 투자설명서의 다운로드 ③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상기 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
유선청약	구주주 청약을 실시하는 각 증권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르되, 대표주관회사인 동부증권 주식회 사는 유선청약을 불가함	- 동부증권(주): 유선청약 불가 - 대신증권(주): 유선청약 가능 ① 청약 사전에 투자설명서의 우편수취 또는 전 자문서 수취 단, 전자문서는 다음과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적법한 교부로 인정됨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수신자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 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 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 의 내용과 동일할 것 ②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녹취를 통한 확인) (청약종료일 16:00까지)
청약취급처	-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동부 증권 주식회사 본· 지점 - 명부주주 : 동부증권 주식회사 본· 지점	동부증권 주식회사 및 대신증권 주식회사 본· 지점

## [동부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청약방법	투자설명서 교부형태	
지점내방 청약	동부증권㈜의 본·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주식청약서를 통한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투자설명서 수령 혹은 거부 확인)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HTS/MTS/홈페 이지 청약	동부증권㈜의 HTS인 'Happy+', 동부증권㈜의 MTS인 '동부증권 MTS' 및 홈페이지(www.dongbuhappy.c om)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시거나 수령을 거부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 유선청약 / ARS청약	고객지원센터 유선청약 및 ARS청약은 불가합니다.	

## [대신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구 분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1), 2)와 3)을 병행
	1) 본 공모의 청약취급처인 대신증권(주)의 본·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점 내방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에는 반드시 투자설명서의 수령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신증권(주) 본·지점에 내방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구 분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일반청약자	2) 대신증권(주)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① U-CYBOS GLOBAL 이용시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고, 지정한 전자매체에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 사실을 확인해야만 투자설명서가 교부되며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홈페이지 이용시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고, 지정한 전자매체에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 사실을 확인해야만 투자설명서가 교부되며 청약이 가능합니다.	
	3) 대신증권(주) 본지점에서 이메일로 교부 유선청약은 대신증권(주) 본지점에 내방하여 유선청약 약정을 하신 고객에게 가능합니다. 유선으로 투 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나타내야 하며 수령시 대신증권(주) 이메일로 고객에게 투자설명서를 발 송하여 수신확인 후 청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수령거부의 경우에는 대신증권(주) 직원에게 수령거부의 사를 통해 직원이 수령거부에 표시하고 위험고지를 한 후 청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 1. 국가
- 2. 한국은행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 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 1. 2013.8.27>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 나. 제10조제3항제12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감정인·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 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6)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 a. 주권교부예정일: 2016년 11월 18일
- b. 주권교부장소: 명의개서대행기관(국민은행 증권대행부)
- 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
- 우, 해당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발행되고 동 주권
- 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입고됩니다.

####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⑤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7)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고,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8) 주금납입장소: 우리은행 분당차병원지점

## 다.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ハスルスコスの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금융투자업자	
신주배정기준일 	회사명	회사고유번호
2016년 09월 27일	동부증권(주)	00115694

- (1)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제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 (2)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동부증권(주)로 합니다.
- (3) 청구기간: 신주배정통지일(2016년 10월 10일)로부터 구주주 청약개시일(2016년 11월 02일)의 전영업일(2016년 11월 01일)까지
- (4)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절차
- ① 명부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 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동부증권(주)에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 ② 실질주주의 경우 별도 청구절차 없이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발행하므로 2016년 09월 27일에 당해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계좌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할 예정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 (5)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동부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 되어있는 수량만큼 청약할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동부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 (6)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 6년 10월 18일부터 2016년 10월 24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6년 10월 25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6조의3에 근거하여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규정 제44조의3에 따라 신주청약개시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 (7)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 관과 협의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상장방식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 i) 상장거래: 2016년 10월 18일부터 2016년 10월 24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 ii) 계좌대체거래 : 2016년 10월 10일(예정)부터 2016년 10월 26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6년 10월 26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2016년 10월 27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 iii)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 i) 신주배정통지일(2016년 10월 10일(예정)로부터 2016년 11월 01일까지 신주인수 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주 요청 시 발급합니다.
- ii)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09월 27일) 전일까지 주식회사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 주주와 동일합니다. (단,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 받을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라.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주식교부일 이전의 주식의 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발행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311조(계좌부기재의 효력)
- ①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 ②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③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 『상법』제335조(주식의 양도성)
-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1.4.14.>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1995.12.29.>

③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 마.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3)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 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 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 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됩니다.
-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 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 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5) 본 증권신고서의 예정 모집가액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추후 2차 발행가액까지 산정함으로써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발행예정금액은 추후주당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잔액인수]

인수	누인	인수주식 종류 및 수	인수대가
대표주관회사	l 노브슨귀(스)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 인수비율(70%)	<ul><li>▶대표주관수수료: 금 일억원(정액)</li><li>▶ 기본수수료: (모집총액의 1.8% - 금 일억원) × 70%</li><li>▶ 추가수수료: 잔액인수금액 x 15.0%</li></ul>
인수회사	L 대신승권(수)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 인수비율(30%)	▶ 기본수수료: (모집총액의 1.8% – 금 일억원) × 30% ▶ 추가수수료: 잔액인수금액 x 15.0%

주1) 최종 실권주 : 우리사주/구주주청약 및 일반공모청약 후 발생한 배정잔여주 또는 청약미달주식

주2) 모집총액 : 최종 발행가액 × 총 발행주식수

주3)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 또는 청약 미달주식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기로 합니다.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1. 액면금액

정관 제 7 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오백원으로 한다.

## 2.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정관 제29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정관 제30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1을 초과 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자기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정관 제31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관 제3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관 제33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주주

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서 한다.

# 3. 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 제 5조 (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로 한다.

정관 제 6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구백팔십만주(1주의 금액: 500원)로 한다.

정관 제 8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 ③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우선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하는 주식으로 한다.

정관 제9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의 25% 한도로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우선주식의 발행총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아래의 조건 에 따라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1.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으로 하여 발행 시 이 사회에서 우선주에 배당율을 정하며, 회사의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2.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2항 1호에 따라 정해진 우선배당률에 의 한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 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 하여 배당한다.
- 3.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하거나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우선 주식에 대한 의결권 부여 여부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 4.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 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존속기간 중 소정 의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기간은 연장 된다.
- 5. 우선주식의 전환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6.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보 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7.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동일 한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③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총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우선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아래의 조건에 따라 상환되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1.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 까지 연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비율에 따라 연리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 상환 시 상환주식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배당금은 상환가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 2.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상환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 1개월 전까지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3. 상환주식의 상환방법은 회사가 주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으면 그러한 청구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 받고 상환가액을 주주에게 지급하여 상환한다.
- 4.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우선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④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총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우선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1.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전환주식 1주를 보통주식 1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제3호에서와 같이 변경될 수 있다.
- 2. 전환청구기간은 최초발행일 이후부터 존속기간 만료 전 일까지로 하고 전환청구기간 내 전환청구 시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다.

- 3.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전환주식 발행 후 전환청구기간 만료 전까지 변경될 수 있다.
- 4. 전환청구에 의하여 전환된 보통주식의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 용 한다.
- ⑤ 회사는 위 제2항, 제3항, 제4항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위 제2항, 제3항, 제4항의 주식에 대하여는 본 제9조에 배치되지 않는 한, 본 조의 다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정관 제 9 조의 2 (1종 종류주식 수와 내용)

- ①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 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의 25% 한도로 한다.
-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 100%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배당하며, 회사의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2항 따라 정해진 우선배당률에 의한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 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 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 ⑤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존속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기간은 연장된다.
- ⑥ 종류주식의 전환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⑧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 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정관 제 9 조의 3 (2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 ① 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의 25% 한도로 한다.
-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10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 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 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 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⑥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⑦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 다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 2.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에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 4. 종류주식은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전환할 수 있다.
- ⑧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 할 때 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 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정관 제 9 조의4 (3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 ① 회사가 발행할 3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의 25%로 한다.
- ② 종류주식의 배당 및 신주의 배정, 의결권 등에 관한 내용은 제9조의2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 ③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 1.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에이 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2.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10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 가. 상환기간(주주 상환청구시 상환청구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 3.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 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 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4.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5. 회사 또는 상환청구주주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 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 정관 제 10조(신주인수권)

-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2.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3.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우선배 정하는 경우
-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긴급한자금조 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정관 제11조 (일반공모증자등)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 식으로 발행하는 신주는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는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정관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부여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 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게 된 자(

- 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를 초과할 수 없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서 각 해당 주주총회 또는 해당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행사만료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
-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정관 제13조 (주식의 소각)

-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정관 제15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

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정관 제16조 (주주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신고)

-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을 제15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정관 제17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회사는 매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회사는 매년 12월31일 최초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4. 배당에 관한 사항

정관 제14조 (신주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할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정관 제56조 (이익배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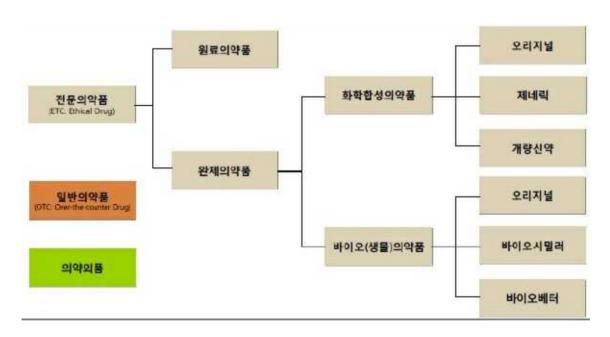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③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4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 Ⅲ.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

당사는 2001년 08월 01일 (주)미창(現 에머슨퍼시픽(주),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에서 인적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2006년 05월 제약사업에 진출, 2008년 02월 (주)쎌라트 팜코리아와의 합병을 거쳐 현재 의약품 제조 및 판매의 제약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처방전의 유무, 물질형태, 특허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의 구분]

의약품 분류

출처: NICE신용평가

[주요 용어]

용어	설명
신약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새로운 신물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

용어	설명
(Original)	한 복합제제 의약품
개량신약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에 비해 개량되었거나 의약 기술에 있어 진보성이
(IMD, Incrementally Modified Drug)	있는 의약품
복제약 (Generic)	특허만료된 신약(오리지널)을 단순 복제한 의약품
전문의약품 (ETC : Ethical Drug)	전문의약품은 적응증, 습관성, 내성, 투여경로의 특성상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주사제, 혈압약, 간질약, 항생제 등이 있음
일반의약품 (OTC : Over-the-counter Drug)	일반의약품은 오· 남용 우려가 적어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여도 부작용이 비교적 작은 의약품으로 일반적인 감기약, 소화제, 비타민제등이 있음
리베이트	사전적으로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지불 받은 액수의 일부분을 구매자에게
(Rebate)	환불하는 행위 및 그 금액을 의미하며, 판매 촉진을 위한 가격할인 전략
GMP	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으로서의 우수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의 제조· 품질관리의 기준
구강용해필름 (ODF, Orally Disintegrating Film)	입에서 물 없이 녹여서 복용할 수 있도록 필름형 형태로 제조된 의약품으로 , 구강붕해필름, OSF(Orally Soluble Film) 또는 OTF(Orally Thin Film)이라고 도 불림
정제 (Tablet)	분말상의 의약품을 작은 원판 모양으로 압축하여 복용하기 쉽게 만든 형태
조현병	조현병(정신분열증)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Schizophrenia)	더불어 사회적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임
아리피프라졸	일본 오츠카 제약이 개발한 조현병 치료제로, 도파민의 조절을 통해 조현병
(Aripiprazole)	(정신분열병), 우울증 치료에 탁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생체시험으로서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Bioequivalence Test)	두 제제의 생체이용률이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
신약 승인	동물시험까지의 비임상시험 결과와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결과를
(NDA, New Drug Approval)	종합하여 식약청에 의약품 시판허기를 신청하는 절차
임상시험계획승인	동물시험까지의 비임상자료와 임상시험 계획서를 취합하여 임상시험 승인
(IND, Investigational New Drug)	을 신청하는 절차
연방 식약청	미국 보건후생성(DH-S)의 산하기관으로 미국 내 생산되는 식품, 의약품,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화장품 및 수입품/수출품의 효능과 안정성을 관리
의약품위탁생산기관	의약품 제조업체의 의뢰를 받아 생산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생산해주
(OMO,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는 전문 공장
위탁연구전문기관	신약 개발 등 연구(Research)를 전문적으로 대행해 주는 기관으로, 임상시
(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험과 관련된 의뢰자의 임무나 역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
보험수가 (Medical insurance fee)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병의원(의사)가 지불받는 진료비로,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국가(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로 구성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병의원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보험수가를 관리하기 때문에 보험수가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수준의 공정가격 성격을 띔

출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연구소

# [제약산업 성장 정체 위험]

가.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 발달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구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경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약산업의 시장규모는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의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인구고령화및 만성질환 증가 등의 영향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며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리베이트 규제 강화 및 약가 인하 등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지속되고 있어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제약산업 전반의 성장 정체는 향후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약산업은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바탕으로 큰 폭의 변동성이 없는 산업 중 하나로, 과거 상위권 제약회사들은 대부분 수십 년이 넘는 오랜 업력 동안 큰 변화 없이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중소형 제약회사들도 시장진입에 성공하며 사업을 유지하였습니다. 제약산업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건강'에 직결되는 산업으로 수요기반이 안정적임에 따라 경기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령화 및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의약품 소비 증가와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처방의약품의 고성장은 전체 제약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인구구조는 양적인 팽창속도가 둔화된 가운데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에 따라 7% 이상은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중인 고령화율을 살펴보면 2000년에 7%를 넘어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이로부터 18년 뒤인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다시 8년 뒤인 2026년경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2060년경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40.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연령별 인구구조]

(단위: 천명, %)

7	AT	1990년	2000년	2010년	2012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0~14세	10,974	9,911	7,975	7,559	6,788	6,575	5,718	4,783	4,473
인구수	15~64세	29,701	33,702	35,983	36,556	36,563	32,893	28,873	25,347	21,865

7	1 분	1990년	2000년	2010년	2012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65세 이상	2,195	3,395	5,452	5,890	8,084	12,691	16,501	17,991	17,622
	0~14세	25.6	21.1	16.1	15.1	13.2	12.6	11.2	9.9	10.2
구성비	15~64세	69.3	71.7	72.8	73.1	71.1	63.1	56.5	52.7	49.7
	65세 이상	5.1	7.2	11.0	11.8	15.7	24.3	32.3	37.4	40.1

출처: 통계청「장래인구추계」2010년 기준(통계주기: 5년)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구구조의 변화와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로 제약산업의 수요기반 역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약품비를 포함한 국내 의료비 지출의 견고한 성장기반은 노인인구 급증과 만성질환증가 추세이며, 이중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비중이 2015년 36.8%에 달하는 등 의료비 지출에서 65세 이상 진료비 비중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및 구성비 추이]

(단위: 천일, 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0-'15 CAGR
	내원일수	333,743	347,571	372,958	391,255	413,424	426,777	5.0
계	총진료비	137,847	148,384	160,382	175,283	193,551	213,615	9.2
	구성비	31.6	32.2	33.3	34.5	35.5	36.8	_
0101	내원일수	44,751	48,368	54,463	60,919	66,796	71,687	9.9
입원	총진료비	58,706	63,453	70,667	78,801	86,656	96,500	10.5
וורוס	내원일수	189,542	196,304	208,793	217,701	228,877	233,820	4.3
외래	총진료비	41,146	44,540	49,353	54,658	61,620	68,241	10.6
OF.	내원일수	99,450	102,900	109,703	112,635	117,751	121,270	4.0
약국	총진료비	37,995	40,391	40,361	41,825	45,275	48,874	5.2
노인(	· 인구(천명)	4,979	5,184	5,468	5,740	6,005	6,223	4.6
=	구성비	10.2	10.5	11.0	11.5	11.9	12.3	_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통계지표

주1) 총진료비는 총요양급여비용을 의미함

주2) 구성비는 전체 진료비에 대한 노인(65세이상) 진료비 비율임

주3) 노인인구는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적용인구임(2015년 12월말 기준)

국내 제약산업은 인구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만성질환 증가 등 인구통계학적/사회 문화적 환경 변화에 힘입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11.89%의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강화 및 2012년 일괄 약가인하 등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최근 5년간 정체된 성장률을 기록하며 최근에는 과거와 같은 고성장 추세를 이어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04-'10	'11 <del>-</del> '15
7.22	2004	2005	2000	2001	2000	2009	2010	2011	2012	2010	2014	2015	CAGR	CAGR
생산	9,637	10,599	11,473	12,598	13,894	14,788	15,570	15,440	15,561	16,192	16,419	16,793	8.32%	2.12%
수출	811	814	863	947	1,256	1,772	1,770	1,943	2,310	2,319	2,531	3,327	13.89%	14.38%
수입	2,447	2,646	3,273	3,411	4,320	4,954	5,109	5,447	5,729	5,156	5,366	5,465	13.05%	0.08%
무역수지	-1,635	-1,833	-2,410	-2,464	-3,064	-3,182	-3,339	-3,504	-3,419	-2,837	-2,834	-2,138	12.64%	-11.61%
시장규모	9,637	10,599	11,473	15,062	16,958	17,970	18,908	18,944	18,980	19,029	19,254	18,932	11.89%	-0.02%
성장률	-	9.97%	8.25%	31.29%	12.59%	5.97%	5.22%	0.19%	0.19%	0.26%	1.18%	-1.67%	1	-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1) 무역수지 = 수출액 - 수입액

주2) 국내 시장규모 = 생산액 - 수출액 + 수입액

최근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2015년 의약품 생산액은 16.79조원으로 전년대비 2.28%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3.33조원, 수입액은 5.47조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31.42%, 1.85%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는 18.93조원으로, 생산액 및 수입액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1.67%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2014년 세계 의약품 시장은 1조 272억 달러(1,082조 원, 2014년 2분기 평균 환율 적용한 불변가격 기준) 규모로 최초 1조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최근 10년간(200 5년 ~ 2014년) 연평균 6.2%의 성장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성질환에 대한 치료 수요 증가로 2000년대 7~8%의 고성장을 보였으나,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수요 감소 등의 원인으로 2 010년부터 2013년까지 성장세가 둔화되어 성장률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세계 의약품 시장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고가 브랜드 및 신약 사용의 증가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제네릭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 대비 8.4% 성장한 1.03조 달러 규모를 기록하며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향후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연도별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

(단위: bn USD)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시장규모	601.1	645.5	691.0	739.5	786.7	842.6	889.4	936.9	959.0	989.3	1,027.2
전년대비 성장률	7.8	7.4	7.1	7.0	6.4	7.1	5.5	5.3	2.4	3.2	8.4

출처: IMS Health, IMS Market Prognosis, September 2014

주) 2014년 2분기 평균 환율을 적용한 불변가격(Constant dollar) 기준

제약산업은 경기 침체시 비중증 환자들의 내원 횟수 감소 및 일반의약품 매출 감소 등 성장성과 수익성에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완제의약품 생산실적의 약 80%를 차지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질병치료, 생명연장 등 필수재 특성의 재화로 경기 방어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며, 국민 건강 및 질병치료에 필수적인 산업 특성상 전반적인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는 타산업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 [국내 완제의약품 생산실적]

(단위: 십억원)

의약품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일반의약품 생산액(A)	2,665	2,664	2,648	2,545	2,522	2,531	2,552	2,310	2,435	2,413	2,434
전문의약품 생산액(B)	7,005	7,786	8,768	9,951	10,654	11,510	11,329	11,226	11,453	11,868	12,422
완제의약품 생산액(A+B)	9,670	10,450	11,415	12,496	13,176	14,041	13,881	13,536	13,888	14,281	14,856
YoY	-	8.07%	9.23%	9.47%	5.44%	6.56%	-1.14%	-2.49%	2.60%	2.83%	4.03%
전문의약품 비중(B/(A+B))	72.44%	74.51%	76.81%	79.63%	80.86%	81.97%	81.62%	82.93%	82.47%	83.10%	83.62%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따라서, 상기와 같은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수요기반 확대 및 낮은 경기 민감도를 바탕으로 국내 제약산업은 향후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및 해외 제약시장의 전반적인 성장률 둔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R&D 투자, 해외 진출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산업은 정부 규제 등의 영향으로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제약산업 전반의 성장세 둔화는 향후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정부 규제에 관한 위험]

나. 의약품 제조업은 국민 보건과 관련된 산업으로 의약품의 허가, 보험 약가 등재뿐 아니라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타 산업에 비해 정부의 엄격한 제도적 규제 아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및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해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정부가 약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정부의약가 정책이 개별기업의 매출 및 영업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정부는 2009년 하반기 이후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와 '쌍벌제' 등을 도입하였으며,이에 따라 국내 제약업체의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성장세가 둔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최근 정부의 규제 강화로 영업환경이 위축된 상황이며, 향후에도 제약 산업은 정부의 주요 규제에 따라 개별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크게 영향을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약산업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산업으로 제품의 개발-생산-판매 전 과정에 걸쳐서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및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일괄 약가인하 등을 시행하는 등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타산업과 달리 정부가 약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정부의 약가정책이 제약산업내 개별기업의 매출 및 영업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의약품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지불주체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면 정부는 직접 의약품 가격을 통제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은 국내 제약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약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약품 가격 관련 주요 정부정책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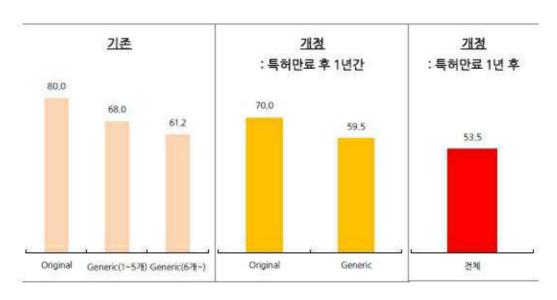
시행년도	구분	주요내용	산업에 미친 영향
2000	의약분업	- 의사와 약사의 역할 분리	- 전문의약품의 처방확대. 전문의약품 중심의 시장성장
2002	약가재평가 제도 도입	- 정기적으로 가격변동요인을 파악하여 약가조정 - 외국 7개국 약가와 비교하여 약가 조정	- 조정수준이 수익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
2006	약제비 적정화 방안	- 특허만료 신약의 가격조정 - 제네릭 약가인하 폭 확대 - 선별등재 시스템으로 전환 -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사업 운영 - 가격 결정방식이 외국 7개국의 평균값과의 상대비교 에서 보험공단과의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	- 가격통제와 품목대상의 범위 확대 - 도입 이후 제약기업의 수익성 하락세 - 단계적 가격조정으로 영향은 점진적 양상 - 보험공단의 가격 교섭력이 높아짐
2008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	- GMP 규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제약기업들의 관련 설비투자 증가
	리베이트 약가		

시행년도	구분	주요내용	산업에 미친 영향
2009	연동제	- 리베이트 적발 품목 보험약가 최고 20% 인하	- 영업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2010	시장형 실거래가 상한제도	- 의약품 저가 구매시 의료기관/약국의 이윤인정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로 전환
	리베이트 쌍벌제	- 리베이트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	- 영업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2012	약가제도 개편 (일괄약가인하)	- 기존 계단식 약가 구조를 폐지 (신규등재의약품)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 부여 (기등재의약품) 약가를 일괄 인하	- 가격조정의 폭과 범위가 매우 큼 - 2012년 제약기업의 수익성이 큰 폭으로 하락함
2014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리베이트 투아웃제)	-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를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 (리베이트 금액과 횟수에 따라 급여정지기간 결정)	- 제약업계의 영업방식의 변화 (영업사원 인센티브 제도의 조정 등)
	의약품 허가-특허권 연계제도	- 신약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후발주자의 복제약이 판매되지 않도록 함	- 신약특허권의 강화 - 단기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매출액 감소
2015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 의약품의 유통현황과 실거래가를 조회 가능 - 공급내역 익일보고원칙 - 바코드사용에 대한 의무화	- 유통부문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2016	약가제도 개선방안	<ul> <li>복합제를 구성하고 있는 단일제 약가가 인하되면 복합제도 연동되어 가격 인하</li> <li>신약의 적정가치를 반영하여 약가 및 조세 지원</li> <li>보험제정의 안정화</li> <li>실거래가 조사가 1년에서 2년 단위로 변경됨</li> </ul>	- 복합제의 경우 단일제 대비 효능 및 역할이 엄연히 다른데도 불구, 개발 유인 사라짐 - 신약 약가 산정 등에 대한 정부규제 완화

출처: 보건복지부

상기의 정부 정책 중 특히 약가인하와 관련하여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이 우호적인 내수시장에 안주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것을 우려하는 한편, 비대해진 의약품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작으로 제약산업 선진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2011년 8월 계획 발표 이후 같은 해 11월 행정예고를 거쳐 2012년 4월 시행된 약가제도 개편의 주요 사항은 기존 계단형 약가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동일 성분 동일 약가'를 기본원칙으로 특허만료 신약과 제네릭의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약가산정 방식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핵심은 2012년 1월 1일 후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해 신약과 제네릭 약가를 기존 80%(상한가 대비)와 68%에서 53.55%로 일괄 인하하고, 2012년 1월 이전 특허만료 의약품도 신약의 53.55% 수준으로 상한가격을 일괄 인하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네릭 출시 촉진을 위해 제도 시행 이후 제네릭 전입 최초 1년 동안은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를 각각 70%와 59.5% 수준으로 적용하며, 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 의약품 등은 기등재약 가격조정에서 예외로 하되, 약가산정 방식 변경에 따라 기존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2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도 하였습니다.

### [변경된 약가 산정 방식]



약가 산정방식 개정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기업평가

상기의 일괄 약가인하로 인해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 13,000여 품목 중 약 6,500여개 전문의약품의 약가가 평균 21% 인하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의약품 가격은 약 14% 인하 되었습니다. 2013년 7월 한국제약협회가 발표한 '약가인하 이후 제약산업의변화'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8개 상장 제약기업들의 2012년 약품비 청구액이 5조 2,91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1분기 약품비 청구실적은 1조 2,677억원으로 2012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제약사들은 약가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약가인하를 적용받지 않는 일반의약품의 확대, 다국적 제약사로부터의 품목 도입, 비제약 사업부문으로의 다각화 등에 노력에 나섰으나, 약가인하와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품도입 확대 등으로 인해 당사를 포함한 주요 제약사들의 2012년 수익성이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그 동안 국내 제약사들이 대부분 제네릭을 통해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동일한 약품에 대해 다수의 제약사들이 경쟁을 하게 되면서 리베이트가 만연하였으며, 제네릭 위주의 과다 경쟁으로 R&D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져 국내 제약사들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이 리베이트 위주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연구개발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 규

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최고 20% 인하하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에는 리베이트 제공자는 물론 수령자도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상기 규제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하다는 판단 하에 2014년 7월 2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리베이트가 적발된 약제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리베이트 금액에 비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고, 적용이 정지되었던 약제가 정지기간만료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정지기간에 2개월 가중처분을 하며, 가중처분기간이 12개월 초과하거나 5년 이내에 또다시 위반(3회)한 경우 요양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급여적용 정지기간]

부당금액	500만원 미만	500~ 2,000	2,000~ 3,500	3,500~ 5,500	5,500~ 7,500	7,500~ 1억원	1억원 이상		
1회	경고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2회	2개월	3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1개월	급여제외		
3회		급여제외							

출처: 보건복지부

상기와 같은 리베이트 규제 강화에 따라 제약사들의 판매관리비 부담이 하락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으나, 규제 강화에 따른 제약사들의 영업활동 위축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매출규모가 작아 연구개발비 비중이 다소 제한되어 제네릭 위주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당사와 같은 중소형 제약사의 타격이 대형 제약사 대비 더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5년 들어서도 3월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통하여 제네릭 복합제의 경우도 단일 제와 동일하게 약가가 인하되도록 조정하는 등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지속되고 있으나, 약가 규제의 결과 약품비가 전체 요양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및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 규모가 커지고 있어, 당분간 2012년과 같은 대규모의 일괄 약가 인하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당기수지	(747)	(2,847)	13,667	(32)	(12,994)	6,008	30,157	36,446	45,869	41,707
누적수지	11,798	8,951	22,618	22,586	9,592	15,600	45,757	82,203	128,072	169,779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사가 생산하는 전문의약품은 보험 수가에 따라 제품 가격이 결정되며, 정부의 다양한 약가인하 정책은 의약품 가격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제품의 단가가 인하되는 경우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에도 제약 산업의 특성상 정부 규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 시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도입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사를 비롯한 개별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완제의약품 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다. 국내 제약산업은 설비투자 부담이 타 산업에 비해 크지 않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제 네릭 의약품의 경우 연구개발비 부담도 크지 않아 진입장벽이 높지 않음에 따라 2014년 생산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완제의약품 제조기업이 총 307개로 집계되었으며, 시장규모를 고려시 참여기업들의 수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고, 시장집중도 역시 타산업 대비 높지 않은 수준으로 전반적인 경쟁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국내 제약산업은 신약의 개발보다는 특허가 만료되는 제품의 제네릭 생산, 판매 및 오리지널 제품의 수입 판매에 의존하는 등 내수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경쟁이 심화될 경우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 제약시장에서 생산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완제의약품 제조업체는 2014년 기준 307개로 시장규모 대비 과다한 수의 참여업체들로 인해 공급과잉 상태 및 높은 경쟁 강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제약산업이 일정 수준의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가운데 과거 제약산업 영위를 위한 설비투자 부담이 타 산업에 비해 크지 않았고,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연구개발비에 대한 부담 역시 크지 않아 비교적 다수의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던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시장집중도가 타 산업 대비 높지 않고,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시장의 특성상 전반적인 경쟁강도 역시 다소 높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 [완제의약품 생산규모별 기업현황]

(단위: 개, 백만원, %)

연간 생산 규모		2012년			2013년				
22 30 HI	기업수	생산액	비중	기업수	생산액	비중	기업수	생산액	비중
5,000억 이상	3	1,781,464	13	3	1,699,780	12	5	2,636,867	19
1,000억 이상 5,000억 미만	30	6,937,793	50	37	7,802,947	55	36	6,758,517	47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35	2,434,983	18	36	2,418,663	17	36	2,399,597	17
100억 이상 500억 미만	84	2,220,640	16	74	1,890,321	13	82	2,112,840	15
100억 미만	147	375,102	3	132	320,828	2	148	372,662	3
합계	299	13,749,982	100	282	14,132,539	100	307	14,280,483	100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생산규모별 기업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생산규모가 1,000억원을 상회하는 기업의 수대비 1,000억원 미만의 기업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아 중위권 기업의 생산집중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며, 상기 제약사들의 경우 영업력을 기반으로 다수의도입품목(상품) 판매 역시 병행하고 있음을 감안 시, 실질적인 하위권과의 시장지위격차는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권 업체들에 매출이 집중되어 있는 과점적 경쟁시장에서 중소규모 이하 업체들은 치열한 경쟁구도에 직면해 있으며, 최근에는 우수한 영업력과 품목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는 상위권 제약회사들과 상대적으로 제품력 및 영업력이 미흡한 하위 제약회사간의 시장지위 격차가 벌어지며 시장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제약산업은 유사상품의 과다 등으로 인해 아직도 과당경쟁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시장구조 속에서 가격경쟁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술제휴, 인수, 합병, 신제품 개발, R&D의 투자확대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약산업 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며이에 대한 투자여력 보유 여부에 따라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됩니

다.

국내 상위 제약회사는 물론 막대한 자금력과 우수한 연구개발능력을 가진 외국계 대형 제약회사들과의 경쟁이 심화될 경우 이는 당사의 경영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 [GMP 관련 규제로 인한 설비투자 부담 증가에 관한 위험]

라. 제약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보건을 위하여 소비하는 산업으로써 인간의 생명 및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생산과정에서부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타 산업에 비해 그 과정이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설비투자 부담이 크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2008년 정부가 선진국 수준의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 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제약회사들의 설비투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품질 기준 충족을 위한 제약회사들의 설비투자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를 비롯한 제약회사들의 유동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한 제품을 생산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의약품 허가, 보험 약가 등재뿐만이 아니라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타 산업에 비해 그 과정이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비투자 부담이 크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2008년 정부가 선진국 수준의 새로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제약회사들의 설비투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제형 별로 GMP 지정을 받으면 그 제형에 속한 모든 품목의 제조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개별 품목 허가 시 마다 국내외 의약품 제조 현장을 지도 및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되어 이를 위해 국내 제약업체들은 각 분류에 적합한 GMP 생산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업체는 시설설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내 주요제약사의 시설 및 설비투자의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GMP는 품질이 고도화된 우수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출고에

이르기까지 제조 및 품질관리 전반에 걸쳐 지켜야 할 규범이며, 우수한 의약품을 일정하고 재현성 있게 생산하기 위하여 제조설비 및 Quality Control 장비의 적격성(Qualification), 공정의 유효성 입증(Validation), 작업자의 교육 및 훈련, 작업장의 환경등에 이르기까지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모든 연관된 사항을 통제하는 기준입니다.

### [정부의 의약품 품질관리 규제]

명 칭	주요 내용
GMP 의무화	- GMP는 현대화 · 자동화된 제조 시설과 엄격한 공정 관리로 의약품 제조 공정상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인 착오를 없애고 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성이 높은 고품질의 의약품을 제조 관리운영체계 - 2008년 신약 및 전문의약품, 2009년 일반의약품, 2010년 원료의약품 GMP의무화
품목별 밸리데이션 의무화	- 밸리데이션은 특정한 공정과 방법ㆍ기계설비ㆍ시스템이 미리 설정돼 있는 판정 기준에 맞는 결과를 일관되게 도출한다는 것을 검증해 문서화하는 제도 - 2008년 1월 신약, 2008년 7월 전문의약품, 2009년 7월 일반의약품, 2010년 1월 원료의약품 및 의약외품 의무화

출처: 보건복지부

주요 상위권 제약사들 대부분이 1천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신규 GMP 공장 건립을 완료하였으며, 기타 상위권 제약회사들도 대규모 GMP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사 또한 설비 증설을 계획하고 있어 GMP 기준에 적합한 생산시설 건설이 필요함에 따라 향후 이와 관련된 설비투자 및 인증을 위한 자금 소요가 존재합니다. 이렇듯 새로운 품질 기준 충족을 위한 제약회사들의 설비투자가 과거에 비해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를 비롯한 제약회사들의 유동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신약개발 관련 투자비용에 관한 위험]

마. 국내 제약업계는 제네릭 제품 위주의 생산 및 영업력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 신약 개발을 통한 성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당사를 비롯한 제약회사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신약개발 및 개량신약개발 등 신규 수익원 창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상위권 제약사라 하더라도 외형 및 연

구개발 투자 규모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비교할 때 여전히 열위한 수준이며, 신약개발을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도 신약개발을 통한 사업구조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개발은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장기에 걸친 투자 및 연구기간이 소요되며, 신약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이에 투자된 금액과 시간을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 창출 여부는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국내 제약업계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확보 보다는 의약품 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전문의약품 시장의 고성장을 배경으로 제네릭 위주의 제품포트폴리오와 영업력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시현해 왔습니다. 하지만 산업의 성장둔화에 대비하여 대형 제약사를 중심으로 신약개발 및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있으며 다국적 임상과 해외 제약사와의 제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권장정책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국내 주요 제약사(11개사)들의 합산 연구개발비 추이를 살펴보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며 2009년 7.1%에서 2014년 9.4%, 2015년 9.0%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 [국내 주요 제약사 합산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억원, %)



주요 제약사 합산 연구개발비 추이

출처: 각사 공시자료, 한국신용평가

주) 11개 주요 제약사(동아에스티, 대웅제약, 유한양행, 녹십자, 한미약품,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일동제약, 광동제약, 한독, 제일약품) 합산 기준

그러나 국내 상위권 제약사라 하더라도 외형 및 연구개발 투자 규모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비교할 때 여전히 열위한 수준이며, 신약 및 개량신약개발을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도 사업구조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제약사의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연구개발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이 차별성 낮은 제네릭 중심의 산업구조를 연구개발에 기반한 신약 및 개량신약개발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정부 규제가 제약사의 영업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한 신약 및 개량신약개발과 해외진출은 약가인하 등 규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판단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외국 제약사로부터 품목도입을 통해 일시적인 수익원천을 확보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자체개발 신약 또는 개량신약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이 제약사간 차별화를 가져오는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유통환경 투명성 제고에 따른 리베이트 감소가 구조적인 추세로 자리잡을 경우, 절감된 판매관리비를 연구개발 투자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연구개발 확대에 수반되는 수익성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당사 연구개발비용 현황]

(단위:백만원)

과목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반기
	무형자산 (개발비 취득)	_	4,800	582	-	_
회계처리	무형자산 (개발비 내부개발)	_	1,193	2,928	2,727	1,595
	경상개발비 (판매비와 관리비)	120	134	117	832	162
	경상개발비 (제조경비)	170	209	173	231	117
연구개발비용 계		290	6,336	3,800	3,790	1,874
매출액		16,009	20,402	22,753	27,042	15,835
연구개발비	l/매출액	1.81%	31.06%	16.70%	14.02%	11.83%

당사는 중형 제약사로서 제한된 연구개발비 내에서 실질적인 수익 창출에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제재연구 등 개량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 및 연구개발비의 절대 금액 자체는 상위업체 들에 비해서 다소 열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당사역시 제한적인 국내 시장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신약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등향후 연구개발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구개발활동이 실질적인 수익창출에 기여하기까지는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의 수익성 및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를 비롯한 제약 산업 전반의 연구개발 확대를 통한 신약 및 개량신약 개발은 제네릭 대비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장기에 걸친 투자 및 연구기간이 소요되며,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이에 투자된 금액과 시간을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 창출 여부는 불확실성이 높은 위험 요소를 수반하고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 사업에 관한 위험]

바. 당사는 기존 제네릭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구강용해필름(ODF, Orally Disint egrating Film) 제재에 특화된 제네릭 및 개량신약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14년부터 독일의 첨단 설비를 도입, 시흥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여 20 15년 3분기부터 관련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특히 개량신약 아리피프라졸 ODF는 20 16년 중으로 미국 FDA 임상을 마무리 후 2017년 말까지 NDA(New Drug Approval, 신약승인)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구강용해필름 시장은 성장 초기 단계로연구개발을 포함한 별도의 제조시설이 요구되어 자본적 지출(CAPEX) 부담이 높은 사업으로, 당사 역시 향후 ODF 제품의 확대 시 생산을 위한 자본적 지출(CAPEX)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강용해필름 산업의 경우 현재 성장 초기단계로 향후 그 편리성, 빠른 약효 등의 강점으로 인하여 정제(Tablet) 시장을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까지 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만큼 해당 산업의 시장성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기(1997년~2005년)에는 제제연구자들이 비디오필름 등의 전문 코팅기술을 도입

해 적정한형태, 투여할 혀 또는 구강점막 등의 위치를 고려한 크기, 생산가능한 두께 그리고 환자투여에 적합한 향 등을 고려해 구강용해필름에 대한 가능성을 확립했습니다.

이어 API(원료의약품)를 구강용해필름에 의해 적용할 연구를 완료했으며, 대량생산이 가능한 생산장비들이 개발됨에 따라 첫 의약품(Diclofenac) 구강용해필름이 대량생산방법에 의해 생산되었습니다. 현재는 의약품을 단순히 구강용해필름에 의해 생산되는 것 뿐만 아니라, 필름용해속도 조절, 미세분말특수코팅 등에 의해 장용(Enteric coating)제품등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강용해필름 제형의 개발 및 생산에 적극적인 회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명	제약회사
미국	Watson, Johnson&Johnson, Mylan, Pfizer, etc
유럽	Norvatis, Sanofi, Beierdorf, Bouty, etc
일본	Monosol, etc
인도	Cipla, Ankur, Panacea, etc
중국	KSD, Shanxhi, Fuhe, RFL, etc

당사는 '스타' 필름 제조기술을 활용, 기존 ODF 제품과는 차별화된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스타(S: Smooth, T: Thin, A: Advanced Stability, R: Refreshing T aste) 기술은 주약의 쓴맛을 효과적으로 차폐해 복용 시 이물감과 불쾌감이 거의 없고, 용해도가 낮은 주성분들을 균일하게 분산함으로써 탁월한 약효 균일성과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필름의 파손이나 변질을 최소화한 게 장점입니다. 특히, 당사는 대부분의 필름 제조사가 사용하는 베이스 물질과 다른 물질을 자체 개발, 맛과 인습, 안정성 측면에서 품질을 높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ODF 제조 기술을 활용하여 발기부전 치료제인 타다라필(Tadalafil) ODF, B형간염 치료제인 엔테카비르(Entecavir) ODF를 국내 출시 완료하였으며, 정신분열증 치료제 아리피프라졸(Aripiprazole) ODF등의 품목을 출시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들 의약품은 모두 국내에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정신분열증 치료제 아리피프라졸 ODF는 현재 미국에서 개량신약(Incremental ly Modified Drug, IMD)으로 허가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며, 2016년 3월 BE Tes t(Bioequivalence Test,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를 마치고 2016년 7월 미국 FDA에 제출할 FE Study(Food Effect Study)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현재 결과 통보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임상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되면, NDA(New Drug Approval, 신약승인)를 제출 후 최종 품목 허가를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에 당사는 2017년 3월 중 미국 FDA 측과 방향성 및 진행 경과 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에 논의하는 Pre-NDA Meeting을 계획중에 있으며, 2017년 12월까지 NDA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NDA 제출 후 최종 허가까지 일반적으로 약 10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되는 바, 당사의 아리피프라졸 ODF는 2018년 말 또는 2019년 초부터는 미국 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ODF 의약품 제형은 2003에 처음 시장에 출시되었으나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시장규모가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편, 유사 의약품 제형인 구강붕해정(ODT, Orally Disintegrating Tablet)를 포함하여 2009년 약 US\$49BIL(약 54조원)으로 추산되는 Oral drug delivery market의 규모는 연평균 11.3% 성장하여 2016년 US\$92BIL(약 10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ODT 시장은 ODF로 대체가 가능한 시장이므로 본 ODF의 시장 규모는 ODT 시장의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며, 구강용해필름 제제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유럽의 일부 제약회사에서는 앞으로 약 25년 내에 정제(Tablet)시장의 약 20%를 대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내 구강용해필름 시장은 2011년 세계 최초로 SK케미칼이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로 하가 받았고, 화이자의 오리지널 제품인 '비아그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제약사에서 실데나필(오리지널 의약품) 성분의 필름형 제품을 생산하며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정제나 분말 형태의 의약품을 필름형으로 투여방법을 변경하는 데 있어 상당한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이로 인하여 별도의 제조시설이 요구되고 자본적 지출(CA PEX)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국내 필름형 의약품 산업의 경우, 별도의 설비시설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약사가 기술을 가진 업체에 발주하는 형식(OEM)으로 제조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필름제형 기술력을 보유하고 동시에 판매까지 하는 제약회사는 당사를 포함하여 국내 약 4~5개사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며,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실제 구강용해필름 제형을 연구,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10여개사 내외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2014년 독일 '옵티막스'(Optimags)사 첨단 설비를 도입하는 등 ODF 관련 설비투자 약 40억원을 집행하여, 시흥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생산을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FDA 품목 허가를 진행중인 아리피프라졸 ODF의 경우,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을 받은 독일의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를 통해 생산되어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설비시설 투자와 관련한 부담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향후 ODF 제품의 본격적인 확대 시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자본적 지출(CAPEX)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가 증가하는 등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해외 CMO에 관한 사항]

당사와 같은 중소형 제약사는 의약품 제조, 비임상, 임상 시험을 아웃소싱에 의존하는 경우가 높으며, 이를 위한 국내 인프라 부족으로 외국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16.3)에 의하면 2014년 기준 국내 바이오기업은 직원 수 30 0명 미만 기업이 87.2%, 손익분기점 미만 기업이 66.9%로 나타났으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유전자치료제 품질평가기관이 부재하여 대부분 해외 선진국의 글로벌 수준의 품질평가 인증을 획득한 전문 생산처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제제등의 품목허가 심사규정 3조 10항 신설을 통해 국내 생산 시설이 부재한 경우 해외CMO(의약품위탁생산시설)에서 제조하여 시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당사도 마찬가지로 미국 FDA가 인증하는 글로벌 수준의 품질평가 시설을 보유한 cGMP급의 생산CMO(의약품위탁생산시설)에 위탁하여 임상시험용 제품을 생산하고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강용해필름 제형 산업은 적응증 확대 및 지속적 기술 개발 등으로 시장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필름형 제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외에서 여전히 성장 초기 단계로 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사를 포함하여 일부 제품들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및 임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그 안정성과 효능이 어느 정도 입증되고 있으나, 타 제형 대비 제품화 이후 경과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으며,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르지 않은만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경구붕해필름 기술보유 주요 업체 및 제품군]

회사	대표 제품군
SK케미칼	엠빅스(발기부전치료제), 몬테프리ODF(천식치료제) 등
서울제약	아빌리파이(신경계질환), 아리셉트(치매지료제) 등
씨엘팜	유니센스(가글), 헤모라민(비타민) 등
CTC바이오	바라쿠르드(B형 간염치료제), 넥시움(위궤양 치료제) 등

# [혁신형 제약기업 미지정에 관한 위험]

사. 보건복지부는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약가 결정시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제약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 6월 총 41개의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 이후 2014년 제2차 인증, 2016년 제3차인증을 거쳐 현재 총 46개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공인한 혁신역량 보유 기업이라는 인증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 및 판매 제휴, 금융기관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중상위권 제약사 대부분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만큼 각 사에 돌아가는 혜택에 따른 차별화는 현재까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사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지 못하였으며, 선정된 제약사 대비 정부지원 혜택이 적으므로 당사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에서는 약가인하 이외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R&D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제약사들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하여 선별적 약가우대 및 세제혜택, 자금조달 지원 등을 통해 2015년까지 이들 기업의 R&D 투자비율을 평균 15%까지 높임으로써 글로벌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첫 단계로 2012년 6월 총 41개의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2014년 제 2차 인증, 2016년 제 3차 인증을 거쳐 현재 총 46 개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업]

구분	선정 기준 및 결과
1. 일반 제약사 (37개)	
A. 의약품 매출 1,000억원 이상 (26개)	- R&D 투자 실적, 인구인력, 생산시설, 특허, 라이센스 아웃, 해외진출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

구분	선정 기준 및 결과
	- 광동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안국약품, 유한양행, 일동제약, 일양약품, 종근당, 태준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 한미약품, 현대 약품, 휴온스,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SK케미칼
B. 의약품 매출 1,000억원 미만 (11개)	- 개량신약 등 특화분야에서 전문성을 배양해 온 기업 - 건일제약, 대화제약, 드림파마, 삼양바이오팜, 에스티팜, 이수앱지스, 카엘젬백스, 한국콜마, 한림제약, 한올바이오파마, SK바이오팜
2. 바이오벤처 (7개)	- 매출 규모 등은 작은 편이나 높은 기술력과 창의적 사업모델을 구축해 온 기업 - 메디톡스, 바이넥스, 바이로메드, 비씨월드제약, 바이오니아, 제넥신, 크리스탈지노믹스
3. 외국계 제약사 (2개)	- R&D투자(초기임상시험), 국내 생산활동, 해외진출 등에서 우수한 평가 를 받은 기업 -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한국오츠카

출처: 보건복지부

2012년 제1차 인증, 2014년 제2차 인증 및 2016년 제3차 인증을 통하여 선정된 총 4 6개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약가 결정시 우대 등의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인증 연장 심사를 통하여 인증 전· 후 제도 운영에 따른 정책 효과 점검 결과, 산업구조 선진화, 글로벌 신약 개발, 해외진출 확대 등 측면에서 일정 부분성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1년 3월 제정)'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능력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으로,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증기간 동안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연수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정책적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 기업이 향후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당사의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관계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혁신형 제약 기업 신청자격]

ㅇ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제약기업"으로서 신약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

- ①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천억원 미만인 제약기업 : 연간 50억원 또는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②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제약기업: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③ 미합중국 또는 유럽연합의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보유한 제약기업: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 연간 의약품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기준 :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사업연도 평균
- \* 연구개발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회계기준의 연구/개발 단계 비용과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복지부장관 고시로 인정하는 비용(「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용」에 해당하는 비용)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공인한 혁신역량 보유 기업이라는 인증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 및 판매 제휴, 금융기관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중상위권 제약사 대부분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만큼 각 사에 돌아가는 혜택에 따른 차별화는 현재까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재인증 심사시 연구개발 투자실적 등에 따라 특별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증이연장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당사의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지원 및 실질적 세제 혜택의 시행 등 직/간접적인 혜택이 증대 될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주요내용]

지원사항	주요내용
R&D 우대	혁신형 제약기업의 정부 R&D 참여시 가점 부여
세제 지원	R&D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 확대 * 원천기술 : 임상 1,2상 추가 / 신성장동력분야 : 백신추가
부담금 면제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시설 건축에 따른 관련법상 부담금 면제 *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입지 규제 완화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시설 건축의 특례 부여

지원사항	주요내용
	* 시제품 생산시설도 연구시설에 포함, 입지 가능 지역 확대
약가 우대	최초 제네릭 제품 최초 1년간 오리지널가 68% 수준 적용 신약 개발 촉진을 위한 신약약가 결정체계 개선
공공펀드 투자 우대	공공투자펀드를 통해 R&D 투자 자금 우선 지원
정책자금 융자	수출용 의약품 해외 임상 3상 자금 융자 지원(수은) * 소요 자금의 90%(최대 1,000억원), 0.5% 우대 금리, 8년 신성장동력 융 자자금, 무역보험, 수출신용보증 지원 등
인력지원	혁신형 제약기업의 해외 전문인력 채용 비용 지원,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비용 우선 지원
우수기업지원 프로그램 선발 우대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World Class 300 사업 등 선정시 우대

출처 : 보건복지부

## [상품매출 비중 확대로 인한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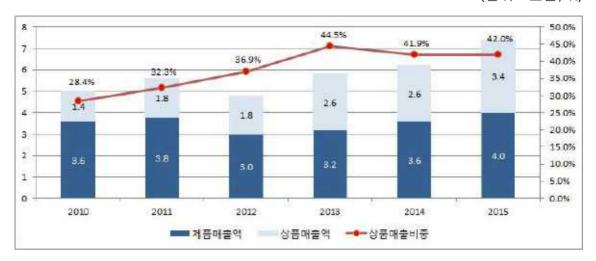
아. 약가인하 등의 악화된 사업환경하에서 매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하여 국내 제약회사들은 다국적 제약사의 품목을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11개주요 상장 제약사의 매출 구성과 비교할 때 당사 상품매출의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제약산업 전반의 상품매출의 비중 확대가 당사의 사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매출은 대체로 수익성이 낮고 불공정 계약조건도 많아장기적으로 제약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며, 품목 도입의 확대로 인한 제품/상품 비중의 변화는 상품의 높은 원가율로 인해 개별제약사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약가인하 등의 악화된 사업환경하에서 매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하여 국내 제약회사들은 다국적 제약사의 품목을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신용평가 및 각사 공시자료에 따르면 11개 주요 제약사의 합산매출 중 상품비중은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4년말 기준으로 41.9%, 2015년말 기준 42.0%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 2010년 71.6% 였던 제품매출은 2014년말 기준 58.1%, 2015년말 기준으로는 58.0%까지 축소되는 등 국내 제약사들의 자체 품목은 감소하고 다국적 제

약사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주요 제약사의 제품/상품 매출액 추이]

(단위: 조원, %)



제품-상품 매출액 추이

출처: 각사 공시자료, 한국신용평가

주) 11개 주요 제약사(동아에스티, 대웅제약, 유한양행, 녹십자, 한미약품, 제일약품, JW 중외제약, LG생명과학, 일동제약, 광동제약, 한독) 합산기준

당사의 제약부문은 제네릭 품목 확대 및 소화성궤양용제 등 주력 제품의 꾸준한 매출 상승, ODF 신제품 출시 등에 힘입어 최대주주가 변경된 이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8.5%의 높은 성장율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매출의 대부분이 정제형 제품으로 이뤄지고 있어 당사의 상품 매출 비중은 11개 주요 제약사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 [당사 유형별 매출액 추이]

(단위:백만원)

구분	2013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반기	
T -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제품	15,729	77.1%	22,071	97.0%	21,167	78.3%	14,098	89.0%
상품	884	4.3%	681	3.0%	1,171	4.3%	1,384	8.7%

구분	2013년		2013년 2014년		201	5년	2016년 반기	
' -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급액	비중	급	비중
기타	3,789	18.6%	_	_	4,704	17.4%	353	2.2%
합계	20,402	100.0%	22,752	100.0%	27,042	100.0%	15,835	100.0%

### 주) 기타는 수탁가공매출 등

이러한 상품 매출 의존도의 증가는 외형 및 이익규모의 확대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상품 매출은 대체로 수익성이 열위하고 불공정 계약조건도 많아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사 간에 의약품을 공급/판매하는 경우, 불공정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표한 바 있습니다.

# [공정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불공정우려 계약조항	개선 내용
경쟁제품 취급금지	1. 계약기간 내 연구개발・생산 제한 금지 2. 계약기간 종료 후 경쟁제품 취급제한 금지
최소구매량 • 판매목표량 한정	판매 및 구매목표 미달 시 즉시 계약해지 금지
원료구매 강제	제품의 품질 보장 등을 위한 경우에만 배타적 원료구매 규정 가능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상기 가이드라인은 모범계약서의 형태로써 자율적으로 권장되는 사항이지만, 정부규제가 강한 국내 제약산업의 여건상 상당한 영향력을 보이며관행적으로 사용되어오던 제약분야 거래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의 자율시정 및 상품 매출의 수익성 확대 등을 통한 모범적인 계약관행 조성 등 주로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도입하여 판매하는 국내 중상위 제약사들에게 일정부분 영업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상기 언급하였듯이 상품 매출의 비중이 높지 않으며, 전략적으로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도입한 의약품에 대한 판권 매출보다는 당사 개발 제품 매출에 주력함에 따라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약 산업 전반의 추세에 따라 당사 역시 잠재적으로 상품 매출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매출과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한미 FTA에 따른 신약 특허권 강화에 관한 위험]

자.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어 우리나라는 이행 의무 유예기간 3년 후인 201 5년 3월 15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인한 신약 특허권 강화로 인해, 단기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제네릭 의약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이행법률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어 우리나라는 이행 의무 유예기간 3년 후인 2015년 3월 15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신약의 특허가 존속하는 기간 중에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시판 허가가 신청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신약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만약 이사실을 통지받은 특허권자가 제네릭 의약품 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자동으로 중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특허권 침해로 판명된 시점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사후적으로 취소하는 현행 제도와 다르며, 특허권 침해가 판명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이 제도에서는 특허 유·무효 여부에 관계없이 신약 특허권자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복제약의 품목 허가나 시판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 협정문 제18장의 내용에 따라 개량신약 또는 제네릭의약품의 개발시 의약품 허가와 특허연계조항에 따라 신약보유 원개발자에 대한 허가신청 통보 및특허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정부당국이 일정기간 제네릭 시판허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시행으로 상대적으로 개발능력이 낮은 국내 제약업체들의 제품 개발 및 출시 지연으로 성장동력 및 잠재력 제한, 소송진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체 개발보다는 License-in의 비율증대를 초래하는 등 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주요 협정 내용]

항목	조문 내용
제5장 제5.3조 제5항 마목	5. 당사국 중앙정부의 보건의료 당국이 당사국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 프로 그램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급여를 위한 적응증의 등재나 의약품 또는 의료 기기를 위한 급여액 설정을 위한 절차를 운영하거나 유지하는 한도에서, 당사국은 (중략) 마. 권고 또는 결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발동될 수 있는 독립적인 검토 절차가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제5장 제5.6조 제1항	1. 제9.8조(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에 합치되게, 당사국은 의약품.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비임상시험관리기준, 그리고 복제의약품의 시판허가에 대한 협정을 교섭하자는 요청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기관에 의하여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인정하도록 하는 요청에 대한 검토를 촉진할 것이다.
제18장 제18.9조 제5항	5. 당사국이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원래 제출한 인 이외의 인이 그러한 정보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영역에서의 이전 시판허가의 증거와 같이 이전에 허가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의 증거에 의존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가. 그 제품 또는 그 제품의 허가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허가당국에 통보된 특허의 존속기간 동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시판허가를 요청하는 모든 그러한 다른 인의 신원을 특허권자가 통보 받도록 규정한다. 그리고나. 그 제품 또는 그 제품의 허가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허가당국에 통보된 특허의 존속기간 동안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 없이 그러한 다른 인이 제품을 시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국의 시판허가 절차에서의 조치를 이행한다.

출처 : 외교통상부 FTA

한편, 한국제약협회는 연간 1,673~3,170억원의 매출액 감소를 예상하였으며, 우리 나라 의약품 시장에서 제네릭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량기준으로 60~7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기 사안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 니다.

실제로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부분 산업의 대 미국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했지만 보건산업 분야의 대미 무역 적자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분석한 '한미 FTA 발효가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 따르면,한미 FTA 발효전 1년6개월(2010.10~2012.3)과 발효후 1년6개월(2012.4~2013.9)을 비교할 때 전산업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189억 6천만달러에서 266억 9천만달러로 40.8% 증가한 반면,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의 대미 무역수지적자는 28억 1천만달러에서 30억 6천만달러로 8.8% 증가하는 등 무역역조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산업 부문별 대미 무역수지는 의약품의 경우 적자가 13억 2천만달러에서 16억 6

천만달러로 25.7% 증가했으며, 의료기기의 경우 적자가 11억달러에서 9억 7천만달러로 12.0% 감소하였고, 화장품의 경우 적자가 3억 9천만달러에서 4억 3천만달러로 1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약품과 화장품의 대미 무역역조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한미FTA 발효후 1년 6개월 동안 전산업의대미 수출은 발효전 1년 6개월에 비해 4.2% 증가한 890억 4천만달러, 수입은 6.2%감소한 623억 5천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 흑자가 발효전 189억 8천만달러에서 발효후 266억 9천만달러로 40.8% 급증했습니다.

또한 한미FTA 발효 1년 6개월 전후 보건산업의 대세계 수출은 14.3% 증가한 109억 7천만달러, 수입은 7.2% 증가한 194억 9천만달러로 집계됐고, 국내 보건산업의 대세계 무역수지 적자는 발효전 85억 9천만달러에서 발효후 85억 2천만달러로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세계 무역수지는 의약품의 경우 적자가 65억 9천만달러에서 69억 5천만달러로 5.5% 증가했으며, 의료기기의 경우 적자가 15억 3천만달러에서 13억달러로 15.1% 감소하였고, 화장품의 경우 적자가 4억 7천만달러에서 2억 7천만달러로 43.3%나 크게 감소했습니다. 전산업의 대세계 수출은 1.0% 증가한 8,263억 7천만달러, 수입은 0.7% 감소한 7,682억 5천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전산업의 대세계 무역수지 흑자는 447억 3천만 달러에서 581억 2천만 달러로 29.9%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 발효후 1년 6개월간 보건산업의 대세계 무역역조는 0.8% 개선된 반면 대미 무역역조는 8.8% 심화되었으며, 특히 의약품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는 25.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미 FTA 발효 후 대미국 보건산업 수출입 현황]

(단위: 억달러, %)

구분 산업구분			대세계	대세계		대미국	
		발효전 1년 6개월	발효후 1년 6개월	증기율	발효전 1년 6개월	발효후 1년 6개월	증가율
	전산업	8,185.40	8,263.70	1.0	854,6	890.4	4.2
	보건산업	95.9	109.7	14.3	10.0	10.9	9.3
수출	의약품	43.2	50.1	16.0	2.5	2.9	16.8
	의료기기	39.1	43.8	11.9	6.6	6.6	1.4
	화장품	13.6	15.7	16.1	0.9	1.3	44.5

		대세계		대미국			
구분	산업구분	발효전 1년 6개월	발효후 1년 6개월	증가율	발효전 1년 6개월	발효후 1년 6개월	증가율
	전산업	7,738.10	7,682.50	-0.7	665.0	623.5	-6,2
	보건산업	181.8	194.9	7.2	38.1	41.5	8.9
수입	의약품	109.1	119.6	9.7	15.7	19.5	24.3
	의료기기	54.4	56.8	4.3	17.6	16.3	-7.0
	화장품	18.3	18.4	0.7	4.9	5.7	16.7
	전산업	447.3	581.2	29.9	189.6	266.9	40.8
	보건산업	-85.9	-85.2	0.8	-28.1	-30.6	-8.8
무역 수지	의약품	-65.9	-69.5	-5.5	-13.2	-16.6	-25.7
	의료기기	-15.3	-13.0	15.1	-11.0	-9.7	12.0
	화장품	-4.7	-2.7	43.3	-3.9	-4.3	-10.1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다만, 현재 대부분의 국내 제네릭 회사들은 특허권에 도전하지 않는 제네릭 즉, 특허만료 이후 출시를 전제로 허가신청을 하는 제네릭 위주의 판매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기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시행은 R&D 역량을 갖춘 제약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R&D 활동을 촉진하여 제약산업 선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15년 3월 15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된 이후 약 1.5년이 경과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 제도의 영향평가를 진행중에 있어 현재까지 공식적인 결과가 발표되기 전이나, 제도 시행과 동시에 일시적인소송 건수의 증가가 있었을 뿐 현재까지 제도 시행에 따른 국내 제약산업에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제품 포트폴리오는 현재 제네릭 위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R&D 확대로 인한 신약 및 개량신약의 개발 이 가시화될 시 한미 FTA에 따른 제약시장 개방으로 인한 다국적 제약기업의 특허권 관련 소송 확대 등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회사위험

※ 당사는 K-IFRS 적용 대상 기업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나, 당사의 종속회사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없으며, 2016년 2분기말 현재 전액 손상된 상태이므로 별도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 대비 당사의 재무현황을 보다 정확히 나타낸다고판단하여 증권신고서 투자위험요소 중 회사위험은 별도의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대주주 변경 전 회사에 대한 위험]

가. 당사는 2001년 (주)미창(現,에머슨퍼시픽(주))에서 피혁사업 전문화를 목적으로 인적분할하여 설립(회사명 (주)피엠케이) 후 코스닥 상장하였습니다. 상장 이후 **현 최대** 주주인 (주)차바이오텍이 최대주주의 지위에 등극하기 이전에 당사는 잦은 사업내용 변경 및 대표이사 변경, 최대주주 변경 사실과 1건의 합병 및 다수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진 점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연혁으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우발부채 또는 손실이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설립 이후 일자별 연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	세부내용
2001.08	(주)미창(現,에머슨퍼시픽(주))에서 인적분할하여 설립(회사명 (주)피엠케이) 후 코스닥 상장
2003.03	정밀화학, 합성수지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 판매 사업으로 사업목적 변경
2003.07	대표이사 변경 (김명복 -> 홍태준)
2004.03	대표이사 변경 (홍태준 -> 박문규)
2005.03	제3자배정 유상증자(2,200,000주 @640원)
2006.03	의약품, 원료의약품 제조 및 판매사업으로 사업목적 변경 최대주주간 주식양수도 계약 및 최대주주 변경(박문규외 5인 -> 박진우외 5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830,000주, @2,400원)
2006.04	피혁사업 생산 중단
2006.05	최대주주 변경(박진우외 5인 -> (주)천지산) 및 대표이사 변경(박문규 -> 김정국) (주)스카이뉴팜으로 상호 변경 (피엠케이 -> 스카이뉴팜)
2006.06	정밀화학, 합성수지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 판매 사업 중단 (주)천지산이 개발한 테트라스의 판권대행계약 체결
2006.08	유상증자(제3자배정) 50억(251,380주, @19,890원)
2006.11	(주)쎌라트팜코리아 계열사에 편입(지분 51%확보)
2007.02	최대주주 변경((주)천지산 -> 배일주)

일자	세부내용
2007.03	주주배정 유상증자 147억(1,400,000주, @10,500원)
2007.08	무상증자 100%(재원 : 주식발행초과금 3,163,430,500원)
2008.02	(주)쎌라트팜코리아 흡수합병 대표이사 변경(김정국 -> 배일주)
2008.03	유상증자(제3자배정) 20억(516,790주, @3,870원)
2008.04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50억원)
2008.05	전환사채 발행(65.32억원)
2008.09	(주)스카이뉴팜이 (주)천지산을 흡수합병하는 합병계약을 체결
2008.11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주)스카이뉴팜이 (주)천지산을 흡수합병하는 합병계약 주총 승인
2008.12	(주)스카이뉴팜과 (주)천지산과의 합병계약 취소
2009.04	사채 원리금 미지급 발생
2009.05	보유부동산 임의경매절차 개시 결정
2009.08	대표이사 변경 (배일주 -> 신동선)
2009.11	대표이사 변경 (신동선 -> 박선규)
2010.03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 의견거절 사유 발생
2010.04	2010년 4월 12일 정정 감사보고서를 제출(감사의견 : 적정)하여 의견거절 사유 해소
2010.08	최대주주 변경(배일주-> 임해숙)
2010.10	대표이사 변경 (박선규 -> 공동대표이사 김진서, 황승규)
2010.11	범일인더스트리(주) 컬러 화강석 국내영업(석재사업) 양수
2011.03	대표이사 변경 (공동대표이사 김진서, 황승규 -> 김진서)
2011.09	대표이사 변경 (김진서, 정경석(각자 대표이사) -> 김봉선)
2012.01	일반공모증자 (10억원, 1,663,891주@601원)
2012.02	최대주주 변경(임혜숙->김원정)
2012.09	제4회 국내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200억원) (주)스카이뉴팜과 (주)차바이오텍(舊,(주)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의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2012.10	최대주주 변경(김원정->노연호)
2012.11	대표이사 변경(김봉선 → 양원석) 최대주주 변경(노연호 → (주)차바이오텍(舊,(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 제3자배정유상증자(163.4억원, 20,000,000주@817원)
2013.03	(주)스카이뉴팜에서 (주)CMG제약으로 상호 변경
2013.07	(주)차바이오텍의 개량신약 ODF 6개 품목에 대한 자산양수
2014.03	대표이사 변경(양원석 -> 김정호)
2014.04	(주)차바이오메드의 신약개발 사업부에 대한 인적·물적·설비 등 권리에 대한 영업양수
2014.11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 R&D 센터 입주
2015.11	대표이사 변경(김정호 -> 이주형)

당사는 2001년 8월 에머슨퍼시픽(주)(舊,(주)미창)으로부터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법 인으로, 그간 피혁 사업 부문을 주력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부 터 주력산업이던 피혁사업은 국내 업체의 경우 중소업체를 비롯한 많은 업체들이 난 립, 경쟁이 치열하였으며 인건비 상승, 원피가격 상승, 환율변동 등의 영향으로 매출 액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이후 매출액이 매년 급감하는 부진한 영업실적을 보이고 수 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2003년 3월 이후 신규사업으로 보호필름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광학보호필름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하여 모듈보호필름은 국내 LCD 주력업체 중 하나인 엘지필립스엘시디에 납품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에는 기존 주력 사업이던 피혁사업의 비중을 점차 축소하면서 보호필름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영업을 진행하였으나 예상보다 실적이 부진하였고 수익성마저 악화되어 공장 가동을 2006년 6월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매출액 부진을 거듭하여 2006년 1분기 매출액은 623백만원이라는 저조한 실적을 시현하게 되었으며, 피혁 사업부문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규사업으로 진행하였던 보호필름 사업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여 결국 2006년 6월 생산중단을 하였고, 2006년 6월말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50.3%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경영악화에 따라 2006년 5월 기존 경영진과 최대주주는 (주)천지산에 경영권을 양도하였으며, (주)천지산은 의약품, 원료의약품 제조 및 판매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주)스카이뉴팜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주)스카이뉴팜이 진출하고자 하였던 사업 영역은 제약사업, 기능성식품사업, License In/Out사업으로 (주)스카이뉴팜의 대주주인 (주)천지산이 개발하고 있는 항암제 "테트라스"의 국내판권계약을 (주)천지산과 맺고, 임상시험과 국내 시판 허가 후 (주)스카이뉴팜에서 원료약품의 제조 및 생산을 담당할 계획이었습니다.

경영권 양도 후 (주)천지산과 항암치료제 테트라스의 판권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총계약금액 80억원 중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35억원을 2006년에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천지산에서 추가적인 진행상황이 없어 동 금액은 장기선급금에 계상된 후전액 손상처리되었으며 동 선급금은 2016년 반기말 현재 전액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차 중도금은 임상 2상 신청시 지급하며, 잔금은 국내시판 허가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추가적인 진행사항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불확실한상태입니다.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변경 (2006. 05. 09)]

		최대주주명	박진우외 5인		
	변경전	소유주식수 (주)	9,505,229		
1. 변경내용		소유비율 (%)	67.75		
1. 단장대통		최대주주명	(주)천지산외 1인		
	변경후	소유주식수 (주)	6,072,000		
		소유비율 (%)	43.27		
2. 변경사유	2. 변경사유		주식 장외 양도		
3. 지분인수	3. 지분인수목적		경영권 인수		
- 인수자금	· 조달방	<u></u> 범	자기 자금 및 차입금		
- 인수후 연	- 인수후 임원 선·해임 계획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확정 예정		
4. 변경일자			2006년 05월 09일		
5. 변경확인일	일자		2006년 05월 09일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세부변경내역 (2006. 05. 09)]

HU(HOIU)	וור וכ	변경	전	변경	ш	
성명(법인명)	관 계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비고
(주)천지산	변경후 최대주주		_	3,096,720	22.07	_
배일주	변경후 최대주주 의 특수관계인			2,975,280	21.20	_
박진우	변경전 최대주주	2,850,716	20.31	1,433,229	10.21	_
박문규	변경전 최대주주 의 특수관계인	2,668,071	19.01		-	_
김영희	변경전 최대주주 의 특수관계인	1,377,513	9.81	_	-	_
박성은	변경전 최대주주 의 특수관계인	1,335,667	9.52	1,000,000	7.12	_
박성민	변경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1,268,404	9.04	1,000,000	7.12	_
이지자	변경전 최대주주 의 특수관계인	4,858	0.03	_	_	_

이후 2007년 2월에는 (주)스카이뉴팜의 최대주주가 (주)천지산에서 배일주로 변경되었으며, 변경사유는 배일주의 경영참가 목적이었습니다. 한편, 배일주는 (주)스카이 뉴팜의 최대주주가 되기 9년전인 1996년 10월 '기적의 항암제' 논란으로 인하여 약사법(의료법, 약품제조법)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 [최대주주 세부변경내역 공시내용 (2007.02.14)]

MM/HVIM/	.p. 게 변경전		변경	шП		
성명(법인명)	관계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비고
(주)천지산	변경전 최대주주	1,032,239	20.95	1,032,239	20.95	ı
배일주	변경후 최대주주	991,759	20.12	1,048,834	21.28	_

한편, 2008년 2월에는 항암제 테트라스의 판매를 대비한 생산 및 영업체계의 확보와 제약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주)스카이뉴팜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주)쎌라트팜코리아(舊,성진제약(주))를 흡수합병(소규모합병)을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스카이뉴팜의 합병결정 공시내용(2008.01.14)]

1. 합병방법	(주)스카이뉴팜이 (주)쎌라트팜코리아를 흡수합병(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항암제 테트라스의 판매를 대비한 생산 및 영업체계 의 확보와 제약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주주 가 치 극대화를 달성하고자 함
3. 합병비율	(주)스카이뉴팜: (주)쎌라트팜코리아 1 : 5.3178434
4. 합병비율 산출근거	(주)스카이뉴팜은 증권거래법시행령제84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의 규정에 의거 합병가액("기준주가"에 의한 평가방법. 단, 기준주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를 합병가액으로 할수 있음)을 산정하였으며, 피합병회사인 주권비상장법인 (주)쎌라트팜코리아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유가증권발행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82조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

			5조 내지 제9조에 의거하여 삼덕회계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병가액("본질가치"에 의한 평가방 법)을 산출하였습니다				
5. 합병신주9	의 종류와 수 (	보통주				430,745	
주)		우선주	_				
	회사명		(주)쎌라트팜코리아				
	주요사업		의약품업 등				
6. 합병	회사와의 관계		발행주식의 7	· 25.3%를 보유함	한 계열회사		
상대회사	=17 1101045 1		자산총계	6,542	자본금	405	
	최근 사업연도 X  (백만원)	H무내 <del>푱</del>	부채총계	4,960	매출액	9,183	
	( 122)		자본총계	1,582	당기순이익	55	
	회사명				_		
7. 신설	7. 신설 자본금 (원)		-				
합병회사	주요사업		_				
	재상장 여부		_				
	주주총회예정일?	자	_				
	구주권제출기 간	시작일	-				
		종료일	_				
0 =140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_				
8. 합병일 정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	시작일	2008년 01월 16일				
	출기간	종료일	2008년 02월 18일				
	합병기일			2008년	02월 19일		
	합병등기예정일?	자	2008년 02월 20일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0. 타법인으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1. 주식매수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소규모합병으로 해당사항 없음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YF0101	니 차서어ㅂ	참석(명)			1		
- VLZIOI)	사 참석여부	불참(명)	_				
- 감사(감	사위원)참석여부			<u> </u>	물참		

주1) 금번 합병은 소규모합병이므로 주주총회는 이사회결의로 가늠함. 합병승인 이사회결의일 (2008.01.15), 합병종료보고 총회 이사회(2008.02.19)

주2) 합병대상회사의 재무내용은 2007년9월말 재무제표(9월말 결산임) 기준임.

주3) 우회상장 해당여부 및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 없음

주4) 소규모 합병에 해당하여 별도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음

주5) 피합병회사 최대주주 등의 보호예수내역(1년간 매각제한)

(단위: 주.%)

구 분	주주명	발행주식수	합병후 지분율	비고
최대주주(본인)	(주)스카이뉴팜	324,389	2.47	자사주
주주	심우진	53,178	0.40	자발적 보호예수
주주	박응조	53,178	0.40	시킬ㄱ 보오에누
합 계		430,745	3.29	

이후 2008년 9월에는 (주)스카이뉴팜이 최대주주인 (주)천지산의 흡수합병을 결정하였으며, (주)스카이뉴팜과 (주)천지산 2008년 9월 22일 각각 합병승인 이사회와 20 08년 11월 11일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통하여 합병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합병반대, 매수청구대금의 증가(29.1 억원), 합병에 따른 과다한 청산소득 세금(약 70억원)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기 어려운 합병비용이 발생하는 등 경영상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합병 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합병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한편, 2008년초부터 증권선물위원회의 (주)스카이뉴팜에 대한 감리가 진행되었으며 2008년 11월 15일에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아래의 징계를 받게 되었으며, 2009년 2월 16일에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위반의 주된 내용은 (주)스카이뉴팜이 코스닥 상장유지를 위한 주요업종 매출 년간 30억을 창출하기 위하여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 도매 매출을 발생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이 발생한 사유였습니다.

##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공시내용 (2008.11.06)]

1. 조치대상자	전 대표이사 김정국 담당임원 염현선	회사와의 관계	전,현 임원
	① 매출액 및 매출원	가 과대계상(제6	기 : 2,334백만원,

2. 감리(조사) 지적사항	제7기: 1,893백만원) - 구매대행 거래 관련수익을 총액으로 계상함으로써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제6기 2,334백만원 및 제7기 1,893 백만원 과대계상 ② 매출액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제6기: 506백만원) - 외관상 요건을 갖춰 매입 및 매출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회계처리함으로써,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506백만원 허위계상 ③ 허위자료제출 - 조사.감리 과정중 허위의 계약서 및 거래명세표 제출 ④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 '08.5.21.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 상' 재무에 관한 사항'에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과대계상(제6기 2,334백만원 및 제7기 1,893백만원)되고,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허위계상(제6기 506백만원)된 제6기 및 제7기 재무제표를기재 [2006회계년도] 당기순이익 △3,411→△3,411 매출액 3,325→ 485 [2007회계년도] 당기순이익 △890→△890 매출액 3,689→1,796
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과징금(254.2백만원) - 검찰고발(담당임원) - 검찰통보(전 대표이사) - 감사인지정 3년(2009 <sup>~</sup> 2011회계연도) -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4. 조치결정일	2008-11-05
5. 향후대책	1. 당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은 과거 발생한 것으로 2008년 제무제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당사는 회계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차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회계처리부서 직원들에 대하여는 더욱 교육등을 강화하여 정확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 4월 24일을 조기상환기한으로 한 2008년 4월 발행한 제1회 신주인수

권부사채에 대해 원리금 54억원이 조기상환 청구되었으나, (주)스카이뉴팜은 유동성부족으로 사채원리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주)스카이뉴팜은 신규 사채발행을 통해 동 미지급금 상환을 추진하였으나 신규 발행이 지연되면서 사채권자인 JJ Investment Limited.는 2009년 5월 14일 동 사채에 대해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신공장 토지 및 건물(근저당가액 75억원)에 대한 경매를 신청,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2010. 4. 9일자로 최대주주인 배일주로부터 회사가 10억원을 차입(만기 2011. 4. 30, 이자율 연8%)하여 JJ Investment Limited.에 상환후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추후 회사에서 자금 조달시 조달한 자금의 1/3이상을 상환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기상환청구에 대한 경매절차에 대한 진행내역]

일자	내 역
2009.03.25	사채권자 제이제이인베스트먼트의 조기상환 청구
2009.04.24	사채 원리금 미지급 발생
2009.05.08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 개시 결정 (대상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34-3 공장용지 및 지상 4층 공장)
2009.06.09	감정인 보람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서 제출
2009.09.07	채무자겸소유자 주식회사스카이뉴팜 추가감정 신청 제출
2009.09.10	감정인 감정평가보완(재감정)명령 발송
2009.09.22	감정인 보람감정평가사사무소 추가감정 완료(12종 기계)
2010,04,09	최대주주인 배일주로부터 10억원을 차입(만기 2011. 4. 30, 이자율 연8%)하여 IJ Investment Limited.에 상환후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추후 회사에서 자금 조달시 조달한 자금의 1/3이상을 상환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

출처: 2010년 9월 2일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0년 8월에는 최대주주 변경이 있었으며, 2010년 10월 선임된 대표이사 김진서의 특수관계인인 임해숙이 경영참가목적으로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최대주주 세부변경내역 공시내용 (2010.08.06)]

MM/HOI)H	וובות	변경전		변경후		
성명(법인)명	<u>관</u> 계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비고
배일주	변경전 최대주주	1,265,566	5.8%	1,265,566	5.8%	ı
이현자	변경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114,150	0.5%	114,150	0.5%	ı
(주)천지산	변경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600,000	2.75%	600,000	2.75%	ı
임혜숙	변경후 최대주주	_	_	2,100,000	9.62%	_

2010년 11월에는 범일인더스트리(주)의 컬러 화강석 관련 영업을 양수하여, 제약사업의 수익성 저하로 인한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을 석재사업을 통해 제거하고, 회사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변경 등으로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못하였으며, (주)차바이오텍(당시 (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이후 현재 석재사업은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석재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 발생한 미수금 11.47억원과 매출채권 2.5억원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존재하며, 전액 대손충당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 [석재사업 관련 영업양수 내용]

1. 양수영업		범일인더스트리(주) 컬러 화강석 국내영업 양수		
2. 양수영업 주요내용		범일인더스트리(주)에서 개발, 생산, 판매하는 제품(Color Stone: 컬러 화강석)에 대한 국내 독점적 영업권 및 영업 관련 물적 설비 일체		
3. 양수가액(원)		2,000,000,000원		
4. 양수목적		나업영역 확대를 통한 실적증대 및 회사의 본질가치 증 배를 통한 주주 이익 극대화		
5. 양수예정일자		2010-08-31		
	회사명	범일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자본금(원)	2,809,825,000원		
6. 양도법인내역	주요사업	건축자재 사업부문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75-1		
회사와 관계		_		
7. 영업양수 영향		신규사업 진출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와 주주 가치의 극 대화를 이루고자 함		

2012년 2월에는 또다시 최대주주가 임혜숙에서 김원정으로 변경되었으며, 해당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변경 (2012. 02. 09)]

		최대주주등	임혜숙			
	변경전	소유주식수(주)	2,100,000			
1. 변경		소유비율(%)	9.62			
내용		최대주주등	김원정			
	변경후	소유주식수(주)	1,009,701			
		소유비율(%)	2.31			
2. 변경사유			당사는 2012년 02월 14일자로 변경전 최대주주 임혜숙이 소유한 2,100,000주가 전량 장내 매도 로 처분 되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실권주 인수	누로 인한 병	변경 여부	아니오			
-양수도 주석	식의 보호여	수 여부	아니오			
3. 지분인수	목적		_			
-인수자금 2	C달방법		_			
-인수후 임원	<sup>원</sup> 선·해임	! 계획	_			
4. 변경일자			2011–12–31			
5. 변경확인	일자		2012-02-13			
			1. 변경일자는 2011년 제11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입니다.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변경확인일자는 명의개서대리인(국민은행 증 권대행부)으로부터 주주명부를 수령하여 주주변 동상황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고할 사항	3. 2011년 12월 31일 발행주식총수는 43,693,20 0주 입니다.			
			4. 제11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2011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최대주주 변경 확인
관련공시 : 2010.08.06 최대주주변경

## [세부변경내역]

서대/HOI/대 고대	변경	변경전 변경		· 경후	비고	
성명(법인)명 관계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김원정	변경후 최대주주	_	_	1,009,701	2.31	_

이후 (주)스카이뉴팜은 (주)차바이오텍(舊,(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과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대주주 변경이 있었습니다.

#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2012.09.26)]

1. 계약 당사자	양도인	주식회사 스카 이뉴팜	회사와의 관계	_		
	양수인	주식회사 차바 이오앤디오스텍	회사와의 관계	_		
	계약의 목적물	(주)스카이뉴팜의 제3자배정을 통한 신주발행 보 통주 20,000,000주 및 경영권				
2. 계약 내역	보호예수 대상 주식 의 포함 여부	વ				
	양수도 대금(원)	16,340,000,000				
-양수도 대금의 지급일정 및 지급조 건 등에 관한 사항		-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납입일 (2012년 11월 09일)에 신주인수대금 전액이 지급 예정임.				
3. 계약일자		2012-09-26				
		1. 신주의 발행 방법 : 제3자 배정방식				
		2. 신주의 종류와 수 : (주)스카이뉴팜 의결권부 기 명식 보통주식 20,000,000주 (액면가 500원)				
		3. 신주의 발행금액 : 1주당 817원 (총 16,340,000,				

	000원)	
	4. 청약일 : 2012 5. 납입일 : 2012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에 인수인이 지정배인으로 선임한 - 경영지배인은 의 의 경영권이 인수	선임 : 대상회사는 본 계약 체결일 성하는 사람을 대상회사의 경영지
	- 신임 이사 및 2 경욱을 포함한 4 , 인수인이 지명한 한다.	소집결의: 2012년 11월 08일 암사의 선임: 인수인이 지명한 윤 인을 대상회사의 이사로 선임하고 한 1인을 대상회사의 감사로 선임 관 변경: 사업목적 추가, 발행주
	7.본 신주발행 예정 주식은 증권의 발행 및 공 등에 관한 규정 및 코스닥 시장의 상장 규정에 라 보호예수할 예정임.	
	※관련공시	2012.09.26 주주총회소집결의 2012.09.26 주요사항보고서(유 상증자결정)

# [최대주주 변경 (2012.10.19)]

	최대주주등	김원정
변경전	소유주식수(주)	1,009,701
	소유비율(%)	2.31

1. 변경		최대주주등	노연호		
내용	변경후	소유주식수(주)	1,750,000		
		소유비율(%)	3.86		
2. 변경사유			당사는 2012년 11월 08일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2012년 10월 12일)로 인 하여 최대주주 변경을 확인 하였습니다.		
-실권주 인=	수로 인한 1	변경 여부	아니오		
-양수도 주4	식의 보호0	∥수 여부	아니오		
3. 지분인수	목적		-		
-인수자금 -	조달방법		-		
-인수후 임원	원 선・해임	l 계획	-		
4. 변경일자			2012-10-12		
5. 변경확인	일자		2012-10-19		
4. 변경일자 5. 변경확인일자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고할 사항	1. 본 최대주주변경은 2012년 09월 26일 기공시한 "경영권변경등에관한체결" 및 2012년 09월 2 6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와는 무관하며 2012년 11월 09일 예정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시 최대주주가 (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으로 변경 될 예정 입니다.  2. 변경일자는 2012년 11월 08일 제12기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입니다.  3. 변경확인일자는 명의개서대리인(국민은행 증권대행부)으로부터 주주명부를 수령하여 주주변동상황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4. 2012년 10월 19일 발행주식총수는 45,357,09 1주 입니다.		

# [세부변경내역]

MUI/HOI/UI	וורזים	변경전		변경후		шП
성명(법인)명	(법인)명 관계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비고
김원정	변경전 최대주주	1,009,701	2.31	407,237	0.90	ı
노연호	변경후 최대주주	260,000	0.60	1,750,000	3.86	ı

# [최대주주 변경 (2012.11.09)]

		최대주주등	노연호			
	변경전	소유주식수(주)	1,750,000			
1. 변경		소유비율(%)	3.86			
내용		최대주주등	(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			
	변경후	소유주식수(주)	20,000,000			
		소유비율(%)	30.60			
2. 변경사유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 취득			
-실권주 인수	누로 인한 병	변경 여부	아니오			
-양수도 주석	식의 보호여	∥수 여부	Ø			
3. 지분인수	목적		전략적 투자자로서 당사의 영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기 위한 신주 취득			
-인수자금 2	2달방법		_			
-인수후 임원 선·해임 계획			2012년 11월 0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 감사 1명을 선임하였으며 기존 임원 중 대표이사를 제외한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 감사 1명이 사임하였음.			
4. 변경일자			2012-11-09			
5. 변경확인일자			2012-11-09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12년 11월 09일 발행주식총수 45,357,091주 와 예정신주발행 20,000,000주를 합산하여 소유 비율을 계산 하였습니다.			

# [세부변경내역]

AU(HOI)U	הראו	변경	<del></del>	변경	형후	шП
성명(법인)명	관계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되고
노연호	변경전 최대주주	1,750,000	3.86	1,750,000	2.68	ı
(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	변경후 최대주주	_		20,000,000	30.60	ı

위와 같은 최대주주 변경 후 당사는 상호를 (주)스카이뉴팜에서 (주)CMG제약으로 변경 후 현재 전문의약품(강장질환용제, 기생성피부질환용제, 동맥경화용제 등)과 일반의약품(광범위피부질환치료제, 종합감기약, 해열진통소염제 등)의 제조 및 생산과 개량신약, 및 신약 개발 등의 R&D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차바이오텍이 인수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당사는 제네릭 품목 확대 및 소화성궤양용제 레미피드정 등 주력 제품의 꾸준한 매출, ODF 신제품 출시 등 매출 신장에 노력하고 있으며, (주)차바이오텍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기 전 발생한 채권 중 향후 추가적인 진행상황이 불명확한 "(주)천지산 장기선급금 35억원" 대해서 전액 대손설정을 하였으며,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매출채권 11억원에 대해서 2015년에 제각처리하여 부실채권 관리에 노력하고 있어 최대주주 변경 전 채권에 대한 손실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증권신고서일 현재 최대주주인 (주)차바이오텍으로 변경 전 잦은 사업내용 변경 및 대표이사 변경, 최대주주 변경 사실과 1건의 합병 건 및 다수의 자금조달 연 혁이 존재함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예측 불가능한 우발부채 또는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당사의 연혁을 인지하시고 투자 판단 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자본감소 위험]

나. 당사는 2015년 적자전환으로 인하여 자기자본이 2014년 대비 4.48% 감소하였으나, 2016년 반기에는 흑자전환에 성공하여 자기자본이 2015년 대비 3.04%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설립 이후 영업악화 등으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결손금이 대규모로 축적되었기 때문에 2016년 반기말 현재 자본금 대비 자본총계가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2016년 반기말 현재 누적결손금은 연결기준 557억원이기 때문에 자본총계가 자본금을 소폭(39억원)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가 성공적

으로 완료될 경우 자본잉여금으로 인하여 자본금의 증가폭 보다 자본총계의 증가폭이 더 크기 때문에 자본잠식의 우려는 완화될 예정입니다. 다만 유상증 자의 확정가액 결정에 따라 자본확충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당사의 수익활동이 악화되어 계속된 적자가 누적될 경우 자본총계 감소 발생 가능성 이 있음을 투자 판단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5년 적자전환으로 인하여 자기자본이 2014년 대비 4.48% 감소하였으나, 2016년 반기에는 흑자전환에 성공하여 자기자본이 2015년 대비 3.04%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과거 대규모 적자 발생으로 인하여 결손금이 누적되었으며, 2015년 말 564억원, 2016년 반기말 557억원의 결손금이 존재합니다.

(단위:백만원)

## [연결재무상태표-자본]

구분	2016년 반기	2015년	2014년	2013년
자본금	44,354	44,149	43,313	43,313
자본잉여금	59,414	58,464	57,682	57,682
자본조정	182	608	402	20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1)	(1)	(1)
결손금	(55,721)	(56,414)	(52,394)	(52,202)
자본총계	48,228	46,807	49,003	48,997
자본총계 증가율	3.04%	-4.48%	0.01%	55.10%
자산총계	57,495	56,533	58,068	55,913
자기자본비율	83.88%	82.80%	84.39%	87.63%
자기자본잠식률	_	_	_	_

출처:당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연결기준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절에 의거하여 일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와 동 규정 제28조 제1항 제3의 제2호에 의거하여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및 동 규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영업악화 등으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결손금이 대규모로 축적되었기 때문에 2016년 반기말 현재 자본금 대비 자본총계가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2016년 반기말 현재 누적결손금은 연결기준 557억원이기 때문에 자본총계가 자본금을 소폭(39억원)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자본잉여금으로 인하여 자본금의 증가폭 보다 자본총계의 증가폭이더 크기 때문에 자본잠식의 우려는 완화될 예정입니다. 다만 유상증자의 확정가액결정에 따라 자본확충규모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3분기부터 발기부전 치료제인 제대로필(Tadalafil) ODF 제품과 B형간염 치료제 엔테카비르(Entecavir) ODF 제품의 신제품 출시에 따른 매출 성장에 힘입어 2016년 반기에는 흑자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인한 수익활동이 악화되어 계속된 적자가 누적될 경우 자본총계 감소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 판단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출액 감소 및 수익성의 악화 위험]

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약가인하 압력과 리베이트 규제 강화 등 국내 제약업계에 비우호적인 환경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판매관리비가 전년 동기 대비 44억원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적자전환하였고, 개발비 손상으로 인한 기타비용이 10억원 증가하는 등 별도기준 3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2016년 반기 매출이 158억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의 126억원 대비 26.03% 증가하는 등 영업 측면에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제약산업의 경우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직접통제함에 따라 당사의 외형 성장 및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향후 예상치 못한 약가 관련 정부의 규제나 당사에 부정적인 정책이 시행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여러분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위주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약

산업 특성상 수익성은 정부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약가인하 압력과 리베이트 규제 강화로 인해 국내 제약사들의 영업환경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당사 수익성 지표] (단위: 백만원)

구분	2016년 반기	2015년 반기	2015년	2014년	2013년
매출액	15,835	12,565	27,042	22,753	20,322
매출원가	9,726	8,193	17,238	14,318	12,507
매출총이익	6,109	4,371	9,804	8,435	7,815
영업이익(손실)	443	(489)	(2,571)	446	823
당기순이익	536	(515)	(3,649)	172	335
자기자본	48,293	48,685	46,873	49,067	49,048
매출원가율	61.42%	65.21%	63.74%	62.93%	61.54%
매출액영업이익률	2.80%	-3.89%	-9.51%	1.96%	4.05%
매출액순이익률	3.39%	-4.10%	-13.49%	0.75%	1.65%
자기자본순이익률	1.13%	-1.05%	-7.61%	0.35%	0.83%

출처:당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영업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보유 품목들의 경쟁력과 신제품 출시 등을 바탕으로 외형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2013년 별도기준 매출액 203억원에서 2014년 228억원, 2015년 27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6년 반기 기준 매출액도 158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126억원 대비 26.03%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3년과 2014년 각각 4억원과 8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으나, 2015년에는 26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판매관리비가 전년 동기 대비 44억원 증가에 기인합니다. 또한, 2015년도에 개발 중단으로 인한 개발비손 상차손 13억원이 발생한 영향으로 기타비용이 2014년 대비 10억원 증가하여 3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판매비 및 관리비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년 반기	2015년 반기	2015년	2014년	2013년
매출액(A)	15,835	12,565	27,042	22,753	20,322
판애비 및 관리비(B)	5,666	4,860	12,375	7,989	6,993
급여	1,804	1,566	3,490	3,097	2,732
경상연구개발비	162	230	832	117	134
지급수수료	500	558	1,617	781	595
판매수수료	943	858	1,888	1,376	1,516
대손상각비	228	250	1,262	382	200
판매관리비의 비중(B/A)	35.78%	38,68%	45.76%	35.11%	34.41%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의 비중은 2013년 34.31%에서 2014년 35.11%, 2015년 45. 7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판매관리비의 경우 통상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함께 증가하며, 판매관리비의 지출은 향후 영업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특성이 있습니다. 2015년 판매관리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신제품 개발에 따른 경상연구개발비 증가의 영향과 연체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증가 영향으로 판매비 및 관리비가 현저히 증가하여 영업손실 발생을 야기하였습니다.

한편 당사 사업부문의 매출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비중] (단위: 백만원)

구분	2016년 반기	2015년 반기	2015년	2014년	2013년
상품매출	1,384	563	2,104	1,168	1,372
제품매출	23,723	19,643	41,031	33,705	29,851
매출할인	(9,625)	(7,884)	(16,658)	(12,571)	(10,901)
용역매출	353	242	566	451	_
합계	15,835	12,564	27,043	22,753	20,322
상품매출 비중	8.74%	4.48%	7.78%	5.13%	6.75%
제품매출 비중	89.03%	93.59%	90.13%	92.88%	93.25%
용역매출 비중	2.23%	1.93%	2.09%	1.98%	0.00%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당사의 매출실적 가운데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3개년(2013년~2015년) 평균 6.55%,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2.09%로, 당사 의약품 매출의 대부분은 당사가 직접 개발한 제품의 매출로 구성됩니다. 전체 매출액 가운데 상품매출의 비중은 201 4년 5.13%에서 2015년 7.78%, 2016년 반기 8.74%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당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매출 및 원가율]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반기	2015년 반기	2015년	2014년	2013년		
매출 세부내역							
상품매출	1,384	563	2,104	1,168	1,372		
제품매출	23,723	19,643	41,031	33,705	29,851		
매출할인	(9,625)	(7,884)	(16,658)	(12,571)	(10,901)		
용역매출	353	242	566	451	-		
합계	15,835	12,564	27,043	22,753	20,322		
매출원가 세부내역							
상품매출원가	678	327	673	330	308		
제품매출원가	8,725	7,645	16,073	13,669	12,198		
용역매출원가	323	221	491	319	-		
합계	9,726	8,193	17,237	14,318	12,506		
매출원가율 세부내역							
상품매출원가율	49.00%	58.08%	31.99%	28,28%	22,48%		
제품매출원가율	61.89%	65.01%	65.95%	64.68%	64.37%		
용역매출원가율	91.32%	91.27%	86.84%	70.75%	_		
총 매출원가율	61.42%	65.21%	63.74%	62,93%	61.54%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매출원가의 경우 회사 매출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총 매출원가의 경우 최근 3개년간 큰 변동이 없으며 62%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품매출 원가율의 경우 당사가 상품으로 매입하는 라비트라정 두발럽 연질캡슐 등의 상품 매입단가가 상승하여 최근 3개년간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제품 매출의 경우 일부 품목에서 매출할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차감한 제품의 매출원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주요 매출처는 종합병원 및 약국 등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국내 도매상으로 이에 대한 비중이 매출액의 대략 70%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내수 부문의 매출은 국내 병원 및 약국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당사 매출의 대부분이 내수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약 1,300여개의 매출처를 통해 매출을 시현하고 있으며 상위 5개의 매출처가 전체 매출액의 10%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다수의 매출처가 소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당사의 상위 5개사 매출거래처 매출 현황]

(단위:%)

매출순위	2016년 반기		2015년		2014년	
1위	우리들제약(주)	2.88%	동국제약(주)	4.01%	한국휴텍스제약(주)	3.84%
2위	동국제약(주)	2.75%	한국휴텍스제약(주)	3.17%	일양약품(주)	3.70%
3위	동인약품	1.61%	제일약품(주)	2.57%	우리들제약(주)	2.56%
4위	일양약품(주)	1.61%	일양약품(주)	2.07%	유일메디칼	2.15%
5위	로하스팜	1.61%	우리들제약(주)	1.66%	광동제약(주)	1.58%
상위 5개사 합계		10.46%		13.48%		13.83%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당사의 경우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매출처가 없어 전반적인 제약산업경기 침체시 당사의 매출 감소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주요매출처 자금상황에 따른 매출채권회전율의 영향이 적으며, 매출처가 다수의 약국 및 도매처로 분산되어 있어 거래처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급격한 영업활동의 악화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당사의 의약품 사업부문 전체 매출액 가운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0 .82%, 2014년 0.68%, 2015년 0.41%, 2016년 반기말 현재 2.16%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의약품부문 매출 중 수출의 비중]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반기	2015년 반기	2015년	2014년	2013년
총 매출액	15,835	12,564	27,043	22,753	20,322
수출	342	68	110	154	168

구분	2016년 반기	2015년 반기	2015년	2014년	2013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2.16%	0.54%	0.41%	0.68%	0.82%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당사의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반기말 현재 2.16% 수준이므로 향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손실 역시 전체 매출액 대비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2016년 반기와 2015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미국달 러화(USD)에 대한 원화 환율이 10% 변동 시 환율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반기말	2015년말		
	10% 상승시	10% 하락시	10% 상승시	10% 하락시	
미국달러(USD)	3	(3)	7	(7)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당사는 향후 지속적인 개량신약 연구개발과 오리지널의약품의 도입을 통한 신제품 개발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직접 통제함에 따라 당사의 외형 성장 및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향후 예상치 못한 약가 관련 정부의 규제나 당사에 부정적인 정책이 시행될 경우 당사의 영업성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당사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출채권 손상 위험]

라. 2016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매출채권은 158억원이며 연간 매출채권회전율은 2.03회수준으로 최근에 개선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매출처에 대한 채권회수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사는 보수적으로 대손충

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거래처의 부실로 인하여 추가적인 매출 채권 대손상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대내외 환경 변화등으로 인 하여 당사 주요 매출처인 의약품 도매상의 부도 또는 영업환경 약화 등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 한 경우 당사 매출채권의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어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라 당 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현금흐름이 약화되어 당사의 자금상 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매출액 및 매출채권 현황과 매출채권 회전율 추이와 매출액 규모가 당사와 유 사한 제약회사 두 곳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회,일)

#### [당사 매출채권 회전율 추이]

구 분	2016년 반기	2015년	2014년	2013년
매출액	15,835	27,043	22,753	20,322
매출채권	15,337	15,838	16,787	13,999
매출액 증가율	26.03%	18.85%	11.96%	26.94%
매출채권 증가율	-3.16%	-5.65%	19.92%	23.20%
매출채권 회전율	2.03	1.66	1.48	1.60
매출채권 회전일수	179.6	220.2	246.9	227.8

주1) 매출채권회전율= 매출액 / {(전기매출채권+당기매출채권)/2}

주2) 매출채권회전일수= 365/매출채권회전율

주3) 2016년 반기의 매출채권회전율 및 매출채권회전일수는 2016년 반기 매출액을 단순 연환산(\*2) 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 [유사 매출규모의 상장회사의 매출채권 회전율 추이]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삼성제약	0.95	0.57	0.71
슈넬생명과학	2.15	1.83	0.92

출처: KISLINE, 별도기준

2016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매출채권은 153억원으로 전기말 대비 3.16% 가량 감소

하였습니다. 2016년 반기 매출액은 전기 동기 대비 26.3% 증가한 158억원을 기록하여 매출채권 규모와 상이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채권회전율에 따른 매출채권회전일수는 2013년 227.8일에서 2014년 246.9일, 2015년 220.2일을 기록하며 회수기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회전일수는 영업활동으로 발생한채권이 얼마나 빨리 회수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매출채권회전일수가 짧아진다는 것은 당사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이 당사에 들어오는 기간이 짧아짐을 의미하므로 당사의 재무적 유동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경우 매출처가 다수의 약국 및 도매처로 분산되어 있어 거래처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급격한영업활동의 악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에서 발간된 '2014년 기업경영분석'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의 업종 평균매출채권회전율의 경우 2014년 3.45회(대기업 평균 3.52회, 중소기업 평균 3.27회)를 기록하고 있어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업종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당사의 대손정책은 매출채권에 대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 충당 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은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손상차손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매출채권 집합의 발생하였으나 아직 식별되지 않은 손상으로 구성되며, 매출채권 집합의 충당금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회수에 대한 과거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합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구분	2016년 반기	2015년	2014년	2013년
매출채권	15,337	15,838	16,787	13,999
매출채권대손충당금	(3,729)	(3,501)	(3,322)	(2,940)
충당금 비율	24.3%	22.1%	19.8%	21.0%
미수금	1,221	1,168	1,165	1,165
미수금대손충당금	(1,158)	(1,147)	(1,147)	(1,149)
충당금 비율	94.8%	98.2%	98.5%	98.6%

(단위: 백만원, %)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유사 매출규모의 상장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률 추이]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삼성제약	61.19%	63.06%	46.88%	
슈넬생명과학	0.66%	5.69%	16.18%	

출처: 각사 사업보고서, 별도기준, 매출채권만 고려한 설정률임

당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2015년 일시적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에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을 연령분석을 하여 회전일에 따라 충당금을 설정하는 기존보다 보수적인 방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미수금의 대손충당금의 경우 중단사업인 석재사업과 의료기기 및 용품에 대한 원재료 반품에 대한 충당금 설정금액으로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 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대손충당금 변동내역]

구분	2016년 반기	2015년	2014년	2013년
기초금액	4,647	4,468	4,089	3,910
대손상각비	239	1,262	382	215
대손환입	_	_	(3)	(36)
제각	_	(1,083)	_	_
기말금액	4,886	4,647	4,468	4,089

(단위: 백만원)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당사의 대손충당금 변동내역 중 2015년에 11억원의 매출채권 제각금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과거에 보유하던 주로 소규모 의원 및 약국 등의 부실채권에 대한 제각금액입니다. 또한, 2015년에 12억원의 대손상각비가 발생하여 2014년 대비 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을 기존보다 보수적인 방법으로 변경한 영향에 기인합니다.

한편,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연령분석 추세의 경우 180일 초과 채권인 불량채권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당사의 재무적 유동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위: 백만원)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연령분석]

78	2016년	년 반기	201	5년	201	4년	201	3년
구분	금액	구성비율	금액	구성비율	금액	구성비율	금액	구성비율
만기미도래	12,298	74.27%	12,644	74.35%	13,039	70.03%	10,635	68.82%
120일 이내	592	3.57%	380	2.24%	706	3.79%	425	2.75%
180일 이내	164	0.99%	289	1.70%	707	3.80%	367	2.37%
180일 초과	3,504	21.16%	3,692	21.71%	4,167	22.38%	4,027	26.06%
합계	16,558	100.0%	17,005	100.0%	18,619	100.0%	15,454	100.0%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한편, 당사의 주요 매출처는 종합병원 및 약국 등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국내 도매상으로 이에 대한 비중이 2015년 기준 매출액의 70.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내수 부문의 매출은 국내 병원 및 약국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당사 매출의 99.59% 정도가 내수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2015년 기준 총 매출의 0.41%만이 수출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어 규모가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매출처 분포는 일부 대형 제약사를 제외한 국내 중소형 제약사 전반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의 판매경로]

구분		판매경로
도· 소매유통 소매		회사 → 도매상 → 약국 → 소비자
		회사 → 약국 → 소비자
의원		회사 → 의원 → 소비자
병 의원유통	종합병원	회사 → 도매상 → 병원 → 소비자
	직접영업	회사 $ ightarrow$ 병원(Contact) $ ightarrow$ 도매상(중개) $ ightarrow$ 병원 $ ightarrow$ 소비자

출처 : 당사내부자료

[당사의 판매경로 별 매출 현황]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도매매출	19,193	14,896	13,903	10,932
병원매출	1,726	1,844	2,589	3,126
기타매출	6,123	6,013	3,830	2,197
합계	27,042	22,753	20,322	16,255
도매매출 비중	70.97%	65.47%	68.41%	67.25%
병원매출 비중	6.38%	8.10%	12.74%	19.23%
기타매출 비중	22.64%	26.43%	18.85%	13.52%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출처: 당사내부자료

당사의 매출채권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매출처에 대한 채권회수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사는 적극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보수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실 거래처들로 인하여 추가적인 매출채권 대손상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대내외 환경 변화등으로 인하여 당사 주요 매출처인 의약품 도매상의 부도 또는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 매출채권의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어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라 당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현금흐름이 악화되어 당사의 자금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고자산 진부화 위험]

마. 2016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재고자산은 67억원이며 연간 재고자산회전율은 5.19회정도로 최근 3년간 큰 변동이 없는 모습입니다. 당사는 업종평균 대비 우수한 수준의 재고자산회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형성장에 따른 재고자산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관리비용 증가 및 시간 경과에 따른 재고자산의 가치 감소 등의 영향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또한, 대내외 영업환경 변화에 의해 당사의 매출 실적 저하 및 재고자산관리 효율성이 저하될 경우, 재고자산회전율 등 관련 지표들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당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 판단시 유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표시하며, 재고자산을 가중평균법(단, 미착품은 개별법)에 의하여 산정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제품과 반제품의 원가는 원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기타 직접원가와 제조간접비로 구성됩니다. 순 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단위:백만원)

(단위: 백만원, 회, 일)

## [재고자산 세부내역]

구 분	2016년 반기	2015년	2014년	2013년
상품	400	157	226	98
평가손실충당금	(4)	(1)	(1)	(3)
제품	4,700	3,318	2,514	2,827
평가손실충당금	(9)	(4)	(16)	(20)
재공품	858	1,164	1,199	1,055
원재료	676	694	885	590
평가손실충당금	(46)	(15)	_	_
미착품	_	_	_	3
부재료	103	143	105	69
합 계	6,678	5,456	4,912	4,619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 [재고자산 회전율 추이]

구분	2016년 반기	2015년	2014년	2013년
매출액	15,835	27,043	22,753	20,322
매출액 증가율	26.03%	18.85%	11.96%	26.94%
재고자산증가율	22.43%	11.04%	6.37%	68.38%
재고자산회전율	5.19	5.20	4.75	5.31
재고자산회전일수	70.39	70.23	76.77	68.79

주1)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액/{(전기재고자산+당기재고자산)/2}

주2) 재고자산회전일수= 365/ 재고자산회전율

주3) 2016년 반기말 재고자산회전율 및 재고자산회전일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매출액은 2 016년 반기 매출액을 단순 연환산(\*2)하였습니다.

주4) 재고자산회전율 계산시 평가손실충당금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유사 매출규모의 상장회사의 재고자산회전율 추이]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삼성제약	4.51	4.72	5.28
슈넬생명과학	4.71	3.92	4.37

출처: KISLINE, 별도기준

당사의 재고자산은 2016년 반기말 현재 67억원을 기록하여 2015년 말 재고자산 55억원 대비 22.43%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재고자산의 증가는 매출액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고자산의 증가와 함께 당사 재고자산회전율은 2014년 4.75회, 2015년 5.20회, 2016년 반기 5.19회를 기록하며 상승하였습니다. 국내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2014년 평균 재고자산회전율인 5.00회(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대기업 평균 4.77회, 중소기업 평균 5.73회, 2014년 기업경영 분석(한국은행))를 상회하고 있어 당사의 재고자산 관리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는 업종평균 대비 높은 수준의 재고자산회전율을 기록하며 재고자산 관리에 있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외형성장에 따른 재고자산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관리비용 증가 및 시간 경과에 따른 재고자산의 가치 감소 등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내외 영업환경 변화에 의해 당사의 매출 실적 저하 및 재고자산관리 효율성이 저하될 경우, 재고자산회전율 등 관련 지표들이 더욱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당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 판단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른 위험]

바. 당사는 (주)차바이오텍을 모회사로 하는 차병원그룹에 소속되어 있으며,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모회사인 (주)차바이오텍으로 당사가 발행한 주식의 26.29%인 23,211,676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차바이오텍은 과반 미만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다른 의결권 보유자들의 지분이 널리 분산되어 있으며, 다른 주주들이 집합적으로 의사결정하기 위한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사실상의 지배력 기준에 근거하여 당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대내외적인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당사의 수익성 저하가 지속되거나 재무구조의 불안요인이 발생할 경우 경영권에 대한 위협이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가 속한 차병원그룹은 모회사인 (주)차바이오텍을 주축으로 21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의약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의약 사업과 관련하여 위 자회 사들과 특수관계거래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특수관계회사간 임 원 겸직의 해소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 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으나,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모든 이해상충가능성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 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특수관계회사의 영업전략 및 그룹의 운영전략 등에 따라 거래가격 및 조건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 부적절한 거래가 발생 시 관련 법률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으며, 당사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차바이오텍을 모회사로 하는 차병원그룹에 소속되어 있으며,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모회사인 (주)차바이오텍으로 당사가 발행한 주식의 26.2 9%인 23,211,676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차병원그룹은 그룹의 약제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차바이오텍을 통해 2012년 11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취득으로 당사의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주)차바이오텍은 과반 미만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다른 의결권 보유자들의 지분이 널리 분산되어 있으며, 다른 주주들이 집합적으로 의사결정하기 위한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사실상의 지배력 기준에 근거하여 당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대내외적인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당사의 수익성 저하가 지속되거나 재무구조의 불안요인이 발생할 경우 경영권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가 속한 차병원그룹은 모회사인 (주)차바이오텍을 주축으로 21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의약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의약 사업과 관련하여 위 자회사들과 특수관계거래가 존재하며, 2016년 반기말 당사의 지배기업, 관계기업, 종속기업, 기타특수관계자 현황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 현황]

구 분	회사명
지배기업	(주)차바이오텍
관계기업	(주)콘센트릭스솔라코리아
종속기업	SGN몽골
5 - 7 - 1	(주)스카이뉴홀딩스
	(주)차케어스
	(주)차메디텍
기타 특수관계자	(의)성광의료재단 차움의원
	(주)차바이오에프앤씨
	(주)차헬스케어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 [당사의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개요]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분 율	주요종속 회사 여부
(주)스카이뉴홀 딩스	2006.03.06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97-27 싸이칸빌딩 별관 5층	경영 및 벤처 기업컨설팅	81	100%	종속회사
SGN(유)	2005.08.22	울란바타르시 바양골구 제7동 엔비시 울근출루 Cass town	무역, 광산업	_	100%	종속회사
(주)콘센트릭스 솔라코리아	2007.03.05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27층	전동기, 발전 기 제조업	_	20%	관계회사

(단위: 백만원)

주1) (주)스카이뉴홀딩스는 전액 손상으로 장부가액이 제거되었습니다.

주2) SGN(유)은 해외종속회사로 2009년 전액 손상으로 장부가액이 제거되었으며, 현재 실질적인 폐업상태입니다

주3) (주)콘센트릭스솔라코리아의 경우 2015년 말 폐업상태로 전액 손상으로 장부가액이 제거되었습니다.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KISLINE

#### [2016년 반기 기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특수관계자	거래내용	급액		710	
		2016년 반기	2015년 반기	과목	
(주)차바이오텍	경영자문 용역료	31	10	지급수수료 등	
㈜차메디텍	신약사업부 위탁연구비등	138	_	지급수수료 등	
	품질관리팀 시약 구입	_	106	106 경상개발비	
	상품 매입	234	31	상품	
㈜차케어스	통합그룹웨어 사용	5	_	지급수수료 등	
㈜차바이오에프엔씨	직원 선물 구입비	28	23	복리후생비	
차바이오컴플렉스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88	_	지급임차료	
(의)성광의료재단 차움의원	매출	35	31	제품 매출	
	차움레트로아 사용료	17	8	복리후생비	

(단위:백만원)

(단위: 백만원)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 [2016년 반기 기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특수관계자	과목	금액		LIIO
		2016년 반기	2015년 반기	내용
(주)스카이뉴홀딩스	단기대여금	109	109	종속회사 자금대여
(주)차헬스케어	임차보증금	20	20	서울 본점 임차보증금
(주)차바이오텍	미지급금	7	11	경영자문료
(의)성광의료재단 차움의원	외상매출금	38	37	차움건진의원 매출
(주)차메디텍	미지급금	112	65	시약구입 및 위탁연구비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위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의거, 사업 또는 업무와 연관되지 않은 거래, 대주주 신용공여, 부당이득 등의 특수관계인 거래 등과 관련하여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여 유죄선고를 받는 경우 상법 제624조의2(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와의 부적절한 거래로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

의 부인)에 의거 관활과세관청의 직권에 의거 과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 관련 법령]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 2. 이사(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집행임원
- 3. 감사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 1.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 집행임원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 2.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
- 3. 그 밖에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 ③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거래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단일 거래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거래
- 2.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당 거래
- ④ 제3항의 경우 상장회사는 이사회의 승인 결의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해당 거래의 목적, 상대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가 경영하는 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 2. 이사회에서 승인한 거래총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

상법 제624조의2(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제542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 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당사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거래의 동기의 타당성과 합리적인 거래조건 성립을 위하여 이사회규정에 회사와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 및 특수관계인 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여 이해관계자와의 비정상 적인 거래의 발생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나 대규모 내부거래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이사회규정 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모든 이해상충 가능성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특수관계회사의 영업전략 및 그룹의 운영전략 등에 따라 거래가격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는 적법한 절차 및 법규 준수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와 특수관계자 간의 부적절한 거래가 발생될 경우 비용 증가에 따른 당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거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의 재무 상태가 악화될 경우 당사 채권 등의 회수에 있어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실적 및 유동성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량신약 등 신규 제품에 관한 위험]

사. 당사는 기존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구강용해필름(ODF, Orally Disintegrating Film) 제 재에 특화된 연구개발을 통해 신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STARFILM® Technology를 확보하였습니다. 2014년 독일 Optimags사의 첨단 ODF 설비를 도입, 시흥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여 2015년 3분기부터 필름형 발기부전 치료제인 제대로필(주성분Tadalafil) ODF 및 필름형 B형간염 치료제 씨엔테(주성분 Entecavir) ODF를 출시하는 한편, 다국적 제약사 오츠카의 블록버스터급 정신분열증 치료제 오리지날 제품인 Abilify의 필름형 개량신약인 아리피프라졸(Aripiprazole) ODF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동 제품은 2016년 3월 미국 FDA 임상 중 BE Test(Bioequivalence Te st,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 2016년 7월 FE Study(Food Effect Study)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현재 미국 FDA의 최종 결과 통보를 대기중입니다. 임상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당사는 2017년 12월 중 미국 내 NDA(New Drug Approval, 신약승인) 신청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제품의 출시까지 예상치 못한 일정 지연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도 단기간에 대규모 매출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단순 제네릭의약품의 생산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당사 기존 사업의 특성상, 전체 시장규모의 확대가능성이 제한적이고 제품당 영업 마진의 개선여지가 적기 때문에 기존의 국내 시장 성장성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당사는 기존의 오리지널 의약품의단순 복제약품 생산에 그치지 않고 기존 신약의 화학적 구조나 제제 등을 일부 변형한 개량신약의 개발을 통해 신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개량신약의 경우 오리지널 신약의 단순복제에 그치는 단순 제네릭의약품과 달리 일부 변형을 통하여 약효 등 기존 기능을 향상시킨 의약품을 총칭하는 것으로, 오리지널 신약 대비 단기간, 저비용의 개발이 가능한 반면 물성 등에 대한 일부독점권 취득이 가능하여 단순 제네릭약품 대비 높은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제네릭, 개량신약의 구체적인 특성 비교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약, 제네릭, 개량신약 특성 비교]

항목	신물질신약	개량신약	제네릭
시험항목	효능 및 독성시험 (전체)	효능 및 독성시험(일부) 임상시험(일부, 비교 양상, 비교 생 동)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항목	신물질신약	개량신약	제네릭
개발기간	10~15년	3~5년	2~3년
개발비용	5천억~1조	5억~15억	2억~5억
독점판매	14년 물질특허: 출원 후 20년 기타 특허 추가 보호	3~7년 물질특허: 출원 후 20년	최초 제네릭 출시: 6개월
장단점	- 장점: 장기간 독점, 배타적 권리 확보 - 단점: 대규모 개발 비용	<ul> <li>장점: 물성 및 제제 개량을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상당기간 독점적 권리 확보</li> <li>단점: 특허분쟁 위험</li> </ul>	<ul><li>장점: 적은 비용으로 제품화 가능</li><li>단점: 특허분쟁 위험 및 독점 기간 만료 후 경쟁</li></ul>

출처 : 특허청

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생체시험으로서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두 제제의 생체이 용률이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

당사는 개량신약 개발의 일환으로 2013년 7월 최대주주인 (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現 (주)차바이오텍)으로부터 총 48억원에 (주)차바이오텍이 연구개발을 진행중이던 ODF 6개 품목 관련 제반 인허가 및 관련 계약상 지위 등에 대한 자산양수도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그룹 내 관련 사업 및 연구개발은 모두 당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약사법상 ODF로의 제형 변경 의약품은 제네릭 의약품에 해당하나, 미국등 일부 국가에서는 관련 법상 ODF 제품이 개량신약으로 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독점적 판매권 확보가 가능한 상황으로, 당사는 해외 진출 확대를 통해 수익원을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 [2013년 7월 ODF 6개 품목 자산양수도 내역]

대상목적물	약효군	비고
아리피프라졸 ODF	조현병 치료제	미국 개량신약, NDA 진행중
실데나필 ODF	발기부전 치료제	국내 제네릭, 생동허가 준비중
엔테카비어 ODF	B형간염 치료제	국내 출시 완료
오셀타미비르 ODF	타미플루 치료제	개발 중단 - 쓴 맛 차폐가 어려워 ODF 제형으로 부적합 판단
로수바스타틴 ODF	고지혈증 치료제	개발 중단 – 인장 강도 부족으로 성상 부적합 판단
메티마졸 ODF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제	개발 중단 – 별도의 동물의약품 생산 및 판매 라인 구축 필요

주) 개발 중단된 품목에 대하여 2015년 전액 무형자산 손상처리 완료함

당사는 의약품 제재 변형을 통한 약물전달기술 개발에 주력하여, 기존의 정제(Tablet ) 제재를 대체하면서 복용 편의성 및 차폐성, 약물 수용성의 향상을 위한 구강용해필름(ODF, Orally Disintegrating Film)을 생산하기 위한 STARFILM® Technology를 확보하였습니다. 당사의 STARFILM® Technology(S: Smooth, T: Thin, A: Advanced Stability, R: Refreshing Taste)는 주성분의 쓴맛을 효과적으로 차폐해 복용 시

이물감과 불쾌감이 없고, 용해도가 낮은 주성분들을 균일하게 분산함으로써 탁월한 약효 균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필름의 파손이나 변질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동 기술을 적용하여 당사는 2015년 3분기 필름형 발기부전 치료제 제대로필(주성분 Tadalafil) 및 B형간염 치료제 씨엔테(주성분 Entecavir)를 국내에서 출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시장의 초기 단계로 시장 규모가 제한적이며, 동일한 성분에 대한 타사의 필름형 제품 역시 국내에 다수 출시되며 경쟁이 치열함에 따라 가시적인 실적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제품 설명 (제대로필 & 씨엔테)

#### - 제대로필

발기부전 치료제 타다라필(Tadalafil)의 ODF 형태로 제형을 변경한 제네릭 제품으로, 오리지널 제품인 릴리社의 시알리스가 2015년 9월 특허 만료됨에 따라 출시되었음.

#### - 씨엔테

Bristol Myers Squibbi社의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성분명 Entecavir)의 필름형 제네릭 제품으로, 2015년 10월 국내 특허가 만료됨

## [당사 ODF 제품 매출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3Q	2015 4Q	2016 1Q	2016 2Q	누적
제대로필	467	354	187	54	1,062
씨엔테	_	129	7	2	138

한편, 당사는 현재 조현병 치료제 아리피프라졸(Aripiprasole) ODF 개량신약 개발에 성공하여, 미국 FDA 임상 마무리 단계(최종 결과 통보 대기)에 있으며, 2017년 12월 NDA(New Drug Approval, 신약 승인) 신청 후 2018년 말부터 시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리피프라졸은 일본 오츠카(Otsuka) 제약의 Abilify 오리지널 제품의 물질명 칭으로 국내 시장에선 2014년 3월, 미국시장에선 2015년 4월 특허가 만료되어 다수의 제네릭이 개발 및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나, 현재까지 미국 내 허가된 아리피프라졸 제네릭 의약품 중 필름형은 없으며, 진행중인 업체도 당사가 유일합니다.

당사의 아리피프라졸 ODF는 국내 시장에서는 2015년 3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마친 후 출시 예정중에 있으나, 현재는 개량신약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독점권 확보가 가능하고, 약가 측면에서 보다 유리하며 시장 규모가 큰 미국 NDA 승인을 위한 준비에 보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리피프라졸은 정제형태로 최초 개발되었으나, 조현병의 경우 전체 환자의 약 20%가 본인을 정상인이라고 여기며 투약을 거부하거나, 특유의 쓴 맛 때문에 약을 뱉어내거나 숨키는 등의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구강붕해정(ODT, Orally Disinte gration Tablet), 액제, 주사제 등 다양한 제형이 개발되었으나, 각 제형의 경우에도 단점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개발한 아리피프라졸 ODF의 경우, 혀에 닿는 순간 용해되기 때문에 환자가 임의로 약을 숨키거나 뱉어낼 수가 없어 강제 투약이 용이하며, 쓴 맛 등을 없애 거부감을 완화하였으며, 물 없이도 투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인 몰래 복용이 가능한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 [아리피프라졸(Aripiprasole) 제형별 비교]

구분	ODF	정제	ODT	액제	주사제
복용 방법	물 없이 혀 위에서 녹여 복용	약을 깨지 않고 물과 함 께 복용	타액으로 붕해하여 복용	계량컵으로 정량확인 후 복용	의사에 의해 근육 주사 투여
휴대성	필름형으로 휴대 간편	비교적 편함	비교적 편함	부피가 크고 병이 끈적거 림	불편함
차폐성	쓴 맛 없음	쓴 맛	쓴 맛	쓴 맛 없음	_
환자 수용성	거부 어려움	환자 투약 거부	정제 파손 위험 높음	휴대성 낮아 정해진 시간 내 복용 어려움	고가의 가격으로 인해 환 자 부담 증가
프라이버시 보호	보호	보호 어려움	보호 어려움	보호 어려움	보호 어려움
비고	수 초내 구강 붕해되어 약을 뱉기 어려워, 투약 거부 또는 약을 삼키기 어려운 환자에게 편리	부작용으로 인해 약을 구 토하거나 복용 거부하는 경우가 많음	약물 분할 투여가 불가능 하며, 쉽게 뱉어낼 수 있 음	보관이 어려우며 약의 오 염이 쉽고, 정량 투여가 어려움	의사의 상담이 필요하며 고가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당사의 아리피프라졸 ODF는 기존의 오리지널 제품에서 제형만 바꾼 개량신약으로 미국 FDA 505(b)(2)에 해당하여, 임상 1상 완료 후 NDA 최종 승인을 거칠 시 미국 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미국 FDA의 경우 CFR(Code for Federal Regulation) 상 505(b)(1), 505(b)(2), 505(f) 항에 의거하여 의약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505(b)(1)의 경우 신약, 505(f)의 경우 신약 과 성분 등 모든 측면에서 동일한 제네릭 제품에 해당하며, 그 외의 의약품은 505(b)(

2)로 분류하고 있어, 개량신약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량신약은 그성격별로 신약보다는 적지만 제네릭 보다는 더 많은 비임상 및 임상자료를 제출해야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소위 "자료제출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paper NDA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즉, 신약과는 달리 일부 자료는 기존에 공표된 자료를 인용하여 허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내 신약/개량신약/제네릭 비교]

구분	신약	개량신약	제네릭
허가시 제출자료	- 품질시험자료 - 효능 및 독성시험(전체) - 임상시험 Phase 1, 2, 3	- 품질시험자료 - 효능 및 독성시험(일부) - 임상시험(일부, 비교임상, 비교생동)	- 품질시험자료 -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Bioequivalence)
적용규정	505(b)(1) NDA	505(b)(2) NDA	505(j) ANDA
Procss	본청허가, 안정성유효	본청허가, 안정성유효성심사대상 또는 지 방청 신고대상	
개발기간	10 - 15년	4 - 5년	2 – 3년
재심사	5년	3년	6개월
장점	장기간 독점적 권리	물성 및 제제 개발 통해 적은 비용으로 상당기간 독점적 권리 확보	적은 비용으로 제품화
특징	약물의 안정성이나 유효성에 대 한 모든 연구결과를 포함하는 허 가신청 형태	약물의 안정성이나 유효성 자료 중의 하나 이상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인용 하는 허가신청 형태	허가받고자 하는 의약품이 원료의약품, 제 형, 용량, 투여경로, 라벨링, 품질, 성능 및 용도가 기허가된 신청과 동등한 경우

출처: 의약품정책연구

당사는 2015년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임상시험 승인 신청(IND, Investigation al New Drug) 이후 2016년 3월 임상시험 중 BE Test(Bioequivalence Test,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7월 임상시험 중 마지막 단계인 FE Study(Food Effect Study) 자료 확보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FDA 측의 최종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상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당사는 2017년 중 NDA 제출에 앞서 방향성 등에 대한 FDA와의 사전 미팅인 Pre-NDA를 가진 후, 2017년 12월 NDA 제출을 계획중입니다. 일반적으로 NDA 제출 후 승인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되며, 이에 따라 최종 승인시 2019년부터는 미국 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505(b)(2)의 경우, NDA 최종 승인 시 IMD Exclusivity를 3년간 부여 받게되며, 3년 경과 후 특허 출원을 통한 Claim 시 제네릭 제품에 대한 FDA의 허가 검토보류 기간 30개월이 추가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총 5.5년의 독점 판매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 [아리피프라졸 ODF Timeline]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임상시험	Bioequivalence Test												
	FE Study												
	Annual Report 제출												
	Pediatric Study Plan(PSP 제출)												
허가	Pre-NDA Meeting												
	NDA 제출												
	NDA 승인												
안정성 시험	<b>OMO</b>												

## [아리피프라졸 ODF의 미국 505(b)(2) 허가 절차 요약]

## ① 비임상시험 Pre-IND(Investigational New Drug)

- 505(b)(2)의 경우 기존 오리지널 신약의 화학적 구조나 제제, 용도 등을 약간 변형하여 얻어지는 약물인 개량신약의 특성에 따라, 임상시험에 시사용할 안전한 투여 용량 및 잠 재적인 독성의 표적 장기와 독성 바이오마커들에 대한 정보를 생산제공하고 발암성 및 생식독성과 같은 임상시험을 통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독성을 조사하는 비임상시험(Precl inical Toxicity) 절차가 생략됨

#### ② 임상시험계획승인 IND(Investigational New Drug)

- 당사의 아리피프라졸 ODF의 경우, 미국 505(b)(2)에 해당하므로 비임상시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미국 FDA에 임상시험승인 신청서 IND를 제출할 수 있게됨에 따라, 2015년 4월 IND를 제출, 2015년 5월 사람에게 투여하기 위한 FDA의 승인을 득함

## ③ 임상시험(Phase I)

- 505(b)(2)의 경우 대조약과 동일한 효능을 갖고 있으며, 부작용이 없음을 검증하는 임상 1상만을 마치면 임상 시험이 종료됨
- 당사는 201X년 X월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의약품과 이를 복제한 약을 비교하여 비슷한 약효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기 위한 임상시험 절차인 생물학적 동등성시험(Bioequivalenc e Test)을 통과, 2016년 7월 미국 FDA에 제출할 Food Effect Study 자료를 확보함에 따라
- e Test)을 통과, 2016년 7월 미국 FDA에 제출할 Food Effect Study 자료를 확보함에 따라 임상시험 마무리 단계에 있음(현재 최종 결과 통보 대기중)
- 임상시험의 경우 캐나다에서 진행되었으며, BE Test는 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물 없이 복용하여도 대조약과 동일한 약효를 나타냄을 입증하였으며, FE Study는 32명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음
- ④ 신약승인Pre-NDA 및 NDA(New Drug Approval)

- 임상을 마친 후, 미국 FDA와 Pre-NDA 미팅을 통하여 신약 승인을 위한 NDA 제출 전 보완 사항, 일정, Documentation 등의 방향성에 대한 Feedback을 가짐
- Pre-NDA 미팅 후 관련된 자료 등을 취합하여 NDA를 제출하게 되며, FDA는 Documenta tion, 시험 결과, 제조 설비 감사(Pre Audit Inspection) 등 화학합성, 공장생산, 품질관리(CMC, 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에 대한 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함 (약 10개월 12개월 소요)

#### ※ 기타

## (\*1) Pediatric Study Plan(PSP)

- 오리지널 신약인 Abilify의 경우, 소아· 청소년에도 투약이 가능하나, 당사의 아리피프 라졸 ODF의 경우 성인에 대하여만 임상을 진행한 바, 소아· 청소년에 투약하기 위하여 별도의 절차가 필요
- PSP를 제출하면 미국 FDA는 해당 제품이 소아· 청소년에게도 적용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적인 임상 시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여 통보함
- 당사의 경우 NDA 제출 전 PSP를 제출할 예정이나, PSP 결과에 대해선 NDA 결과 발표 이후에 발표될 예정

## (\*2) 안정성 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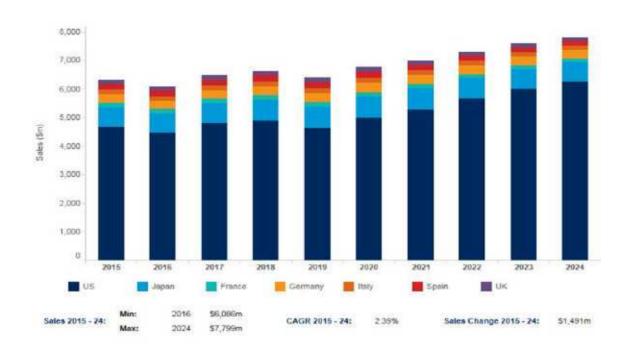
- 임상 완료 후 현재 cGMP 인증을 받은 독일의 CMO 업체를 통하여 안정성 시험을 계속 해서 진행중

## (\*3) 임상시험면제 Biowaver

- 현재 당사가 임상을 진행한 용량은 10mg으로, 5mg 및 15mg에 대한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선 추가적인 시험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준비중
- 동 시험은 2017년 1분기 중 마무리 될 예정이며, 시험 결과에 대해선 Pre-NDA 때 논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조현병 치료제 시장은 60억달러(약 7조원) 이상의 규모이며, 오리지널 제품인 오츠카의 Abilify는 글로벌 상위 20개 의약품 중 하나로 2014년 92.9억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제품으로써, 아리피프라졸 ODF는 NDA 최종 승인 이후 미국 출시시기존 제형 대비 여러 이점으로 인한 경쟁력으로 당사의 주력 제품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량신약의 경우 다단계 임상실험을 거쳐야 하는 신약개발과 달리, 오리지널 신약과 동일한 주성분을 함유한 생체이용률이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임상단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제품허가까지 걸리는 기간이 신약대비 짧으며, 회사는 현재 임상을 마치고 NDA 허가 절차만을 앞둔 상황으로 제품 시판 시기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현병 치료제 세계 시장규모]



조현병 치료제 시장규모

출처: Datamonitor Healthcare

# [글로벌 상위 10개 의약품 판매 현황]

(단위: mn USD)

No	제품명	회사명	약효	2013년	2014년
1	Humira	AbbVie	류마티스 관절염	9,784	11,844
2	Lantus	Sanofi-Aventis	당뇨병용제	8,014	10,331
3	Sovaldi	Gilead Sciences	C형간염 치료제	70	9,375
4	Abilify	Otsuka	정신분열증, 조증, 우울증	7,824	9,285
5	Enbrel	Amgen	류마티스 관절염	7,918	8,707
6	Seretide	Glax o Smith Kline	천식치료	9,198	8,652
7	Crestor	AstraZeneca	콜레스테롤혈증, 고지혈증	8,140	8,473
8	Remicade	Johnson & Johnson	크론병, 류마티스 관절염	7,648	8,097

No	제품명	회사명	약효	2013년	2014년
9	Nexium	AstraZeneca	역류질환식도염	7,867	7,681
10	Mabthera	Roche	림프종, 백혈병	6,363	6,552

출처: IMS Health MIDAS (2014.12)

당사는 현재까지 NDA 절차를 진행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임상시험수탁기관(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을 통하여 Pre-NDA 및 NDA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사와 논의중인 CRO들은 다수의 NDA 절차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나, CRO의 고용이 곧 NDA의 승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관련한 용역비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CRO 선정 작업 중에 있어 구체적인 계약 조건 등에 대한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CRO 선정 및 NDA 절차를 위한 진행비 등에 약 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6년 반기를 기준으로 아리피프라졸 ODF를 개발하는데 기투입된 개발비는 총 64억원(공통비 분배 포함)으로, 시판까지 총 134억원이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적지 않은 투자금액이 투입되었습니다.

## [아리피프라졸 ODF 기투입 개발비]

(단위: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반기	합계
공통비	2,715	88	54	_	2,857
직접비용	834	570	974	538	2,916
개발용역비	238	170	_	_	408
인건비	_	261	167	129	557
타계정대체(원재료)	_	_	3	_	3
국고보조금	_	_	(352)	_	(352)
개발비 총액	3,787	1,089	846	667	6,389

그러나, 임상의 통과가 곧 NDA 최종 승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외부환경의 변

화 또는 FDA의 허가 과정에서의 예상치 못한 일정 지연 사유, 보완사항 또는 미허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신규 제품의 허가 및 출시 시기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며, 비용이 예상보다 증가 또는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의 제품은 기존의 오리지널 제품의 제형을 변형한 개량신약으로, 복용의 편의성, 간편성, 빠른 흡수, 환자의 수용성 등에서 기존 제품 대비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 약효를 개선시키거나 새로운 적응군에 효과가 있다던지 하는 제품은 아님에 따라 이미 기존 오리지널 제품의 시장 지배력이 견고하며, 다수의 제네 릭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품이 출시되더라도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상했던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않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오리지널 제품인 Otsuka 社의 "Abilify"가 브랜드 경쟁력을 기반으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수의 제네릭 제품 또한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리피프라졸 제품에 대한 경쟁 정도는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당사는 미국 제약시장 내 안정적인 영업망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 현지 의약품 도매업체 또는 다국적 제약사 등과의 판매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해외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일정 부분 극복해나갈 계획입니다. 당사는 NDA 최종 승인 후 품목허가를 받게 되면 바로 시판이 가능하도록 NDA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판매공급계약 체결을 위한 업체 선정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구체적인 상대방 및 조건 등의 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유명도매업체 또는 제약사와의 판매공급계약이 곧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으며, 필름이라는 제형 상 다방면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의 상황과 영업환경 및 경쟁구도 등 외부요인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기출시된 제대로필, 씨엔테 ODF 및 미국 FDA 허가 절차를 진행중인 아리피프라졸 ODF 외에도, 야뇨증 치료제(데스모프레신 ODF), 발기부전 치료제(실 데나필 ODF) 등의 개발 및 허가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ODF 관련 Pipeline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ODF의 경우 국내 시장에서는 제네릭으로 분류됨에 따라 경쟁이 치열하며, 해외 진출 시 품목 허가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데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제품의 허가 및 출시 시기는 현재로서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며,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도 오리지널 제품 및 제네릭 제품들과의 경쟁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대규모 매출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충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진출과 관련한 위험]

아. 당사는 ODF 제품의 해외 진출을 통하여 수익창출 극대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 6년 반기 기준 해외부문 매출액은 총 매출액의 2% 내외로 낮은 수준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당사는 2015년 9월 대만지역, 2015년 10월 홍콩 및 마카오 지역에 대한 발기부전 치료제 제대로필 ODF 판매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외에도 다수의 국가와 제대로필 ODF 및 씨엔테 ODF 등 ODF 제품 공급계약 체결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리피프라졸 ODF의 미국 허가 시 수출 비중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제품들은 해당국가의 품목허가 신청을 준비중이나, 제품판매의 정확한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으며, 향후 매출 규모와 그로 인하여 당사 수익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단순 제네릭의약품의 생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국내 시장의 성장성에 한계를 느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익원 다각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ODF 중심의 개량신약 개발을 통해 신규 수익원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ODF 제품의 해외진출을 통하여 수익창출 극대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까지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진행하여 왔으며, 최근 3년간 해외 수출 비중은 총 매출액의약 1% 내외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만 ODF 제품의 개발 확대로 향후 수출 비중은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수출금액 및 비중]

(단위: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반기
내수	20,234	22,598	26,932	15,493
수출	168	154	110	342
합계	20,402	22,752	27,042	15,835
수출 비중	0.82%	0.68%	0.41%	2.16%

당사는 2015년 9월 국내 출시된 당사의 발기부전 치료제 제대로필 ODF에 대하여 2 015년 9월 대만 지역 및 2015년 10월 홍콩/마카오 지역에 대한 판매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만 현지 수입업체인 H&H사와 대만 지역 독점 판매권에 대하여 계약금 4만불과 2018년부터 5년간 제대로필 120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홍콩/마카오 지역 현지 수입업체인 APRE 사와 홍콩 지역 독점 판매권에 대하여 계약금 1만불과 2018년부터 5년간 160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금액은 계약선금 및 발매 후 계약기간 동안의 최소물량 기준 합산금액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현재 해당 국가의 품목허가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당사는 제대로필 ODF 외에도 B형간염 치료제인 씨엔테 ODF에 대하여 중국, 베트남, 멕시코 등 다수의 국가와 판매공급계약 체결을 협의중에 있으며, 미국 FDA 품목 허가를 진행중인 아리피프라졸 ODF 역시 최종 NDA 승인 후 판매대행사를 선정하여 미국 시장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 [해외 판권계약 진행 현황]

수출 품목	생산 방식	판매 방식	판권 방식	계약일	등록 완료 시점
대만(H&H) 제대로필 20mg	당사 공장	현지 도매상(수입업체)	독점판매	2015.09	2018년 12월 예상
홍콩(APRE) 제대로필 10/20mg	당사 공장	현지 수입상	독점판매	2015.10	2018년 12월 예상
베트남 제대로필 20mg	당사 공장	현지 도매상(수입업체)	독점판매	체결 예정	2018년 12월 예상
멕시코 제대로필 20mg	당사 공장	현지 수입상	독점판매	체결 예정	2018년 12월 예상

이처럼 당사는 해외 진출을 통한 매출확대 및 수익성 제고를 계획하고 있으나, 의약품 사업의 특성상 해외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 별 제품 승인 및 판매 허가를 필요로 하며, 제품화까지의 일정 기간 소요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해외 수출은 국가 별 내부적인 정책 변경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의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등으로 당사가 계획하고 있는 허가 시점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해외 제품 출시가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국가의 경쟁 정도 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데에는 중장기적인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해외 수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매출 규모와 당사 수익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판단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 투자와 관련한 위험]

자. 제약산업에서는 신제품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시설 및 R&D 투자 등 지속적인 자본적

지출(CAPEX)이 이뤄지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향후 4년간 약 450억원 수준의 신규 시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로 인한 조달 자금 중 450억원을 이와 관련한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나, 향후 업황의 변화에 따라 현재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신규 공장의 준공 및 인증 취득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생산 및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신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하여 시설 및 R&D 투자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4년간 신규 시설 투자에 약 450억원, R&D 투자에 약 185억원 및 미국 FDA 품목 허가를 위한 제반비용 약 70억원 등 총 705억원의 지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2017년 ~ 2020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용	설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아리피프라졸 ODF	NDA	NDA 허가를 위한 CRO 선정 등 제반 비용	4,000	3,000		-	7,000
YIOF JIIHHIII	CCN001	비임상 시험 진행 등을 위한 개발비	500	1,500	-	-	2,000
신약 개발비	기타 표적항암제 7개 품목	기초탐색연구단계 진행을 위한 개발비	1,400	2,100	4,500	2,000	10,000
	실데나필 ODF		200	-	-		200
	데스모프레신 ODF		500	-	1	-	500
ODF 개발비	신규 ODF 2개 품목(2017)		400	-	1		400
OUTAIEU	신규 ODF 1개 품목(2018)			400	1	-	400
	신규 ODF 2개 품목(2019)		1	-	800	1	800
	신규 ODF 2개 품목(2020)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및 품목 허가 등 개발비	1	-	1	800	800
	Celecoxib 200mg	영술학교 868 사람 및 함프 이가 6 개로미	300	-	1	-	300
	Carvedilol 25mg		300	-	1	-	300
정제 개발비	간염 치료제		350	-	1	-	350
경제 개절비	신규 제네릭 3개 품목(2018)		1	700	150	-	850
	신규 제네릭 3개 품목(2019)		1	-	700	150	850
	신규 제네릭 3개 품목(2020)		1	-		750	750
시설투자		토지, 건물, 기계장치, 시설장치 등 구입 및 GMP 인증 비용		20,000	ı	_	45,000
합계			32,950	27,700	6,150	3,700	70,500

주1) 개발비에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진행 비용, 허가를 위한 제반비용, 연구개발인력 인건비, CRO 비용 등이 포함됨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제약사들이 기술력 측면에서 큰 변 별력이 없는 점을 감안 시, 설비 투자로 인한 생산 능력 확보 역시 큰 경쟁요소 중 하 나입니다. 회사가 영위하는 제네릭 사업 부문은 2012년 최대주주 변경 이후 약가 인 하 등 정부규제에 따른 비우호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바탕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2012년 ~ 2015년 연평균 18.5% 성장하였으며, 이와

주2) 생산설비는 현재 구체적인 장소 선정 등의 계획은 없으나, 토지 약 5,000평 기준 평당 단가 3백만원, 건축면적 약 3,000평 기준 평당 건축비 및 시설비 10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출됨

같은 빠른 성장은 신규 설비 투자에 따른 생산 설비 증설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 [당사 생산실적 및 가동률 추이]

(단위: 천정)

품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반기
T1T11/	생산가능량	322,080	360,000	360,000	372,000	182,532
정제/   캡슐제	생산실적	234,608	253,737	337,451	332,537	204,380
	가동률	72.84%	70.48%	93.74%	89.39%	111.97%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당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화공장 제조시설의 한계를 벗어나, 현재까지 연구개발을 통해 상용화 된 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제품의 생산을 위한 제조시설, 보관시설, 품질관리시설을 갖추고자 신규 공장 설립을 계획중이며, 이를 위해 2018년 중으로 국내 GMP 승인을 받아 실제 제품생산이 가능하도록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으로서의 우수의약품의 제조· 관리의 기준으로 상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GMP에 관한 설명]

구분	설명	승인기관
KGMP (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리나라 약사법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의약품제조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약품 제조 및품질관리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
cGMP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미국 의약품 판매를 위한 품질 및 생산에 관한 기준으로 공장의 구조/설비에서부터 원료의 구입, 제조, 품질관리/보증, 포장, 출하 및 유통에 이르는 의약품전반에 관한 관리 기준. 실사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현	미국식품의약국 (Food and Drug Ad ministration, FDA)

구분	설명	승인기관
	재 시점에서의 GMP를 평가한다는 의 미에서 current를 붙여 cGMP라 칭함.	
EU GMP (EU Good Manufacturing Practice)	cGMP와 같은 개념으로 유럽의 식약 처라 할 수 있는 EMA실사를 통하여 E U지역에 의약품 판매를 위한 품질 및 생산에 관한 기준으로 유럽 지역에서 기준이 되는 의약품 관리 기준	유럽의약품청 (European Medicin es Agency, EMA)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공장을 설립하고 인증을 득하는 것은 매우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시 신규 공장의 인증 취득이 지연될 수 있으며, 공장을 완공 후에도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데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규 공장을 통한 제품 생산 단계까지 약 4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중이며,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중 450억원을 해당 설비 투자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나, 복잡하고 다양한 운영체계와 문서화 등의 준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통제가 불가능한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투자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의 발생 시, 향후 생산 및 영업활동에 차질을 주게 되어,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공장 완공에 따른 생산 능력 증가분만큼 수주량이 증가하지 못할 시, 가동률이 떨어져 투자 시설에 대한 금융비용 및 감가상각비 등의 영향으로 고정비를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비와 관련한 위험]

차. 당사의 2015년 연구개발비용 전체 금액은 약 37.9억원으로 매출액의 14.02%이며, 신약 및 개량신약 신규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국내외 임상 진행에 따른 투자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4년간 R&D 투자에 약 185억원(아리피프라졸 ODF 관련 지출 제외)을 집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존 ODF 제품 및 정제 제네릭 제품 뿐만 아니라, 신규 수익원 창출을 위한 신약 개발을 진행중이며, 신약 개발에 향후 4년간 약 1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

가 연구개발중인 표적항암제 신약의 경우 비임상 진입 전으로서 실질적인 수 익창출로 연결되기까지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며, 개발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이 존재함에 따라 단계가 진행될 수록 추가 연구 개발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임상을 마치고 미국 FDA 품목 허가 절차만을 앞둔 아리피프라졸 ODF의 경우 막바 지 단계에 이르러 허가 및 시판시 약 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예상치 못한 허 가 절차의 지연 등의 상황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파이프 라인의 연구개발비 투자 소요 및 신규 제품의 품목 허가를 위한 비용이 지속 적으로 발생할 예정임에 따라 연구개발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는 당사의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속한 제약 산업에서는 제도적, 환경적 변화에 따른 신제품 개발능력과 R&D 활성화가 제약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회사의 성장동력이 될 자체적인 기술개발을 위하여 2011년 04월 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신약 합성 기술을 이용한 표적항암제를 연구하는 신약개발 연구소(연구인력 12명)와 제재 연구를 위주로 하는 중앙연구소(연구인력 9명)을 중심으로 회사의 규모 대비 다수의 연구 인력을 확보, 신규 파이프라인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R&D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당사 연구소 현황]

구분	신약개발연구소	중앙연구소
연구원	- 12명	95 95
주요 연구 현황	- 신약 IP 창출(항암제 등) - 신약 합성, 특성분석 등	- 1st 제네릭 제품 개발 - ODF 개량신약 개발

당사의 연구개발비용은 2013년 63.3억원(매출액의 31.06%), 2014년 38.0억원(매출액의 16.70%), 2015년 37.9억원(매출액의 14.02%) 수준으로 ODF 관련 6개 품목의 자산양수도로 인하여 48억원이 증가한 2013년을 제외하고, 타 제약사 대비 많은 금액을 지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향후 개발중인 신약이 본격적으로 임상절차에 진입하는 한편, ODF 개량신약 포트폴리오가 확대될 시 연구개발비 지출이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당사 연구개발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과목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반기
	무형자산 (개발비 취득)	_	4,800	582	_	_
회계	무형자산 (개발비 내부개발)	_	1,193	2,928	2,727	1,595
처리	경상개발비 (판매비와 관리비)	120	134	117	832	162
	경상개발비 (제조경비)	170	209	173	231	117
연구개발	발비용 계	290	6,336	3,800	3,790	1,874
매출액		16,009	20,402	22,753	27,042	15,835
연구개팀	발비/매출액	1.81%	31.06%	16.70%	14.02%	11.83%

당사는 기존의 제네릭 제품과 국내 내수 시장 중심의 경영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개량 신약 개발 및 신약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 성장 전략을 재정립하였으며, 이와 관 런한 연구개발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14년 1월 특수관계자인 (주 )차바이오메드의 신약개발 사업부에 대한 인적·물적·설비 등 권리의무를 포괄적으 로 승계하는 영업양수 계약(포괄적 사업양수)를 8.2억원에 체결하여 본격적인 신약 개발에 돌입하였으며, 우수한 합성역량을 보유한 신약개발연구소를 중심으로 현재 총 6개의 표적항암제 혁신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당사 신약개발연구소 및 개발중인 표적항암제 요약]

현재 신약개발을 진행중인 당사의 신약개발연구소의 전신은 2005년 설립되어 연구개발 용역(CRO), 주문 합성(Custom Synthesis), 그리고 신약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던 케미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사의 관계회사인 (주)차바이오메드는 그룹 내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3년 4월 표적항암제, 중추신경계, 대사성질환 등에 관한 신약 개발을 진행중이던 케미존을 대한전선의 자회사 옵토매직으로부터 영업양수하였으며, 2014년 1월 당사에 양도하였습니다.

당사의 신약개발연구소는 현재 저분자 표적항암제 개발을 위한 분자모델링 및 저분자 합성신약에 집중하고 있으며, 현재 TRK 작용기전을 이용한 표적항암제인 CCN001을 포함 총 6개의 표적항암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당사 신약개발연구소는 전신인 케미존 시절부터 합성역량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개발은 비임상 후보물질을 도출하는 탐색과정(Drug discovery)과 도출된 후보물질이 실제 약물로써 사용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개발과정(Drug development)으로 크게 분류

되는데, 합성역량은 탐색과정에서 가상 라이브러리를 토대로, 화학구조와 생물학적인 활성관계를 예측하고 분석하여 유사한 구조의 활성을 예측하거나, 가상의 3차원 구조를 만들어서 실제 단백질구조와 small molecule의 결합상태 및 상화작용을 예측하는 도킹과정, 라이브러리 합성 및 스크리닝을 통하여 유효물질(Hit)을 구축하고 이러한 유효물질구조 modeling을 이용하여 선도물질을 디자인 및 개발 또는 효율적인 합성법을 개발하는데 활용됩니다. 항암제 개발과정은 암세포에 대한 활성도를 통해 선별된 여러 선도물질의 물성 및 안전성검사, 약물대사/약동학적, 동물효능검사 및 예비독성검사 단계를 거쳐 최종비임상 후보물질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풍부한 합성역량을 통하여 신약개발의 R&D 효율성을 높이고, 저비용 고효율의 새로운 유효화합물을 효과적으로 탐색하여 임상시험에 적합한 후보물질을 찾는 기초를 마련함에 따라 국내 유수의 R&D 역량을 갖춘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표적항암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작용기전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이용하여 디자인 및 저분자 화합물을 개발하는 합성 과정을 전담하고 있으며, 파트너사는 해당화합물의 약효 및 약동학적 분석 그리고 동물실험 등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 신약연구소에서 연구개발중인 프로젝트]

구분	Target	Indication	Stage	비고
CCN001	표적항암제 (TRK 기전)	고형암(폐암, 대장암 등)	DMPK Pharmacology (최적화 단계)	2016년 비임상 진입 예정
CCN002	표적항암제	폐암, 위암	Lead Optimization (선도형 발굴)	2017년 비임상 진입 예정
CCN005	표적항암제	위암, 전립선암	Lead Optimization (선도형 발굴)	2017년 비임상 진입 예정
CCN005	표적항암제	알츠하이머	Lead Optimization (선도형 발굴)	2017년 비임상 진입 예정
CCN003	표적항암제	난소암, 간암	Lead Optimization (선도형 발굴)	2018년 비임상 진입 예정
CCN004	표적항암제	췌장암	Lead Optimization (선도형 발굴)	2018년 비임상 진입 예정
CCN006	표적항암제	신장암, 전립선암	Lead Generation (유효성 도출)	2018년 비임상 진입 예정

주1) 유효성도출(Lead Generation): 기초탐색연구단계의 첫번째 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생체내 효능을 갖는 선도물질(Lead)을 도출하는 과정

주2) 선도형발굴(Lead Optimization): 기초탐색연구단계의 두번째 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선도물질에서 최적화한 개발후보물질(Drug Candidate)을 발굴하는 과정

주3) 최적화(DMPK, Drug Metabolism and Pharmacokinetics): 기초탐색연구단계의 마지막 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약물대사 및 약물동태 시험, 후보물질의 대사적 특성

에 대한 activity 및 property에 대한 최적화 연구를 통한 임상후보물질을 도출하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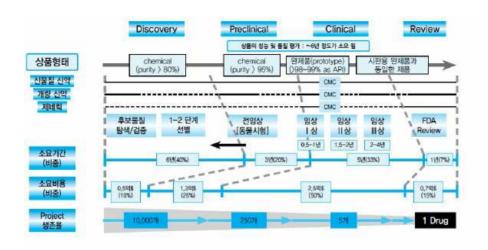
이 중 TRK(Tropomyosin receptor kinase, 트로포마이오신 수용체 키나제)라는 효소계열을 억제하여 TRK 발생 고형암에 적응증을 갖는 표적항암제 CCN001의 경우 2016년 하반기 중으로 비임상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사의 표적항암제는 조직검사를 통해 TRK 단백질 기전이 변형해서 발병되는 모든 종류의 암에 대해 적응증이 있으며, 현재까지 TR K기전으로 발병된 암에 대해 시판되고 있는 항암제는 없는 상황이며, 미국의 LOXO Onc ology만이 현재 임상 2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TRK 기전으로 유발되는 암은 대부분의 모든 암종류에 발병되며, 그 중에서 폐암은 TRK 기전으로 발병되는 비율은 전체 폐암 환자의 약 3% 수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사는 2 014년 12월 미국 내 물질 특허 및 2015년 12월 PCT 출원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등록 과정중에 있으며, in vitro 및 in vivo 동물실험을 마친 상황입니다. 당사의 CCN001은 현재 사람에게 투여 전 우선적으로 동물에게 독성 검사를 실시하는 비임상 시험에 2016년 하반기 중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임상 시험은 약 9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비임상 시험이 완료된 후 미국 FDA에 임상시험승인신청(IND Submission)까지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TRK 기전을 이용한 표적항암제 CCN001 외에, 당사는 다양한 적응증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하여 2017년 중으로 표적항암제 3개 품목 및 2018년 3개 품목의 비임상 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개발중인 표적항암제 중 1개는 2016년 중으로, 2개는 2017년, 3개는 2018년 비임상 진입을 계획하고 있어, 모든 파이프라인이 비임상 진입 전 기초탐색연구단계에 있어 실질적인 수익창출로 연결되기까지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단계가 진행될 수록 추가 연구개발비가 소요됩니다.

[신약개발 절차 요약]



신약개발 연구과정

단계	평균 기간 (년)	정의 및 내용
Discovery (초기탐색단계)	2~4	개발대상 물질 선정 단계 의학적연구를 통한 연구방향 설정 및 개발 대상물질 선정
Preclinical (비임상)	1~2	개발대상 물질의 안전성/유효성평가 단계 약효검색 기준마련, GLP 기관에서의 안전성 연구
Phase 1 (임상 1상)	1~2	소수의 건강인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내약성 검토 단계, 희귀질환일 경 우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 검토
Phase 2 (임상 2상)	2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용법· 용량 결정 및 안전성· 유효성 검토 단계, 희귀질환일 경우 2상 후 허가 가능
Phase 3 (임상 3상)	3~5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ㆍ 유효성 검토하는 약효 입증 단계

출처: 의약품정책연구

주) 상기 평균기간은 통상적인 단계별 개발기간을 의미하나 개별 프로젝트 진척 상황에 따라 개발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의약품은 인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동물시험과 같은 비임상시험과 임상시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연구단계에서 선정된 신약후보물질을 동물에게 검증하는 비임상단계와 사람에게 검증하는 임상단계로 구분되며, 상기 과정에서 모든 자료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KFD A)나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 등의 허가기관에 제출해야 하므로 정부의 규제와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임상 단계는 동물을 대상으로 약효 및 부작용 등을 확인하는 단계이며 이를 통과하면 허가기관에 임상시험을 신청하고 임상시험 가능 여부를 승인 받게 됩니다. 임상시

험(Clinical Trial/Study)이라 함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약력·약리·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임상시험은 시판 허가 전의 3단계(1상, 2상, 3상)와 시판 후 임상시험(PMS)을 포함하여 총 4단계로 구분합니다. 이전단계의 연구에서 위험(독성) 대비 이익(유효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다음 단계 임상시험의 진입을 결정하게 되며, 약사법에 따라 적합한 임상시험계획승인(IND) 신청 자료를 마련하여 규제기관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규제기관은 위험 대비 이익이 허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임상시험 승인을 해주며, 개발사는 승인된 계획서와 의약품임상시험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임상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임상시험계획서에서 설정한 가설을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했을 때 임상시험이 성공한 것이며, 다음 단계 연구로 진행이 가능하고 가설을 입증하지 못하면 임상시험에 실패하게 됩니다

임상 단계를 완료한 신약후보물질에 대해서는 허가기관에 신약허가신청을 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실하게 검증되었다고 판단되면 허가 기관은 최종 판매 승인을 내주게 됩니다.

[임상 평가 단계]

구분	피험자수	검토사항	목적
제1상 (임상약리상)	비교적 건강한 사람 대상 20~100명	주로 안전성 검토	- 안전 용량 범위 확인 - 부작용 및 임상검사 변화 - 체내 약물 동태 검토 - 약효의 가능성 검토
제2상 (임상연구상)	통상 100-200여명 의 환자 대상 (질환에 따라 상이)	단기 유효성 및 안전성 검토	- 약효 입증 - 유효용량 확인/용량-반응 양상 - 유효성/안전성의 밸런스 검토
제3상 (임상시험상)	수백~수천명 환자	안전성 확립 및 유효성 재확인	- 충분한 환자에서 유효성 및 안전 성 확립 - 장기투여 시 안전성 검토 - 약물상호작용 및 특수환자군 용량 정립

구분	피험자수	검토사항	목적
제4상 (시판 후 부작 용 조사 및 및 추가 임상시험)	_	획득(시판 후 ance) - 특수 약리직 상 자료 보완,	반응(부작용) 빈도에 대한 추가 정보 안전성 조사, Post Marketing Surveill 용 검색, 장기간 대규모 추적연구, 3 특수환자군에 대한 임상, 새로운 적 (시판 후 임상 연구, Post Marketing

출처: 임상연구정보서비스(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CRIS)

주) 대체의약품 또는 치료법이 없거나 국내외 임상시험 대상 환자수가 적어 치료적 확증임상시험(제3상 임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적응증의 경우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자료(제2상 임상)로서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제3상 임상)자료를 갈음할 수 있다는 생물학적제제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식약처고시 제2015-26호)에 따라 2상 임상시험 후 품목허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비임상 단계에서 안전성 및 효능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임상 단계에서 부작용 등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인하여 의약품 개발에 실패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한 각임상시험 단계에서 유효성이나 안전성 입증이 미흡하여 임상시험 단계에서의 실패위험도 존재합니다.

연구개발을 진행함에 있어 상기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어느 한 단계에서 실패하더라도 더 이상 제품 개발 진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당사에서 진행중인 연구개발의 경우에도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진행 예정인 각 단계에서 입증해야 하는 결과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연구과제를 통한 신약 개발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연구개발이 실질적인 수익창출로 연결되기까지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며, 개발 과정에서의 불확실성도 존재하며 연구개발비가 소요됩니다.

# [임상실험의 단계별 중요 사항]

rtoll	후보물	질발굴	15.00	임상실험		1000	시장	
단계	탐색면구         동물실험         IND           1상         2상         3상		3상	NDA	4상			
목표 및 대상	·후보물질 개발/실험실 Test	·동물 대상의 안전성및유 효성확인	인체실험 개시신청	인전성 및투 약량촉정 · 20~30명의 정상인 지원 대상	악출와 부작 용확인 1~3백명의 환자 자원자 대상	역호 재확인 및 장기적 인정성확인 1~5천명의 환자 자원자 대상	최종상인신청	시판후 서로운 부작용 등에 대한 조사
소요 기간 (약12년)	5년	3년	1개월	1.5년	2년	3년	0.5년	4~6년
다음단계 진행확률	5%	2%	85%	71%	44%	69%	80%	
최종 성공률	0.02%	0.3%	15%	17%	24%	55%	80%	
비용 (총8,8억 달러)	- 탐색연구(5 - 비임상(0,9	(1,2억)		적검증(2,05억),	후보물질스크	린(0,4억), 후5	2물질최적화	

임상실험의 단계별 중요사항

출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삼성경제연구소(2003)

[임상실험의 단계별 성공률]

단계	Small Molecule (화학합성 의약품)	Large Molecule (바이오 의약품)
임상 1상	63%	84%
임상 2상	38%	53%
임상 3상	61%	74%
품목허가	91%	96%
누적 확률	13%	32%

출처: Dimasi, et al. Nature's Clinical Pharmacology & Therapeutics 87, 272-277 (2010.03)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R&D 투자는 미래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의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개발의 경우 임상단계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업성을 확보하고 신약을 출시하여 판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약 프로젝트 관련 연구개발비의 지출이 제

품화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수익성 및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제약회사에 초기 License-Out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신약개발은 초기 단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공 가능성 여부를 현 시점에서 가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약개발은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산업으로서 개발이 완료되어 시장에 출시될 경우 큰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연구개발 과정에서 정부의 각종 규제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을 엄격하게 검증받아야 하며, 모든 자료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미국 FDA 등의 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정부의 규제와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임상시험각 단계를 거치면서 승인을 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각 임상단계에서해당 신약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과정 및 임상진행중에 투자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향후 4년간 신약 개발과 관련한 약 120억원을 포함한 R&D 투자자금 약 185억원(아리피프라졸 ODF 관련 지출 제외)을 지출할 계획이며, 금번 유상증자로 인한조달 자금 중 약 98억원을 이와 관련한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향후업황의 업황의 변화에 따라 현재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의 실패 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년간의 R&D투자를 거쳐 개발에 성공할지라도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 2020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용	설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아리피프라졸 ODF	NDA	NDA 허가를 위한 CRO 선정 등 제반 비용	4,000	3,000	-	-	7,000
신약 개발비	CCN001	비임상 시험 진행 등을 위한 개발비	500	1,500	1	-	2,000
선국 개절비	기타 표적항암제 7개 품목	기초탐색연구단계 진행을 위한 개발비	1,400	2,100	4,500	2,000	10,000
	실데나필 ODF		200	-	1		200
	데스모프레신 ODF		500	-	1		500
ODF 개발비	신규 ODF 2개 품목(2017)		400	-	1	-	400
	신규 ODF 1개 품목(2018)		-	400	1	1	400
	신규 ODF 2개 품목(2019)		-	-	800	_	800
	신규 ODF 2개 품목(2020)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및 품목 허가 등 개발비	_	-	1	800	800
	Celecoxib 200mg	성돌학학 중요성 사업 및 접촉 에가 등 개월미 	300	-	1	-	300
	Carvedilol 25mg		300	-	1	-	300
저미 에버니	간염 치료제		350	-	1	-	350
정제 개발비	신규 제네릭 3개 품목(2018)		_	700	150	1	850
	신규 제네릭 3개 품목(2019)		_	-	700	150	850

구분	세부내용	설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신규 제네릭 3개 품목(2020)		-	-	-	750	750
	시설투자	토지, 건물, 기계장치, 시설장치 등 구입 및 GMP 인증 비용	25,000	20,000	-	-	45,000
합계			32,950	27,700	6,150	3,700	70,500

주1) 개발비에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진행 비용, 허가를 위한 제반비용, 연구개발인력 인건비, CRO 비용 등이 포함됨

### [무형자산과 관련한 위험]

카. 당사의 무형자산은 2013년 63.6억원, 2014년 103.0억원, 2015년 117.7억원 및 2016년 반기 132.5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3년 (주)차바이오텍이 개발중이던 ODF 품목 6개를 48억원에 자산양수 이후 본격적으로 아리피프라졸 ODF를 포함한 ODF 제품에 대한 R&D가 증가함에 기인합니다. 당사는 회원권과 같은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며, 특허권,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의 경우 내용연수가 유한함에 따라 상각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2015년이후 개발비로 계상된 제품의 출시로 인한 개발비 상각비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개발비로 계상된 제품이 성공하여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개발비 상각비가 증가할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비 중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자산화한 품목의 개발에 실패할 경우, 무형자산 손상차손이 발생함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13년 최대주주인 (주)차바이오텍으로부터 ODF 품목 6개를 48억원에 자산양수도를 완료하였으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ODF 제품 개발에 착수하여 무형자산이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무형자산 장부가액은 2013년 48억원에 취득한 ODF 품목에기인하여 63.6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내부개발비 지출이 증가하며 2016년 반기 현재 장부가액은 132.5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당사 무형자산 변동내역]

(단위:백만원)

2016년 반기 무형자산 세부내역									
구분	기초금액	취득	내부개발	처분	상각	손상차손	기말금액		
특허권	34	44	_	_	(8)	_	70		
산업재산권	124	51	_	_	(34)	_	141		

주2) 생산설비는 현재 구체적인 장소 선정 등의 계획은 없으나, 토지 약 5,000평 기준 평당 단가 3백만원, 건축면적 약 3,000평 기준 평당 건축비 및 시설비 10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출됨

소프트웨어	204	120	_	_	(39)	_	285				
개발비	10,936	-	1,595	_	(110)	(63)	12,358				
회원권	469	_	_	(70)	_	_	399				
합계	11,766	215	1,595	(70)	(191)	(63)	13,252				
2015년 무형자	2015년 무형자산 세부내역										
구분	기초금액	취득	내부개발	처분	상각	손상차손	기말금액				
특허권	40	9	_	_	(15)	_	34				
산업재산권	181	1	_	_	(59)	_	124				
소프트웨어	30	223	_	_	(50)	_	204				
개발비	9,503	_	2,727	_	(80)	(1,214)	10,936				
회원권	542	_	_	_	_	(73)	469				
합계	10,296	234	2,727	_	(204)	(1,287)	11,766				
2014년 무형지	다산 세부내	역									
구분	기초금액	취득	내부개발	처분	상각	손상차손	기말금액				
특허권	55	_	_	_	(15)	_	40				
산업재산권	135	97	_	_	(50)	_	181				
소프트웨어	30	8	_	_	(8)	_	30				
개발비	5,993	582	2,928	_	_	_	9,503				
회원권	143	399	_	_	_	_	542				
합계	6,356	503	2,928	_	(73)	_	10,296				
2013년 무형지	다산 세부내	역									
구분	기초금액	취득	내부개발	처분	상각	손상차손	기말금액				
특허권	71	_	_	_	(15)	_	55				
산업재산권	84	87	_	_	(37)	_	135				
소프트웨어	_	37	_	_	(7)	_	30				
개발비	_	4,800	1,193	_	_	_	5,993				
회원권	_	143	_	_	_	_	143				
합계	155	5,067	1,193	_	(58)	_	6,356				

당사는 회원권과 같은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며, 나머지 무형자산의 경우 내용연수가 유한함에 따라 상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10년, 개발비는 5~10년, 산업재산권은 5년, 기타 무형자산의 경우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개발비로 계상된 ODF 제품의 출시가 이어지며 개발비 상각비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 반기 기준 무형자산 중 개발비의 장부가액은 124억원으로, 향후 제품화가 이루어질 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이 진행되는 바, 당사의 회계적인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5년 개발을 진행중이던 4개의 ODF 품목 및 2016년 반기 중 1개 품목에 대하여 개발을 중단하였으며, 이에 따른 무형자산 손상차손이 2015년 12.1억원, 2016년 반기 0.6억원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자산화된 개발비 중 아리피프라졸 ODF와 관련한 금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사는 아리피프라졸 ODF는 2 017년 중 미국 FDA에 최종 승인을 위한 NDA를 제출 예정이며, 2018년 말 ~ 2019년 초부터 미국 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리피프라졸 ODF를 제외하고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타 품목의 개발 중단으로 인한 무형자산 손상차손 및 제품화로 인한 무형자산 상각비가 당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리피프라졸 ODF가 미국 FDA의 최종 승인을 받아 제품이 출시될 경우 내용연수에 걸친 무형자산 상각비가 매년 발생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중단될 경우, 무형자산 손상차손이 대거 발생하여 당사 손익 및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 및 소송으로 인한 위험]

다. 당사는 2011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리베이트 혐의로 인한 과징금 80 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2014년 11월 법원으로부터 리베이트로 인한 벌금 3,0 00만원 및 2015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관련된 임직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당사는 내부통제 강화 및 우수한 영업인력 확대, R&D를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 등 리베이트 단절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

으나,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리베이트와 관련된 문제 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현재 당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진행 중인 소송은 없으나, 향후 소송 또는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법원 및 정부로부터 부정적인 판결이 내려질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 및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주)차바이오텍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기 이전 2011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리베이트 혐의로 인한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태평양제약(7억6,300만원), 슈넬생명과학(2억3,300만원), 한올바이오파마(6억5,600만원), 뉴젠팜(5,500만원), 신풍제약(4억9,200만원), 영진약품공업(3억9,500만원),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2억3,900만원), 삼아제약(1억2,400만원), 스카이뉴팜(800만원, 현 CMG제약) 등 9개 제약사들에 대하여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9억 6,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전국 379개 병의원 소속 의사 및 약사에게 청탁의 대가로 총 15.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인하여 2015년 12월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수사단으로부터 전·현직 영업총괄본부장 등 4명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으며 당사 영업사원 1명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원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2014년 11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만원 및 2015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000만원의 처분을 받은 한편, 식약처로부터 13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는 영업사원 등에 대한 교육 강화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전략적으로 우수한 영업인력의 채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한 제품 경쟁력 확대로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License-in(원재료 및 반제품을 매입하여 추가가공을 거쳐 판매하는 방식) 및 Co-promotion(완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통한 오리지널 의약품 판매 역시 확대 함에 따라 리베이트 관련 규제의 영향을 완화하고 영업환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리베이트와 관련된 문제 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 및 재무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당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진행 중인 소송은 없으나 향후 예기 치 못한 상황의 발상으로 인하여 소송 또는 행정처분 등이 발생 시 당사의 영업활동 및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인력 유출에 관한 위험]

파. 제약산업의 경쟁심화에 따른 우수인력 스카우트 등에 따라 핵심인력이 경쟁회사 또는 다른 사업분야로 이탈할 경우 핵심 기술 노하우의 유출이 발생하여 당사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인력 유출과 이로 인한 기술유출 등이 발생한다면 이는 당사의 경쟁력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영업활동 및 수익성을 악화시킬수 있습니다.

당사는 R&D 투자를 확대하며 ODF 및 합성역량 등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여 제네 릭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수익원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입니다. 이를 위해선 핵심 연구 인력의 높은 질적 수준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화가 필요합니다. 당사는 중앙연구소 및 신약개발연구소를 중심으로 ODF 개량신약 및 제재 연구, 합성 기술을 이용한 표적항암제 기술 개발 등의 연구개발활동을 진행중이며, 우수 인력 양성 및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하여 연구 수행을 위한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핵심인력 유지가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임을 인지하고 핵심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인사시스템 확보 및 경쟁력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인력의 이탈 방지를 위하여 당사는 핵심인력에 대한 특허 취득 및 기술 개발 등의 성과에 따른 보상,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특별 보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며, 연구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업무 만족도 증진 및 자기 계발 프로그램 강화 등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통한 노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업무추진의 자율성 확대, 중요 의사결정에의 참여 확대, 성과 및 기여도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 자유로운 의사소통 및 신속한 의사결정, 차병원그룹 내 인프라를 활용한 직원 교육 활성화 및 복지 혜택 지원 등 핵심인력의 동기부여 확대를 위한 기업문화 조성에 여러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도입

및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인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당사는 2013년 3월 및 2014년 3월 연구개발 인력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총 659,000주 부여한 바 있으며, 이 중 201,000주가 현재 미행사 수량으로 남아있습니다.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은 각각 1,631원 및 1,065원으로 행사시점에 당사 주가가 행사가격 보다 높을 시 가 격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통해 직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신규로 발행되는 20,000,000주 중 3.0% 인 600,0 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여 당사 직원들에 대한 애사심 고취 및 보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핵심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동시에, 당사는 핵심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역시 도입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소는 우수한 외부 인재의 스카우트를 통한 인력 확보를 하는 한편, 국내외 대학 및 협력 업체 등과의 공동연구개발, 국내외 연수 지원, 자체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자체적인 연구인력양성 및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연구개발인력 채용 시 동종업계로의전직금지 기간 적용 및 겸업금지 등의 약정 체결을 검토하여 기술 유출에 대한 위험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사의 노력 및 정책의 지속 여부와 관련없이 제약산업의 경쟁심화에 따른 우수인력 스카우트 등에 따라 핵심인력이 경쟁회사 또는 다른 산업분야로 이탈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 핵심 기술 노하우의 유출 등은 당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당사 영업활동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3. 기타위험

# [유상증자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 위험]

가.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 총수 88,707,244주의 22.55%에해당하는 20,000,000주가 추가로 상장됩니다. 이중 우리사주조합 배정분은 신주발행주식수의 3.0

%인 600,000주이며, 구주주 배정분은 97.0%인 19,400,000주입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이 향후 추가 상장될 경우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물량 출회 및 주가 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 총수 88,707,244주의 22.55%에 해당하는 20,000,000주가 추가로 상장됩니다.

## [당사 주가 및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예정 발행가액]

(단위 : 주, 원)

모집	예정 주식 종류	보통주	비고
	모집예정주식수	20,000,000주	-
유상증자	현재 발행주식총수	88,707,244주	_
	확정 발행가액	2,640원	증자비율 및 할인율 고려
	최근 주가	3,370원	2016년 10월 28일 종가

이중 우리사주조합에 모집예정주식수의 3.0%에 해당하는 600,000주가 배정되며, 구주주 배정분은 97.0%에 해당하는 19,400,000주 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추 가 발행되는 주식은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이 향후 추가 상장될 경우 유 통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주가 희석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가액은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대한 규정 '제57조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관계로 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보다 향후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시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할인율은 25%로써 유상증자 청약자는 청약 시점의 실제 주가보다 낮은 공모가격에 청약에 참여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청약에 참여한 유상증자 청약자는 신주상장 2영업일 전부터 입고예정주식의 매도가 가능하며, 매도가능시점의 주가가 공모가격보다 높을 경우 일시적인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 총 1,034,000주를 부여하였으며, 이 중 410,000주가 행사, 313,000주가 취소되어 중 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수량은 총 281,000주입니다. 이는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0.32% 수준으로 물량 출회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당사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 확대 차원에서 추가적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주가 희석화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원, 주)

부여	관 계	부여일	부여방법	주식의		변동수량		미행사	행사기간	행사
받은자	선계	_ 구어걸 	구여당답	종류	부여	행사	취소	수량	잃사기진	가격
양원석	등기임원	2013.03.29	신주발행	보통주	80,000	-	80,000	-	2016.3.29~2019.3.28	1,631
윤경욱	등기임원	2013.03.29	신주발행	보통주	80,000	80,000	-	_	2016.3.29~2019.3.28	1,631
손태규	등기임원	2013.03.29	신주발행	보통주	10,000	10,000	-	-	2016.3.29~2019.3.28	1,631
강윤현외 78명	직원	2013.03.29	신주발행	보통주	514,000	320,000	138,000	56,000	2016.3.29~2019.3.28	1,631
윤경욱	등기임원	2014.03.31	신주발행	보통주	80,000	_	_	80,000	2017.3.31~2021.3.30	1,065
최준원	등기임원	2014.03.31	신주발행	보통주	25,000	-	25,000	-	2017.3.31~2021.3.30	1,065
김제학	미등기임원	2014.03.31	신주발행	보통주	40,000	-	40,000	_	2017.3.31~2021.3.30	1,065
이달영외 4명	직원	2014.03.31	신주발행	보통주	145,000	-	-	145,000	2017.3.31~2021.3.30	1,065
김제학	미등기임원	2015.03.30	신주발행	보통주	30,000	_	30,000	_	2018.3.30~2022.3.31	1,155
김제학	미등기임원	2016.03.25	신주발행	보통주	30,000	_	30.000	_	2019.3.25~2023.3.24	2,641
합계					1,034,000	410,000	313,000	281,000	_	=

# [실권주 발생시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 위험]

나.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 총수 88,707,244주의 22.55%에해당하는 20,000,000주가 추가로 상장됩니다. 이중 우리사주조합 배정분은 신주발행주식수의 3.0 %인 600,000주이며, 구주주 배정분은 97.0%인 19,400,000주입니다. 한편, 당사의 최대 주주인 (주)차바이오텍(지분율 26.17%)은 보유 지분율에 해당되는 만큼 구주 주 청약에 참여할 예정이며, 초과청약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나, 최총 참여 여부는 (주)차바이오텍의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확정될 것입니다. 본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실권주를 인수한 인수회사가 잔액인수한 주식을 조기에 장내에서 대량 매도할경우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급격한 시장 변동으로 인해 주가가 모집가액보다 크게 하회할 경우 원금손실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보통주 발행주식총수는 88,707,244주이며,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차바이오텍은 23,211,676주(26.1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금번 유상증자에 보유 지분율에 해당되는 만큼 구주주 청약에 참여할 예정이며, 초과청약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최총 참여 여부는 (주)차바이오텍의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확정될 것입니다.

본 유상증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 제2호에 의거 초과청약을 실시하며 초과청약비율은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로써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본 유상증자의 원활한 신주인수권증서매매를 위하여 5거래일간 신주인수권 증서를 상장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통한 구주주 청약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를 희망하는 주주 및 투자자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동부증권을 통해 신주인수권증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주인수권증서의 원활한 매매 및 청약참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주인수권증서를 통한 청약이 부진하여 대규모 실권이 발생할 경우,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끼쳐 일반공모청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며 향후 주가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초과청약 포함) 및 일반공모 청약 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인 동부증권과 인수회사인 대신증권에서 자기 계산으로 최종 인수합니다. 결과적으로 배정 이후 1년간 의무예탁이 되는 우리사주조합 배정분을 제외한, 구주주 및 일반공모 배정분에 대해서는 신주 상장 이후 물량출회가 가능하며, 특히 일반공모 청약 및 배정 이후에도 실권주가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인 동부증권과인수회사인 대신증권 인수 물량이 시간외대량매매, 장내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매도

될 수 있습니다. 장내매매를 통한 물량 출회가 이루어질 경우 이로 인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번 유상증자에 따라 당사가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수방법: 잔액인수]

인수	≥인	인수주식 종류 및 수	인수대가
대표주관회사	농부승권(수)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X 인수비율(70%)	<ul><li>▶대표주관수수료: 금 일억원(정액)</li><li>▶ 기본수수료: (모집총액의 1.8% - 금 일억원) × 70%</li><li>▶ 추가수수료: 잔액인수금액 x 15.0%</li></ul>
인수회사	1개선승권(수)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X 인수비율(30%)	<ul><li>▶ 기본수수료: (모집총액의 1.8% - 금 일억원) × 30%</li><li>▶ 추가수수료: 잔액인수금액 x 15.0%</li></ul>

만약 본 유상증자 청약에서 대량 실권이 발생하게 되면, 당사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인수수수료로지급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당사 주식 인수 후 수익을 확정하기위해 빠른 시일내에 인수한 주식을 장내에서 매각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당사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유상증자 청약자, 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는 신주상장 2영업일 전부터 입고예정주식의 매도가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에서 인수한 주식를 일정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인수물량이 잠재매각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실권수수료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바, 이를 고려시 실권주 매입단가가 일반청약자들 보다 약 15% 낮은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당사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금성 제약 위험]

다.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

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코스닥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코스닥증 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 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1. 공모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스닥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집단소송 관련 위험]

라.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소송허가 요건)에 따라 50명 이상의 개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0.01% 이상 보유할 경우 한 명 이상의 대표 당사자가 상기 50인 이상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서 기재된 잘못된 내용, 잘못된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거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주요한 소송사유에 포함됩니다. 당사는 향후 이와 같은 집단소송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수 없으며, 만약 당사에 대하여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소송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기관의 관리감독 관련 위험]

마.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 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상장의 폐지)"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2(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law.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기재 정정 및 일정 변경 관련 위험]

바.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 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 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

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 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위험요소 이외 기타 위험]

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유상증자를 위해 기재한 투자위험요소 중에는 예 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 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 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이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 서의 다른 기재 부분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 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 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 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 ,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 (3)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 (4)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제125조,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따라 본건 공모 지분증권 인수인이 당해 공모 지분증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동부증권(주)입니다. 발행회사인 (주)CMG제약은 "동사"로 기재하였습니다. 또한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분석기관

구 분	증 권 회 사 (분 석 기 관)		
	회 사 명 고 유 번 호		
대표주관회사	동부증권(주)	00115694	

##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동부증권(주)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②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현황, 사업 환경, 투

자위험, 인수 형태, 신용평가등급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며, 동조 제⑤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주관회사는 지분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분증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지분증권은 대표주관회사인 동부증권(주)의 내부 규정상 기업실사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

제3조(적용범위 등) ①이 규준은 법 제1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신고서 및 법 제1 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영업의 실체가 있는 발행회사가 제출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으로 하고 자산유동화증권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이 규준은 주간회사가 업무수행 중 참고해야 할 기본적인 지침으로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 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 ③기업공개의 경우 기업공개 실사절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 규준의 내용중 한국거래 소의 상장심사지침 등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서는 이를 생략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 ④채무증권의 경우 i)보증유무, 상환조건(만기, 옵션유무), 특약 등 해당 사채의 특성, ii)법 제11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신고서에 의한 발행인지 여부, iii)발행회사가시행령 제121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iv)해당 사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외부 및 내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 규준을 완화할 수 있다.
- ⑤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이 규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 3. 기업실사 참여자

[발행회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담당업무
(주)CMG제약	경영관리본부	김상기	전무	경영관리
(주)CMG제약	연구개발본부	서정법	상무	연구개발
(주)CMG제약	개발본부	김병조	상무	개발
(주)CMG제약	경영관리팀	김상래	부장	재무
(주)CMG제약	GRA팀	김현정	대리	해외임상

# [대표주관회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실사업무분장	주요경력
동부증권(주)	FAS본부	이명기	FAS본부장	기업실사 총괄	기업금융업무 26년
동부증권(주)	FAS팀	이성욱	팀 장	기업실사 총괄	기업금융업무 17년
동부증권(주)	FAS팀	이윤경	부 장	기업실사 총괄	기업금융업무 16년
동부증권(주)	FAS팀	김대용	부 장	기업실사 총괄	기업금융업무 13년
동부증권(주)	FAS팀	봉남영	과 장	기업실사 실무	기업금융업무 8년
동부증권(주)	FAS팀	김현철	대 리	기업실사 실무	공인회계사업무 4년 기업금융업무 1년
동부증권(주)	FAS팀	손 문	사 원	기업실사 실무	기업금융업무 1년

# 4.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일시	장소	실사 내용
2016.07.20	(주)CMG제약 본사	1) 발행회사 초도 미팅 - 회사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청취 - 발행회사의 자금조달 의사 확인 - 자금 조달 희망금액 등 발행회사 의견 청취 - 이사회 등 상법 절차 및 정관 검토 2) 사업의 개괄 등 PT 청취 - 주요파이프라인 및 시장 현황 등
		1) 유상증자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

일시	장소	실사 내용
2016.07.22	동부증권(주) 본사	2) 1차 사전요청자료 송부 -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의거 - 공시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에 대한 사전 조사
2016.07.25 ~ 2016.07.27	(주)CMG제약 본사	1) 증자관련 사항 논의 - 유상증자 방식 및 조건 등에 관한 협의 - 자금 사용 목적 등에 관한 의견 청취 - 기타 유상증자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 협의  2) 사업위험관련 실사 - 주요 파이프라인 진행사항 검토 - 국내외 제약 산업 검토 - 시장 현황 및 영업현황 등과 관련 인터뷰 진행 - 재무 현황 및 영업실적에 대한 실사 및 인터뷰 - 소송 및 법적 이슈에 대한 질의응답 - 사업 전망에 대하 질의응답
		3) 임상시험 관련 진행 사항 검토 및 인터뷰 진행
2016.08.01 ~ 2016.08.09	(주)CMG제약 본사	1) 실사요청자료 열람 및 주요 경쟁사 확인 - 사업 / 경쟁 / 제품 / 기술 / 재무 등 - 기술력 및 특허 현황 파악 - 주요 경쟁현황 확인  2) 일반현황 및 소송 관련 실사 - 회사 현황, 주주, 재무정보, 법률/소송, 주요 계약 등 - 차입금, 인사/노무, 세무,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3) 경영능력 및 투명성 실사 - 그룹 지배구조 실사 -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 목록 실사  4) 재무안정성 실사 -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의 건전성 실사
		1) 증자리스크 검토 - 발행시장의 상황, 자금조달규모의 적정성, 공모가액 희망 할 인율, 발행 회사의 자금사용 계획 등 확인
		2) 기타위험관련 실사 - 주가 희석화관련 위험 등 체크
2016.08.10	(주)CMG제약	3) 회사에 관한 위험 사항 확인

일시	장소	실사 내용
~	본사	- 영업, 재무 등 확인
2016.08.12		4) 2016년 반기 이후 주요 변동사항 확인
		5) 투자위험요소 세부사항 체크
		- Due Diligence 체크리스트 점검 - 주요 공모 위험사항에 대한 점검
		- 재무제표 및 각종 명세서 등의 장부검토 - 주요 계약관련 계약서 및 소송관련 서류 등의 확인
2016.08.16	동부증권(주)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확정 - 공모개요, 예정 발행가액, 공모방법 등
2016.06.16	본사	2) 이사회의사록, 인수계약서, 증권신고서 등 각종 계약서류 및 공시서류 최종 점검
2016.08.22	(주)OMG제약 본사	1) 자금의 사용목적 추가 확인 - R&D자금 정정

##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6. 종합평가의견

가. 대표주관회사인 동부증권(주)는 (주)CMG제약이 2016년 08월 17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보통주식 20,000,000주에 대한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를 잔액인수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나. 대표주관회사는 주식회사 CMG제약이 제출한 자료와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자료를 중심으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 대표주관회사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동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로 투자수익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 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 현재 동사의 최대주주는 (주)차바이오텍으로, 지분율은 26.17%입니다. 한편,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로 진행되는 금번 유상증자 시 최대주주 (주)차바이오텍은 보유 지분율에 해당되는 만큼 구주주 청약에 참여할 예정이며, 초과청약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나, 최총 참여 여부는 (주)차바이오텍의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확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지분구조를 고려하였을 경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지분변동의 발생가능성은 낮으며, 이에 따라 동사의 경영권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동사는 상장 이후 잦은 사업내용 변경 및 대표이사의 변경, 최대주주 변경 사실 등의 연혁이 존재하나, 2015년 10월 취임한 이주형 대표이사는 알보젠코리아에서 CEO를 역임하는 등 제약회사에서의 다년간 경험을 갖 고 있습니다. 2012년 (주)차바이오텍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이후 동사의 지배구조는 안정화되고 있으며, 이주형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의 경험 과 전문성은 동사 사업 경쟁력이 원천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긍정적 요인 ▶ 동사가 개발중인 조현병 치료제 아리피프라졸 ODF는 현재 미국 FDA로 부터 505(b)(2) 개량신약으로 허가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현재 임상시험 마무리 단계(최종 결과 통보 대기)이며, 2017년 말 NDA(New Dru g Approval, 신약 승인)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동 제품은 전세계적인 블록 버스터급 오리지널 의약품인 일본 오츠카사의 Abilify의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필름제형으로 제형을 변형한 제품으로, 기존 정제형 제품 대비 작은 사이즈, 빠른 약효, 편의성 및 복약 순응도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됩니다.

- ▶ 동사의 매출액은 2012년 최대주주 변경 이후로 제네릭 의약품 포트폴리오 확대 및 ODF 제품 개발 및 출시 등에 힘입어 2013년 204.0억원, 2014년 227.5억원, 2015년 270.4억원, 2016년 반기 158.4억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 동사의 경우 현재 무차입 경영중으로 차입금의존도는 0%이며, 2016년 2분기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장단기금융상품을 포함한 현금성자산은 71 .6억원으로 순부채비율은 -14.8%, 부채비율은 19.2%로 재무구조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동사는 상장 이후 현 최대주주인 (주)차바이오텍이 최대주주의 지위에 등록하기 이전 잦은 사업내용 변경 및 대표이사 변경, 최대주주 변경 사실과 1건의 합병 및 다수의 자금조달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연혁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우발부채 또는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 ▶ 동사는 2015년 적자전환으로 인하여 자기자본이 전년 대비 4.47% 감소하였으나, 2016년 반기에 흑자전환에 성공하여 자기자본이 2015년 대비 3.03%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설립 이후 영업악화 등으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결손금이 대규모로 축적되었기 때문에 2016년 반기말 현재 자본금 대비 자본총계가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금번 유상증자가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자본잠식의 우려는 완화될 예정이나, 향후당사의수익활동이 악화되어 계속된 적자가 누적될 경우 자본총계 감소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 ▶ 동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 판매관리비가 전년 동기 대비 44억원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적자전환하였고, 개발비 손상으로 인한 기타비용이 10억원 증가하는 등 별도기준 3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2016년 2분기 매출이 1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03% 증가하며 실적 개선을 이뤘으나, 예상치 못한 영업환경 악화 시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동사의 매출채권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매출처에 대한 채권회수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사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손충당금설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실 거래처들로 인하여 추가적인 매출채권 대손상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대내외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당사 주요 매출처인 의약품 도매상의 부도 또는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동사는 업종평균 대비 우수한 수준의 재고자산회전율 을 기록하며 재고자산 관리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실적 저하 및 재고자산관리 효율성 저하 시 관련 지표들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부정적 요인

- ▶ 동사는 (주)차바이오텍을 모회사로 하는 차병원그룹에 소속되어 있으며, 차병원그룹은 모회사인 (주)차바이오텍을 주축으로 21개의 자회사를 보유하며 대부분 의약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 따라 의약 사업과 관련하여 위 자회사들과 특수관계거래가 존재합니다. 동사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특수관계회사간 임원 겸직의 해소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 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모든 이해상충가능성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 ▶ 의약품의 특성상 연구개발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반면, 완제의약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까지 예상치 못한 변수에 따른 일정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해외 진출을 통한 수익원 다각화의 일원으로 판매공급계약을 체결 및 협의중에 있으나, 해외 시장에서의 의약품 허가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도 단기간에 대규모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에 따라, 아리피프라졸 ODF를 비롯한 동사의 신제품의 출시 시기 및 성공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 제약산업에서는 신제품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시설 및 R&D 투자 등 지속적인 자본적 지출(CAPEX)이 이뤄지며, 동사 역시 Capa 증설을 위한 신규시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향후 업황의 변화에 따라 현재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신규 공장의 준공 및 인증 취득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동사의 생산 및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동사가 연구개발중인 표적항암제 신약의 경우 비임상 진입 전으로서 실질적인 수익창출로 연결되기까지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함에 따라 예상 을 초과하는 연구개발비 투자 소요가 발생하여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동사의 무형자산은 ODF 개발비 등의 자산 화로 인하여 매년 증가중인데, 향후 개발비로 계상된 제품의 매출 발생으 로 인하여 상각비가 증가하거나, 자산화한 품목의 개발이 실패할 경우 무

형자산 손상차손이 발생함에 따라 동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 동사는 과거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례 과징금 및 1차례의 벌금을 부과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한편, 현재 동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진행 중인 소송 건은 없으나, 향후 소송 또는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판결 시 동사 영업활동 및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의 필요성

▶ 동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만약 금번 유상증자의 공모금액이 당초 계획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세부사용 내역은 "V.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08.22.

대표주관회사: 동부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고원종

# Ⅴ. 자금의 사용목적

#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52,800,000,000
발행제비용(2)	1,111,014,000
순 수 입 금 [ (1)-(2) ]	51,688,986,000

주1) 상기 금액은 확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분	금액	계산 근거
발행분담금	9,504,000	모집총액의 0.018% (10원 미만 절사)
대표주관수수료	100,000,000	금 일억원 정액
인수수수료	850,400,000	모집총액의 1.8% - 대표주관수수료 금 일억원
상장수수료	6,110,000	590만원+5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7만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4)
등록면허세	40,000,000	증자 자본금의 0.40% (지방세법 제28조)
지방교육세	8,000,000	등록면허세의 20%
기타비용	97,000,000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신주배정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신문공고비, 등기비용 등
합계	1,111,014,000	-

주1) 상기 금액은 확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사의 보

통주식 종가,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3) 기타비용은 예상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4) 상기 인수수수료는 기본수수료만을 반영하였습니다.
- 주5) 상기 상장수수료는 2016년 10월 4일부로 시행되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반영하였습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단위:원)

시설자금	운영자금	차환자금	기타	À
39,000,000,000	13,800,000,000	_	_	52,800,000,000

- 주1) 당사의 공모자금은 확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주2) 금번 자금조달을 통한 자금 조달시기와 집행시기 간의 차이로 인하여 불일치되는 금액 발생시 회사 내부의 유보자금 등을 이용하여 우선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 주3) 금번 자금조달로 조달하는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 가. 자금 조달의 개요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를 통한 납입자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목 적	사용내역	금액
시설자금	생산설비 확충	공장 신축 및 신규설비 도입	39,000
운영자금	R&D 투자	아리피프라졸 ODF 등	13,800
	총계		52,800

- 주1)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주2) 자금 집행시기까지의 미사용금액은 당사 명의의 보통예금에 입금하여 자금을 보유할

계획입니다.

## 나. 자금의 세부사용 내역

당사는 금번 자금조달을 통해 모집하는 총 528억원의 자금 중 390억원을 생산설비투자에 활용하고, 138억원을 R&D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투입시기는 자금조달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2019년까지이나 대부분은 자금은 2017년 및 2018년 2개년에 걸쳐 집행될 예정입니다.

#### ■ 자금사용 세부내역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시설자금	생산설비시설 투자	22,000	17,000	_	39,000
운영자금	R&D	5,950	5,200	2,650	13,800
	합계	27,950	22,200	2,650	52,800

(단위:백만원)

■ 자금 사용 상세 일정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용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토지구입	면적: 5,000평, 평당 단가 3백만원, 15,000백만원	12,000	-	-	12,000
생산설비시설 투자	설계	건축면적 : 3,000평, 평당 건축비 3백만원, 9,000백만원	4,000	5,000	-	9,000
정신절비시절 구사	설비구입	생산시설비 : 210억원	6,000	12,000	-	18,000
		생산설비투자 소계	22,000	17,000	-	39,000
	아리피프라졸 ODF	NDA 허가를 위한 CRO 선정 등 제반 비용 등	2,500	1,500	-	4,000
	신약 개발비	비임상 시험 진행 등을 위한 개발비	1,400	2,900	1,600	5,900
R&D	ODF 개발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및 품목 허가 등 개발비	1,100	200	400	1,700
	정제 개발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및 품목 허가 등 개발비	950	600	650	2,200
		R&D 소계	5,950	5,200	2,650	13,800
	합계			22,200	2,650	52,800

## ■ 생산설비시설 투자 내용

구분	투자 내용
예상 투자 금액	약 390억원 추가 지출 예정 (총 투자 예정 금액 약 390억원)
투자 기간	2018년 상반기까지 투자 완료 예정
투자 목적	GMP 선진화제도 도입에 따른 국제기준에 적합한 신공장 신축

주) 생산설비 증설을 위한 세부적인 공장 부지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하지 않은 상

## 황입니다.

#### ■ R&D 138억원 사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용	설명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아리피프라졸 ODF	아리피프라졸 ODF NDA	NDA 허가를 위한 CRO 선정 등 제반 비용 등	2,500	1,500	_	4,000
신약 개발비	표적항암제 7개 품목 등	비임상 시험 진행 등을 위한 개발비	1,400	2,900	1,600	5,900
	실데나필 ODF		200	-	_	200
	데스모프레신 ODF		500	1	-	500
ODF 개발비	신규 ODF 2개 품목(2017)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및 품목 허가 등 개발비	400	_	_	400
	신규 ODF 1개 품목(2018)		_	200	_	200
	신규 ODF 2개 품목(2019)		_	_	400	400
	Celecoxib 200mg		300	-	-	300
	Carvedilol 25mg		300	-	_	300
정제 개발비	간염 치료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및 품목 허가 등 개발비	350	_	_	350
	신규 제네릭 3개 품목(2018)		_	600	50	650
	신규 제네릭 3개 품목(2019)		_	_	600	600
합계				5,200	2,650	13,800

당사는 조달자금에 대하여 소진 시까지 국내 신용평가등급이 AAA이상인 국내시중 은행 정기예금 또는 RP 및 AA- 이상 국내증권사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보관할 예 정이며, 위 자금운용에 대한 사항은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자금담당 중역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 건의 경우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 회사의 개요

## 1. 회사의 개요

##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단위: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스카이뉴홀딩스	2006.03.06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97-27 싸이칸빌딩 별관 5층	경영 및 벤처 기업컨설팅	81	의결권의 과반수이상 소유	-
SGN(유)	2005.08.22	울란바타르시 바양골구 제7동 엔비시 울근출루 Cass town	무역, 광산업	-	의결권의 과반수이상 소유	-

주1) 주요종속회사는 직전사업연도말(2015년) 재무제표상(IFRS)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 또는 지배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종속회사를 의미합니다.

주2) SGN(유)은 해외종속회사로 2009년 전액 손상으로 장부가액이 제거되었으며, 현재 실질적인 폐업상태입니다

##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분	자회사	사유
신규	_	_
신규 연결	_	_
연결	_	_
연결 제외	1	_

<sup>-</sup> 해당사항 없음.

#### (3)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CMG제약이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CMG Phar maceutical Co., Ltd. 라 표기합니다. 약식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주)CMG제약이라고 표기합니다.

## (4)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주)미창 에서 2001년 08월 01일에 기업(인적)분할하여 재설립되었으며, 200 1년 08월 31일에 코스닥시장에 재상장되었습니다.

## (5) 본점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6길 14(청담동)

공장: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7번길 27(정왕동)

전화: 031-881-7612

홈페이지: http://www.cmgpharma.co.kr

#### (6) 중소기업 해당여부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 (7)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2006년 05월 제약사업에 진출, 2008년 02월 (주)쎌라트팜코리아와의 합병을 거쳐 현재 의약품 제조 및 판매의 제약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자세한 사항은 동 보고서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8) 계열회사 현황

구분	회사명
상장	(주)CMG제약
6 6	(주)차바이오텍
비상장	(주)차헬스케어 (주)차메디텍 (주)차케어스 (주)차백신연구소 (주)서울씨알오 (주)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CHA Biotech USA, Inc Stem Cell & Regenerative Medicine International (주)스카이뉴홀딩스
	SGN(유)

주1) (주)스카이뉴홀딩스는 당사가 100% 소유한 자회사입니다.

주2) SGN(유)는 당사가 100% 소유한 해외종속회사로 2009년 전액 손상으로 장부가 액이 제거되었으며, 현재 실질적인 폐업상태입니다.

## 2. 회사의 연혁

## (1) 회사의 연혁

일 자	연 혁
2001.08.01	(주)미창 에서 인적분할하여 설립
2006.05.01	(주)스카이뉴팜으로 상호변경
2008.08.01	(주)쎌라트팜코리아 흡수합병 후 의약품 제조 및 판매사업 개시
2012.11.09	(주)차바이오텍으로 최대주주 변경
2013.03.29	(주)CMG제약으로 상호변경
2014.04.28	판교 차바이오 컴플렉스 내 R&D 및 Business 인프라 구축

## (2)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변경일	변경후 본점소재지
2010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50-1 송석빌딩 5층
2012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33, 7층(논현동, 엠제이엘빌딩)
2014년 12월 0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6길 14 (청담동)

## (3) 최대주주의 변동

2012년 11월 09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취득으로 최대주주는 (주)차바이 오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위: 주, %]

최대주주명	변동일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임혜숙	2010년 08월 06일	2,100,000	9.62	유상증자(제3자배정) 납입에 따른 최대주주변경
김원정	2011년 12월 31일	1,009,701	2.31	소유주식 전량 장내 매도에 따른 최대주주변경
노연호	2012년 10월 12일	1,750,000	3.86	소유주식 일부 장내 매도에 따른 최대주주변경
(주)차바이오텍	2012년 11월 09일	20,000,000	30.60	유상증자(제3자배정) 납입에 따른 최대주주변경

주1) (주)차바이오텍의 지분율은 최대주주 변경 당시(2012년 11월 09일)의 소유주식 수와 지분율이며,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에 대한 변동은 2015년 9월 7일 제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자세한 사항은 'VI. 주주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경영진(대표이사) 변동

변경일	변동전	변동후
2010년 10월 06일	박선규	김진서, 황승규
2011년 03월 30일	김진서, 황승규	김진서
2011년 04월 04일	김진서	김진서, 정경석(각자 대표이사)
2011년 09월 08일	김진서, 정경석(각자 대표이사)	김봉선
2012년 11월 09일	김봉선	양원석
2014년 03월 31일	양원석	김정호
2015년 11월 06일	김정호	이주형

## (5) 상호의 변경

변경일	변동전	변동후	변경사유
2013년 03월 29일	(주)스카이뉴팜	(주)CMG제약	기업이미지제고

## (6) 그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 내용

변경일	내용
2010년 08월 31일	영업권 양수도계약을 통해 범일인더스트리(주)로부터 컬러 화강석에 대한 국내 독점적 영업권 양수
2011년 01월 31일	태양광발전사업 진출 관련하여 (주)콘센트릭스솔라코리아 지분투자 및 전환사채 인수
2013년 04월 17일	개량신약 생산을 위한 제조설비의 구축(향후 자체개발제품을 비롯한 타 제약회사의 위탁제품 생산예정)
2013년 07월 09일	(주)차바이오텍의 개량신약 ODF 6개 품목에 대한 자산양수 계약
2014년 01월 02일	(주)차바이오메드의 신약개발 사업부에 대한 인적·물적·설비 등 권리의무 승계하는 영업양수 계약
2014년 04월 25일	유형자산취득결정 (차바이오컴플렉스)

# 3. 자본금 변동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원, 주)

조 시 H L등U	ᆸᅡᆑᆔᄼ가ᄉᄾ		발행(2	감소)한 주식	의 내용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1.01.25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1,191,895	500	839	우호적 투자자
2011.05.02	전환권행사	보통주	1,301,058	500	754	3회차
2011.09.07	전환권행사	보통주	23,872	500	754	3회차
2012.01.06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1,663,891	500	601	소액공모
2012.11.09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20,000,000	500	817	-
2012.11.13	전환권행사	보통주	668,449	500	748	3회차
2013.09.30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20,489,968	500	898	4회차
2013.10.10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111,358	500	898	4회차
2015.08.10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1,670,378	500	898	4회차
2016.04.15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333,000	500	1,631	24회차
2016.05.17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36,000	500	1,631	25회차
2016.06.15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41,000	500	1,631	26회차

# 4. 주식의 총수 등

(1)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주식의 종류			
	구 분	보통주	우선주	합계	비고	
١.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0,000	_	200,000,000		
11.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98,060,578	_	98,060,578	_	
III.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9,353,334	_	9,353,334		
	1. 감자	9,353,334	_	9,353,334	_	
	2. 이익소각	_	_	_	_	
	3. 상환주식의 상환	_	_	_	_	
	4. 기타	_	_	ı	_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88,707,244	_	88,707,244	_	
V. 자기주식수		_	_	_	_	
VI.	유통주식수 (IV-V)	88,707,244	_	88,707,244	_	

(2)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 - 해당사항 없음

## 5. 의결권 현황

### (1) 의결권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88,707,244	_
287787(7)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_	_
	우선주	-	_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	보통주	-	_
제된 주식수(C)	우선주	_	_
기타 법률에 의하여	보통주	_	_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우선주	_	_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_	_
ᅴㄹ션이 누덜션 누억누(C)	우선주	_	_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보통주	88,707,244	_
(F = A - B - C - D + E)	우선주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배당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배당에 관한 회사의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배당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할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2)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③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4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 (3)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 (4)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_ □	조사이 조근	당기	전기	전전기
구 분	주식의 종류	제16기 반기	제15기	제14기
주당액면가9	박 (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의	익(백만원)	536	-3,650	158
주당순이익	(원)	6	-42	2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_	_	_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_	_	_
(연결)현금배딩	성향(%)	_	_	_
취그베다스이르 (6/)	_	_	_	_
현금배당수익률 (%)	_	_	_	_
조시베다스이르 (6/)	_	_	_	_
주식배당수익률 (%)	_	_	_	_
조다 싱그베다그 /이\			_	
주당 현금배당금 (원)	_	_	_	_

구 분	조사이 조근	당기	전기	전전기
7	주식의 종류	제16기 반기	제15기	제14기
スCt スといに (ス)	_	_	1	_
주당 주식배당 (주)	_	_	_	_

## Ⅱ. 사업의 내용

#### 1. 업계의 현황

#### (1) 산업의 특성

의약품 산업은 인간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보건산업으로 고도의 화학합성 기술력을 요구하는 정밀화학산업이며, 연구개발형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특성을가지는 21세기 가장 고도성장이 기대되는 미래성장산업입니다.

제약산업의 주요특성은 첫 번째 국민보건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인간의 존엄한 생명과 직결된 만큼 정부의 제도적 규제 아래 관리되는 특성이 있으며, 두 번째 물질 특허를 통한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산업입니다. 또한, 신약 개발은 많은 시간, 인력, 비용이 소요되지만 성공리에 개발된 신약은 막대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시장 집중도와 시장 지배력이 절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병의원인이 다양한 만큼 의약품의 생산구조는 다품종소량 생산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의사, 약사 등 중간수요의 비중이 크며, 시장이 제품별로 세분화 되어 있고, 그에 따른복잡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약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 고령화 시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분야로서 생명공학 등을 기반으로 건강한 삶을 구현시킬 수 있는 미래산업으로서 앞으로 BT(Biotechnology)가 국가경제의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산업의 성장성

제약 시장 규모는 고령화와 경제 발전 등으로 인해 의약품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2006~2011년 약 8%였던 글로벌 제약시장 성장률이 2011~2016년에는 4%대로 줄 어들 것으로 예상 하는 등 성장률은 예전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약시장의 규모와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의약품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것과 의약품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의약품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먼저 고령화 추세를 들 수 잇습니다. UN자료에 의하면 2011년 기준 전세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7.7%인데 이는 2030년에는 11.7%로 증가할 전망이고, 선진국의 경우 16.2%에서 22.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2030년에는 전 세계 83억 명 인구 중 9억 8천만 명, 선진국 인구 13억 명 중 2억 9천만 명이 고령자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고령화는 만성질환 증가 및 이로 인한 의료 서비스와 의약품 사용량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경제 발전도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국가와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이를 의료 및 의약품에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수명이길어지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개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 역시 의약품 수요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2000년과 2010년의 각국의 경제발전과 의료비 증가를 비교해 보면 영국, 미국 등의 선진 국은 GDP성장률 대비 높은 의료비 증가율을 보였고, 중국, 인도와 같은 고성장 국가도 경제 성잘률과 유사한 높은 의료비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의약품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소비재 산업에서는 특정 제품의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하더라도 가격 규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매출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제약산업의 경우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는 만큼, 각국 정부와 보험사의 밀착 규제를 받게 됩니다.

고령화와 경제 발전 등으로 인해 의약품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각국 정부와 보험사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약가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규제방법으로는 개별 약품들의 가격을 인하하거나,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약품은 허가를 안 해 주거나 허가를 하더라도 보험급여 리스트에 포함시켜 주지 않는 방법, 오리지널 약품의 사용량을 줄이고 저렴한 제네릭(복제약)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계에서 수 조원을 벌어들이던 블록버스터 약품들의 특허가 2000년대 들어줄줄이 만료된 반면, 그 뒤를 이을 신약들의 발매는 크게 줄어들면서 정부 규제와 별개로 제네릭 사용 비중이 증가한 것도 평균적인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허가 과정이 더 엄격해지면서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시간과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의약품 가격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좀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제약시장은 선진국보다는 파머징(제약 신흥)시장의 높은 성장률이 지속 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태국,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총 17개 국가가 포함됩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글로벌 제약시장은 미국과 유럽이 독주하는 시장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파머징 시장의 비중은 불과 14%에 불과 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는 파머징 시장의 비중이 20%, 2016년에는 30%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의 경우 향후 5년간 제약시장 성장률이 1~4%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파머징 시장의 경우 두 자리 수의 성장률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머징 시장은 절대 인구 수 및 인구 증가 속도가 높으며, 경제성장률이 높고 이에 따라 소 득 증가도 빠르며, 의료 인프라 확대속도가 빨라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소비량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제약시장은 파머징 시장을 필두로 성장을 지속화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출처: IMS, LG Business 등 참고)

#### (3) 경기변동의 특성

의약품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는 비탄력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은 전문의약품(ETC)과 일반의약품(OTC) 2개 부문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전문의약품 시장은 의약분업 이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일반의약품 대비 안정적인 수급구조로 경기변동과 계절적 요인에 다소 영향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보다 수요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고유가, 세계시장의 경제 불안에 따른 국내시장 여파로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소비비중이 축소될 우려도 있습니다.

#### (4) 경쟁요소

최근 국내 의약품산업은 약가 통제, 내수 시장 집중, FTA와 같은 시장개방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바, 생존을 위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특히전 세계 의약품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주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① 내수 중심의 수익구조

국내 의약품 시장은 2006~2010년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만료로 인한 제네릭 의약품 출시로 연간 6~11%의 양호한 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약가 인하 및 리베이트 금지 등 규제가 강화되고 경쟁도 심화되면서 국내 제약기업들은 기존 사업모델 및 내수 시장 공략으로는 성장의 한계성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 ② 한국 제약회사의 수출 현황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는 18.93조원으로 전년 대비 1.67%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0.02%의 저성장 기조(2015년 역성 장)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수출은 3.33조원으로 전년대비 31.42% 성장하였으며, 최

근 5년간 연평균 14.38% 증가하여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 [연도별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

(단위: 십억원)

구분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04-'10 CAGR	'11-'15 CAGR
생산	9,637	10,599	11,473	12,598	13,894	14,788	15,570	15,440	15,561	16,192	16,419	16,793	8.32%	2.12%
수출	811	814	863	947	1,256	1,772	1,770	1,943	2,310	2,319	2,531	3,327	13.89%	14.38%
수입	2,447	2,646	3,273	3,411	4,320	4,954	5,109	5,447	5,729	5,156	5,366	5,465	13.05%	0.08%
무역수지	-1,635	-1,833	-2,410	-2,464	-3,064	-3,182	-3,339	-3,504	-3,419	-2,837	-2,834	-2,138	12.64%	-11.61%
시장규모	9,637	10,599	11,473	15,062	16,958	17,970	18,908	18,944	18,980	19,029	19,254	18,932	11.89%	-0.02%
성장률	-	9.97%	8.25%	31.29%	12.59%	5.97%	5.22%	0.19%	0.19%	0.26%	1.18%	-1.67%	_	-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1) 무역수지 = 수출액 - 수입액

주2) 국내 시장규모 = 생산액 - 수출액 + 수입액

### (5) 자원조달상의 특성

제약산업의 특성상 완제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는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부재료는 100% 국내 구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국내 상위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원료합성의 새로운 공정개선 및 기술개발 등이 활성화되면서 원료의약품의 국산화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5년 도입된 DMF(Drug Master File: 원료의약품신고제도)는 국내생산 및 수입원료의약품의 신고절차를 통하여 양질의 원료의약품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제약회사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및 지원
- ① 관련 법령: 약사법, 마약법, 향정신의약품 관리법
- KGMP(우수의약품 제조기준)
- KGSP(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
- KGLP(의약품안정성시험관리기준)
- BGMP(우수원료의약품제조관리기준)등
- ② 정부 규제: 표준소매가 폐지에 따른 판매자 가격표시제도, 보험약가규제, 약가재평가, 최저실거래가제, 참조가격제,의약품광고관련 규제, 포지티브 약가제도, 품목별GMP 의무화, 상용의약품과 고가약 생동시험 의무화, 낱알식별 표시 의무화

③ 정부 지원: 신약개발관련 지원 및 바이오신약/장기부문 지원 등

#### 2. 회사의 현황

#### (1) 영업개황

당사는 매출 및 외형면에서는 중소형사에 속하지만,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전문의약품(강장질환용제, 기생성피부질환용제, 동맥경화용제 등)과 일반의약품(광범위피부질환치료제, 종합감기약, 해열진통소염제 등)의 제조 및 생산, 판매를 통해 내실있는 회사로발돋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 (주)차바이오텍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끊임없는 경영혁신을 통해 2013년에는 8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지속되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생존하고, 글로벌 제약회사로 발전하기 위하여 당사는 기존 제약사업 부문의 영업력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개발 과제에 최우선으로 자원을 집중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타 제약회사와의 제휴 및 시장성 있는 의약품 개발로 매출 증대와 시장점유율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2) 시장점유율

당사의 제약사업은 2008년 02월 19일부로 중소제약사 (주)쎌라트팜코리아를 흡수합병 하면서 의약품 생산, 판매에 따른 매출이 지속적 수익을 창출하여 꾸준한 매출 성장성을 기록하고 있으나, 외형 및 브랜드 인지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장점유율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3) 시장의 특성

제품의 수요처로는 전국의 약국, 도매상 및 병의원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의약분 업 이후 일반의약품 시장은 정체되고 있으나, 전문 의약품시장은 고가품과 오리지널 브랜 드 중심으로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약품시장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R&D 역량개발 및 제품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장확대 및 매출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개량신약 ODF(구강용해필름) 사업

※ 구강용해필름은 현재 초기 단계로, 업계 내 ODF(Orally Disintegrating Film), OSF(Orally Soluble Film), OTF(Orally Thin Film)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ODF(Orally Disintegrating Film)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며,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서는 OSF(Orally Soluble Film)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5년까지 OTF(Orally Thin Fil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2016년부로 국내 식약처에서 ODF(Orally Disintegrating Film)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된 제품명 등은 ODF로 표기하였습니다.

#### ① 개량신약의 개요

개량신약(Incrementally Modified Drug, IMD)이란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복약 순응도, 편리성등]에 있어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에 비해 개량되었거나 의약기술에있어 진보성이 있다고 식약청이 인정한 의약품을 지칭합니다. 국내에는 '의약품의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에 개량신약 관련 규정이 신설되고(2008.08), 이에 따라 개량신약에 대한 인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정한 '개량신약 인정 및 우선신속심사제도 운영지침(2009.01)'에 따라 개량신약을 심사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

개량신약은 기허가 의약품의 물리화학적 특성, 제제 및 효능을 개선함으로써 적응증 추가, 부작용 감소, 복용편의성 개선 등 치료 효율을 극대화하고, 기존 약물대비 낮은가격으로 제공되어 보험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제 기술로는 방출 제어 및 지속화 기술, 약물흡수 촉진 기술, 약물특성개선 기술, 생체이용률 조절기술, 표적지향화 기술, 유전자 전달체 기술, 의약용 신소재/첨가제 개발기술 등이 있으며, 개량 목적에 맞 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② ODF(구강용해필름) 사업의 향후 전망

초기(1997~2005) 제제연구자들이 비디오필름 등의 전문 코팅기술을 도입해 적정한형태, 투여할 혀 또는 구강점막 등의 위치를 고려한 크기, 생산가능한 두께 그리고 환자투여에 적합한 향 등을 고려해 구강용해필름에 대한 가능성을 확립했습니다.

이어 API(원료의약품)를 구강용해필름에 의해 적용할 연구를 완료했으며, 이에 따라 대량생산이 가능한 생산장비들이 개발됨에 따라 첫 의약품(Diclofenac)구강융해필름이 대량생산방법에 의해 생산되었습니다.

현재는 의약품을 단순히 구강용해필름에 의해 생산되는 것 뿐만 아니라, 필름용해속도 조절, 미세분말특수코팅 등에 의해 장용(Enteric coating)제품등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구강용해필름 제제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유럽의 일부 제약회사에서는 앞으로 약 25년 내에 정제(Tablet)시장의 약 20%를 대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강용해필름 제형의 개발 및 생산에 적극적인 회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명	제약회사
미국	Watson, Johnson&Johnson, Mylan, Pfizer, etc
유럽	Norvatis, Sanofi, Beierdorf, Bouty, etc
일본	Monosol, etc
인도	Cipla, Ankur, Panacea, etc
중국	KSD, Shanxhi, Fuhe, RFL, etc

#### ③ 당사 ODF(구강용해필름) 사업 현황

당사는 최근 독일 '옵티막스'(Optimags)사 첨단 설비를 도입, 시흥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발기부전 치료제인 타다라필(Tadalafil) ODF, B형간염 치료제인 엔테카비르(Enteca vir) ODF를 출시하였고 정신분열증 치료제 아리피프라졸(Aripiprazole) ODF등의 품목을 출시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들 의약품은 모두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발기부전 치료제 '제대로필 ODF(타다라필)' 은 2015년 9월 출시된 주력제품으로 국내 4개 유명 제약사와 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여러국가와 계약 체결 및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보유특허인 '스타' 필름 제조기술을 활용, 기존 ODF 제품과는 차별화된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스타(S: Smooth, T: Thin, A: Advanced Stability, R:Refreshing Taste) 기술은 주약의 쓴맛을 효과적으로 차폐해 복용 시 이물감과 불쾌감이 거의 없고, 용해도가 낮은 주성분들을 균일하게 분산함으로써 탁월한 약효 균일성과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필름의 파손이나 변질을 최소화한 게 장점입니다.

당사는 차별화된 ODF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시장뿐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도 동시에 추진, 글로벌 제약사 발판을 마련 중에 있으며, 정신분열증 치료제 아리피프라졸(Aripip razole) ODF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5) 국내 관련제품 현황

신약(오리저널약)의 특허가 끝나면 이를 그대로 복제한 제네릭을 앞다퉈 만들어 내던 국 내 제약사들이 최근 기존 오리지널약에 자체 기술을 입힌 제품을 내놓으며 활로를 찾고 있 습니다. 국내 제약사들이 이런 '개량기술'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신약 개발보다 비용과 시간은 적게 드는 대신 성공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는 데는 10~15년의 기간과 수백억 ~ 수천억원이 들지만 한미약품 아모잘탄의 경우 개발기간 7년,개발비용 총 140억원으로 신약 개발 때보다 훨씬 적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었습니다.

#### (6) 조직도



조직도(공시용)

## 3. 주요 제품 등의 현황

(기준일: 2016년 06월 30일 ) (단위: 백만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구체적용도	주요상표등	매출액	비율
		정제	소화성궤양용제 외 7건	레미피드정 외	11,649	73.56%
	제품	캡슐	기타의 중추신경용제 외 1건	디멘토연질캡슐 외	1,863	11.77%
		기타	기타	기타	586	3.70%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제품 계		14,098	89.03%
기의점 제소 및 현대			상품	디나칸캡슐 외	1,384	8.74%
			상품 계		1,384	8.74%
			용역	임가공 외	353	2.23%
			용역 계		353	2.23%
	15,835	100.00%				

# 3-1.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 추이

(기준일: 2016년 06월 30일 ) (단위:원)

품 목	제16기 반기	제15기	제14기
레미피드정	103	103	103
씨엠지모사프리드정	103	103	103
아제탄정	176	176	176
디멘토연질캡슐	522	523	523
록소탄정	125	125	125
씨엠지세파클러캡슐	401	401	401
징코미란정80mg	116	116	116
아포낙정	188	188	188
레드로진정	137	137	137
아모르탄정 5/80mg	805	805	805

주1) 산출기준은 1999년부터 시행된 일반의약품의 표준소매가 폐지로 시장가격을 기재하였습니다.

주2) 가격은 각 1Tablet에 대한 보험약가 상한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3-2.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기준일: 2016년 06월 30일 ) (단위: 백만원)

사업부문	매입유형	품 목	구체적용도	제16기 반기	비고
		레바이피드	소화성궤양용제	430	_
		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해열, 진통, 소염제	361	_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	치과구강용제	77	_
OLOF	OITII ⊃	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	기타의 소화기관용제	116	_
의약품	원재료	로수바스타틴칼슘	순환기용제	196	
		은행엽엑스	기타의 순환계용약	474	-
		레보설피리드	기타의 소화기관용제	99	-
		기타원료	-	1,023	_
		2,776	_		

3-3. 주요 원재료등의 가격변동 추이

(기준일: 2016년 06월 30일 ) (단위: 원)

품목	제16기 반기	제15기	제14기
레바이피드	120,737	126,816	143,406
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255,000	261,951	271,367
로수바스타틴칼슘	3,706,844	3,985,259	4,215,574
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	514,444	530,000	558,521
은행엽엑스	330,000	145,679	144,167

## 4.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4-1.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1) 생산능력

(기준일: 2016년 06월 30일 ) (단위: 천정)

사업부문	제조소	품목	제16기 반기	제15기	제14기
제약	시화공장	정제/캡슐제	182,532	372,000	360,000

- (2) 산출근거 등
- ① 산출기준
- 1) 수량단위는 정제→ 정, 연고제→ Kg
- ② 산출방법

(기준일: 2016년 06월 30일 ) (단위: 천정,일)

품목	구분	산출근거
	1일 생산량	1,484
저제/캐스제	월평균 근무일수	21
정제/캡슐제	반기기준 생산능력	182,532
	연간 생산능력	365,064

- ③ 평균가동시간: 1일 8시간 작업 및 월 21일 작업
- (3) 생산실적 및 가동률

## ① 생산실적

(기준일: 2016년 06월 30일 )

사업부문	제조소	품목	제16기 반기	제15기	제14기
제약	시화공장	정제/캡슐제	204,380	332,537	337,451

(단위 : 천정)

(단위 : 천정,%)

## ② 가동률

(기준일: 2016년 06월 30일 )

제조소	품목 생산능력		생산실적	전체 가동비율
시화공장	정제/캡슐제	182,532	204,380	112.0 %

주1) 전체 가동비율의 산출식은 생산수량 기준으로 생산실적/생산능력

## 4-2. 생산설비의 현황 등

## (1) 생산설비 관련 현황

(기준일 : 2016년 06월 30일) (단위 : 천원)

과목	기초장부금액	개별취득	대체액	감가상각비	당기장부금액
토지	2,709,384	_	_	0	2,709,384
건물	9,265,198	_	_	(129,702)	9, 135, 495
구축물	48,457	_	_	(1,321)	47,136
기계장치	4,369,122	15,700	_	(515,752)	3,869,070
차량운반구	12,825	9,483	(1)	(1,695)	20,611
공구와기구	720,623	88,199	_	(99, 191)	709,631
비품	319,660	22,082	_	(61,930)	279,812
시설장치	377,199	10,264	_	(42,759)	344,703
건설중인자산	_	22,000	_	_	22,000
합계	17,822,468	167,728	(1)	(852,350)	17,137,844

주) 기재된 내용은 K-IFRS 연결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2) 설비의 신설·매입 계획 등

### ■ 생산설비시설 투자 내용

구 분	투자 내용
예상 투자 금액	약 450억원 추가 지출 예정 (총 투자 예정 금액 약 450억원)
투자 기간	2018년 상반기까지 투자 완료 예정

구분	투자 내용
투자 목적	GMP 선진화제도 도입에 따른 국제기준에 적합한 신공장 신축

주) 생산설비 증설을 위한 세부적인 공장 부지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5. 매출실적에 관한 사항

(1) 매출실적

(기준일: 2016년 06월 30일 ) (단위: 백만원)

구분	품목	제16기 반기	제15기	제14기
	정제	11,649	15,240	16,730
111.4	캡슐제	1,863	3,274	3,325
내수	기타	1,628	3,963	2,389
	임가공 외	353	4,455	154
내=	는 계	15,493	26,932	22,598
수출	정제 외	342	110	154
수출 계		342	110	154
합계		15,835	27,042	22,752

## 6.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 (1) 판매조직

영업은 서울영업소를 비롯하여 전국의 대도시에 9개지점을 두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도매상 등 다양한 루트의 영업조직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2) 판매경로

유통별		판매경로	
	도매	회사 → 도매상 → 약국 → 소비자	
도·소매유통 	소매	회사 → 약국 → 소비자	
H OLOLO	의원	회사 → 의원 → 소비자	
병・의원유통	종합병원	회사 → 도매상 → 병원 → 소비자	

## (3) 판매방법 및 조건

의약품 도매상 및 병원, 약국의 주문에 의한 현금,카드,어음 및 외상판매

#### 7. 수주상황

- 당사는 별도의 수주없이 시장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8. 시장위험과 시장관리

#### (1) 외환위험

당사의 경영진은 기능통화에 대한 환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과 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환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부채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될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환위험 노출에 대한 최대 환손실 규모가 위험허용범위인 1억원 이내가 되도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중요한 외화금융자산 및 외화금융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USD)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38,201.67	6,212.74
외상매출금	_	_
부채:		
외상매입금	_	_

#### (2) 이자율위험

당사는 시장금리 변동으로 인한 재무상태표 항목의 가치변동(공정가치) 위험 또는 투자위험에서 비롯한 투자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비용의 현금흐름의 변동 등의 이자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이자율 변동위험은 주로 이자수취자산에의 투자, 예금 및 변동금리부 차입금에서 비롯됩니다. 당사는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금융비용의 위험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

#### 9. 파생상품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10.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1) 항암치료제 국내 판권대행계약

당사는 (주)천지산이 개발한 항암 치료제인 테트라스의 판권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계약 상대방	(주)천지산
계약 체결일	2006년 06월 14일
주요계약내용	① 테트라스를 회사에서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제조기술 지원 ② 제조, 판매에 대한 국내독점권 부여 ③ 임상시험 등 시판전 필요한 개발비는 주식회사 천지산이 부담 ④ 판매기간: 국내시판 허가일 ~ 2021년 12월 31일 ⑤ 국내 판매 순매출액의 15% 로열티 지급 ⑥ 총계약금 80억원 (임상 및 시판 허가 과정에 따라 분할 지급)

(2) 항암치료제 테트라스 아시아지역 판권대행계약

당사는 (주)천지산이 개발한 항암 치료제인 테트라스의 아시아판권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계약 상대방	(주)천지산
계약 체결일	2007년 03월 06일
주요계약내용	① 테트라스 아시아지역(중국,일본등) 내 제조, 판매권리 ② 대한민국과 아시아지역을 제외한 여타 해외지역에 대한 판권 및 공동사업에 대해 추가 협의 등을 통해 추진 ③ 임상시험, 판매승인, 제조, 판매 등 전 과정에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상호 포괄적으로 협력 ④ 계약기간: 2007년 03월 06일 ~ 2031년 12월 31일

주) 위 아시아 지역 판권계약과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테트라스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에서 임상시험과 시판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상당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임상의 진행 여부 결정은 현재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 11. 연구개발활동

(1) 연구개발 담당조직

조직형태 및 명칭		담당업무
제약사업부문		제제연구 및 개선, 분석 등 제제연구 및 개선, 제제분석, 의동시험자료정리 등 신제품 및 기존제품 (변경)허가/신고, 대관보고 등
	신약개발사업부	신약에 대한 합성, 특성분석, 디자인 연구 등

# (2) 연구개발비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과목		제16기 반기	제15기	제14기	비고
	무형자산 (개발비증가분)	1,486	3,464	3,576	_
회계처리	판매비와 관리비	162	2,314	558	_
	제조경비	117	231	173	
연구개발비용 계		1,765	6,009	4,308	_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 당기매출액× 100]		11.15%	22.22%	18.93%	-

(단위:백만원)

# (3) 연구개발 실적

구분	제품명	허가년도	주성분	효능
	아마딘정	2011	메트포르민염산염/글리메피리드	당뇨병용제
	자니딘정	2013	레르카르핀염산염	혈압강하제
	아모르탄정	2013	암로디핀베실산염 발사르탄	혈압강하제
	이브본정	2013	이반트론산나트륨일수화물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로피렐정	2013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동맥경화용제
	알지트리손주1g	2013	세프트리악손나트륨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아세라노세미정	2013	아세트아미노펜 트라마돌염산염	해열진통소염제
	아세라노정	2013	아세트아미노펜 트라마돌염산염	해열진통소염제
	씨엠지로자탄정	2013	로사르탄칼슘	혈압강하제
	아로토정	2013	아토르바스타틴칼슘	동맥경화용제
	씨엠지로수바스타틴정	2014	로수바스타틴칼슘	동맥경화용제
	알지트리손주2g	2014	세프트리악손나트륨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씨엠지암로디핀정5mg	2014	암로디핀베실산염	혈압강하제
	글리피딘정2mg	2014	글리메피리드	당뇨병용제
	탐신서방정0.2mg	2014	탐스로신염산염	기타의 비뇨생신기관 및 항문용약
	텔미로탄정	2014	텔미사르탄	혈압강하제
	씨엠쿨산	2014	폴리에틸렌글리콜외 5종	X선조영제
	씨엠지멜록시캄캡슐7.5mg	2014	멜록시캄	해열진통소염제
	아제탄정	2014	아젤라스틴염산염	기타의 알레르기용약
	플렉스캡슐	2014	플루코나졸	기타의 화학요법제

구분	제품명	허가년도	주성분	효능
ETC	씨엠지펜톡시필린서방정400mg	2014	펜톡시필린	기타의 순환계용약
	에소넬정	2014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이수화물	소화성궤양용제
	텔미로탄플러스정	2014	텔미사르탄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혈압강하제
	씨엠타시드에이치알정600mg	2014	티옥트산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씨코나졸정	2014	이트라코나졸고체분산체	기타의 화학요법제
	가바렉스캡슐300mg	2014	가바펜틴	항전간제
	탈리트린정	2014	탈니플루메이트	해열.진통.소염제
	씨엠라이트산	2014	피코설페이트나트륨수화물 외 2종	x선조영제
	씨엠프로정1mg	2014	피나스테리드	모발용제(발모, 탈모, 염모, 양모제)
	씨엠피나정5mg	2014	피나스테리드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씨엠지피타바스타틴정2mg	2014	피타바스타틴	동맥경화용제
	플렉스캡슐150mg	2015	플루코나졸	기타의 화학요법제
	씨콕스캡슐200mg	2015	세레콕시브	해열진통소염제
	씨엠케어정5mg, 10mg	2015	솔리페나신숙신산염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히아루주사	2015	히알루론산나트륨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히아루플러스주	2015	히알루론산나트륨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유티린정60mg	2015	애엽95%에탄올연조엑스(20→1)	소화성궤양용제
	칼리노겐정50단위	2015	칼리디노게나제	기타의 순환계용약
	씨엠지멜록시캄캡슐15mg	2015	멜록시캄	해열.진통.소염제
	제대로필구강용해필름10mg &20 mg	2015	타다라필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씨엔테구강용해필름0.5mg&1.0mg	2015	엔테카비르일수화물	간장질환용제
	제대로필정5밀리그램	2015	타다라필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슈도라민정	2013	슈도에페드린염산염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항히스타민제
	씨엠지아스피린장용정100mg	2014	아스피린	기타의 순환계용약
	씨엠지알마게이트정	2014	알마게이트	제산제
	베스콜에프캡슐	2014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외 5종	해열진통소염제
отс	프리센연질캡슐	2014	나프록센	해열진통소염제
	알레톡정120mg	2014	펙소페나딘염산염	항히스타민제
	씨엠지프리미움크림	2014	리도카인	국소마취제
	에버트린액1g	2014	시트룰린만산염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씨엠지은교산캡슐	2014	은교산	해열.진통.소염제

# (4) 제품 개발 현황

제품명	허가년도	주성분	효능	비고
씨코나졸정	2014	이트라코나졸	기타의 화학요법제	2014년 11월 허가완료
씨엠지펜톡시필린서방정400mg	2014	펜톡시필린	기타의 순환계용약	2014년 10월 허가완료
에소넬정	2014	에스오메프라졸	소화성궤양용제	2014년 10월 허가완료 20mg, 40mg
텔미로탄플러스정	2014	텔미사르탄 히드로클로티아지드	혈압강하제	2014년 10월 허가완료 40/12.5mg, 80/12.5mg
탈리트린정	2014	탈니플루메이트	해열진통소염제	2014년 12월 허가완료
가바렉스캡슐300mg	2014	가바펜틴	항전간제	2014년 12월 허가완료

제품명	허가년도	주성분	효능	비고
씨엠타시드에이치알정600mg	2014	티옥트산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2014년 10월 허가완료
알레톡정120mg	2014	펙소페나딘	항히스타민제	2014년 11월 허가완료
에버트린액1g	2014	말레산시트룰린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2014년 11월 허가완료
씨엠지피타바스타틴정2mg	2014	피타바스타틴	동맥경화용제	2014년 12월 허가완료
씨엠프로정	2014	피나스테리드	모발용제	2014년 12월 허가완료
씨엠피나정	2014	피나스테리드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2014년 12월 허가완료
씨엠라이트산	2014	피코설페이트나트륨수화물 외 2종	해열진통소염제	2014년 12월 허가완료
제대로필ODF 10, 20 mg	2015	타다라필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2015년 허가완료
제대로필ODF 5mg	2016 예정	타다라필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허가준비중
씨엔테ODF	2015	엔테카비르	간장질환용제	2015년 허가완료
유티린정	2015	애엽95%에탄올엑스	소화성궤양용제	2015년 허가완료
칼리노겐정	2015	칼리디노게나제	기타의순환계용약	2015년 허가완료
씨콕스캡슐	2015	세레콕시브	해열진통소염제	2015년 02월 허가완료
플렉스캡슐150mg	2015	플루코나졸	기타의 화학요법제	2015년 02월 허가완료
씨엠지멜록시캄캡슐15mg	2015	멜록시캄	해열진통소염제	2015년 허가완료
아리프졸ODF	2016 예정	아리피프라졸	항정신성의약품	허가준비중
칼시트리올연질캡슐	2016 예정	칼시트리올	비타민 A 및 D제	허가준비중
데스모프레신ODF	2016 예정	데스모프레신 아세테이트	야뇨증	제제연구중
실데나필 ODF	2016 예정	실데나필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제제연구중
씨엠지암로디핀5mg	2016 예정	암로디핀베실산염	본태성 고혈압	허가진행중
아로토정	2016 예정	아토르바스타틴삼수화물	고지혈증	허가진행중
아모르탄정	2017 예정	암로디핀베실산염+발사르탄	본태성 고혈압	제제연구중
씨엠지라베프라졸정	2017 예정	라베프라졸	역류성 식도염	제제연구중
에소넬정	2017 예정	에스오메프라졸	역류성 식도염	제제연구중

# 12.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1) 외부자금조달 요약표(국내)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백만원)

조 달 원 천	기초잔액	신규조달	상환등감소	기말잔액	비고
은행	_	-	_	_	_
보험회사	_	1	1	1	_
종합금융회사	-	-	1	1	_
여신전문금융회사	-	-	1	1	_
상호저축은행	_	-	_	_	_
기타금융기관	_	-	_	_	_
금융기관 합계	_	-	_	_	_
회사채(공모)	-	_	_	_	-
회사채(사모)	_	ı			_
유상증자(공모)	_	-	_	_	_
유상증자(사모)					_
자산유동화(공모)	_	_	_	_	_

조 달 원 천	기초잔액	신규조달	상환등감소	기말잔액	비고
자산유동화(사모)	I		ı		-
기타	I		ı		-
자본시장 합계	I		ı		-
주주・임원・계열회사차입금	I		ı		I
기타	I		ı	1	I
총계	_	_	_	_	_

(참고) 당분기 중 회사채 총발행액	공모:	_	_
(삼고) 영군기 중 회사재 공활영학	사모 :	_	_

.

## (2) 외부자금조달 요약표(해외)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백만원)

조달원천	기초잔액	신규조달	상환등감소	기말잔액	비고
금융기관	-	_	_	ı	1
해외증권(회사채)		-	_	I	1
해외증권(주식등)	_	_	_	_	_
자산유동화		_	_	-	_
기타	_	_	_	_	_
총계	_	_	_	_	_

# 13. 최근 3년간 신용등급

- 해당사항 없습니다.

# 14. 기타 중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1. 요약재무정보

# (1) 요약 연결재무현황

※ 제16기 반기 연결재무재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으로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입니다.

※ 제15기, 제14기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으로 작성되어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재무제표입니다.

(기준일: 2016.06.30 ) (단위: 백만원)

구분	제16기 반기	제15기	제14기
[유동자산]	26,335	26,272	28,301
당좌자산	19,656	20,816	23,388
재고자산	6,679	5,456	4,913
[비유동자산]	31,160	30,261	29,767
투자자산	200	200	200
유형자산	17,138	17,822	18,834
무형자산	13,252	11,766	10,296
기타비유동자산	570	473	437
자산총계	57,495	56,533	58,068
[유동부채]	8,378	8,850	8,719
[비유동부채]	890	876	346
부채총계	9,268	9,726	9,066
[자본금]	44,354	44,149	43,313
[자본잉여금]	59,414	58,464	57,682
[자본조정]	182	608	40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1	-1
[이익잉여금]	-55,721	-56,414	-52,394
자본총계	48,228	46,807	49,003
구분	제16기 반기	제15기	제14기
[매출액]	15,835	27,042	22,753
[영업이익(영업손실)]	443	-2,572	442
[계속영업당기순이익(손실)]	536	-3,650	158

구분	제16기 반기	제15기	제14기
[중단영업당기순이익(손실)]	_	_	_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536	-3,650	158
지배기업소유주지분 순이익	536	-3,650	158
비지배지분 순이익	_	_	_
총포괄손익	693	-4,020	-192
기본주당순이익	6원	-42원	2원
희석주당순이익	6원	-42원	2원

주1) 상기 요약 연결재무정보는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나. 요약재무현황

※ 제16기 반기 별도재무재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으로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입니다.

※ 제15기, 제14기 별도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으로 작성되어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재무제표입니다.

(기준일: 2016.06.30 ) (단위: 백만원)

구분	제16기 반기	제15기	제14기
[유동자산]	26,394	26,331	28,360
당좌자산	19,715	20,875	23,447
재고자산	6,679	5,456	4,913
[비유동자산]	31,160	30,261	29,767
투자자산	200	200	200
유형자산	17,138	17,822	18,834
무형자산	13,252	11,766	10,296
기타비유동자산	570	473	437
자산총계	57,554	56,592	58,127
[유동부채]	8,371	8,843	8,714
[비유동부채]	890	876	346
부채총계	9,261	9,719	9,060
[자본금]	44,354	44,149	43,313
[자본잉여금]	59,414	58,464	57,682
[자본조정]	181	608	402
[기타보괄손익누계액]	_	_	_
[이익잉여금]	-55,656	-56,348	-52,330

구분	제16기 반기	제15기	제14기
자본총계	48,293	46,873	49,067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 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원가법 원가법		원가법
구분	제16기 반기	제15기	제14기
매출액	15,835	27,042	22,753
영업이익(영업손실)	443	-2,571	446
계속영업당기순이익(손실)	536	-3,649	172
중단영업당기순이익(손실)	_	_	-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536	-3,649	172
총포괄손익	693	-4,018	-179
기본주당순이익	6원	-42원	2원
희석주당순이익	6원	-42원	2원

주1) 상기 요약재무정보는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2. 연결재무제표

## 연결 재무상태표

제 16 기 반기말 2016.06.30 현재 제 15 기말 2015.12.31 현재 제 14 기말 2014.12.31 현재

(단위:원)

	제 16 기 반기말	제 15 기말	제 14 기말
자산			
유동자산	26,335,245,602	26,271,614,127	28,300,940,764
현금및현금성자산	2,160,895,626	2,566,166,683	8,827,046,485
기타금융자산	5,299,227,708	5,294,930,381	298,579,033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11,671,623,902	12,358,522,860	13,483,608,670
재고자산	6,679,236,502	5,455,617,237	4,913,102,937
기타유동자산	524,261,864	596,376,966	778,603,639
매각예정비유동자산	0	0	0
비유동자산	31,160,055,416	30,261,206,582	29,767,384,886

	제 16 기 반기말	제 15 기말	제 14 기말
관계기업투자	0	0	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770,028,292	672,583,292	637,248,764
유형자산	17,137,843,982	17,822,468,470	18,833,775,124
무형자산	13,252,183,142	11,766,154,820	10,296,360,998
기타비유동자산	0	0	0
자산총계	57,495,301,018	56,532,820,709	58,068,325,650
부채			
유동부채	8,377,503,736	8,849,993,905	8,719,201,980
매입채무및기타채무	7,228,250,017	7,937,122,988	6,792,617,260
단기금융부채	6,273,320	6,273,320	1,543,497,514
기타유동부채	1,142,980,399	906,597,597	383,087,206
유동성장기금융부채			
비유동부채	890,207,535	875,938,914	346,480,070
장기금융부채			
확정급여부채	626,431,698	651,349,019	346,480,070
기타비유동비금융부채	263,775,837	224,589,895	
부채총계	9,267,711,271	9,725,932,819	9,065,682,050
자본			
자본금	44,353,622,000	44,148,622,000	43,313,433,000
자본잉여금	59,413,765,032	58,464,138,461	57,681,858,387
자본조정	181,575,290	608,353,997	401,922,01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51,521)	(651,521)	(651,521)
이익잉여금(결손금)	(55,720,721,054)	(56,413,575,047)	(52,393,918,277)
자본총계	48,227,589,747	46,806,887,890	49,002,643,600
자본과부채총계	57,495,301,018	56,532,820,709	58,068,325,650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16 기 반기 2016.01.01 부터 2016.06.30 까지 제 15 기 반기 2015.01.01 부터 2015.06.30 까지 제 15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제 14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제 16 기 반기		제 15	제 15 기 반기		TII 14 71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제 15 기	제 14 기
수익(매출액)	8,292,918,159	15,835,051,227	6,535,356,696	12,564,649,611	27,041,894,373	22,752,583,609
매출원가	5,335,478,034	9,725,741,272	4,456,723,950	8,193,272,197	17,237,814,081	14,318,048,120
매출총이익	2,957,440,125	6,109,309,955	2,078,632,746	4,371,377,414	9,804,080,292	8,434,535,489
판애관리비	2,678,163,033	5,665,888,787	2,709,679,893	4,861,632,649	12,376,248,560	7,992,213,330
영업이익(손실)	279,277,092	443,421,168	(631,047,147)	(490,255,235)	(2,572,168,268)	442,322,159
기타이익	5,574,147	108,528,296	1,602,200	53,919,284	424,303,777	141,370,041
기타손실	11,129,148	94,593,226	86,350,233	94,241,680	1,532,057,895	540,023,447
금융수익	36,821,209	44,807,426	44,237,323	79,695,920	109,661,718	330,164,541
금융원가	23,859,752	24,857,919	32,963,249	65,161,887	79,830,155	215,794,44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86,683,548	477,305,745	(704,521,106)	(516,043,598)	(3,650,090,823)	158,038,851
법인세비용	(58,900,652)	(58,900,652)			0	
계속영업당기순이익(손실)	345,584,200	536,206,397	(704,521,106)	(516,043,598)	(3,650,090,823)	158,038,851
당기순이익(손실)	345,584,200	536,206,397	(704,521,106)	(516,043,598)	(3,650,090,823)	158,038,851
보험수리적손익	156,647,596	156,647,596	9,684,847	37,495,553	(369,565,947)	(350,237,541)
총포괄손익	502,231,796	692,853,993	(694,836,259)	(478,548,045)	(4,019,656,770)	(192,198,690)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4	6	(8)	(6)	(42)	2
희석주당이익(손실)	4	6	(8)	(6)	(42)	2

#### 연결 자본변동표

제 16 기 반기 2016.01.01 부터 2016.06.30 까지 제 15 기 반기 2015.01.01 부터 2015.06.30 까지 제 15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제 14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자본						
				지배기업의 소	유주에게 귀속되	는 자본		
		자본금	연결자본잉여금	연결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연결이익잉여금 (결손금)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자본 합계
2014.01.01 (2	기초자본)	43,313,433,000	57,681,858,387	204,361,115	(651,521)	(52,201,719,587)	48,997,281,394	43,313,433,000
	지분의 발행							
	주식선택권			197,560,896			197,560,896	197,560,896
	신주인수권행사							
자본의 변동	보험수리적손익					(350,237,541)	(350,237,541)	(350,237,541)
	당기순이익					158,038,851	158,038,851	158,038,851
	주식발행초과금							
	신주인수권대가							
2014.12.31 (2	기말자본)	43,313,433,000	57,681,858,387	401,922,011	(651,521)	(52,393,918,277)	49,002,643,600	49,002,643,600
2015.01.01 (2	기초자본)	43,313,433,000	57,681,858,387	401,922,011	(651,521)	(52,393,918,277)	49,002,643,600	49,002,643,600
	지분의 발행							
	주식선택권			206,431,986			206,431,986	206,431,986
	신주인수권행사	835,189,000	782,280,074					1,617,469,074
자본의 변동	보험수리적손익					(369,565,947)	(369,565,947)	(369,565,947)

		자본						
				지배기업의 소연	유주에게 귀속되	는 자본		
		자본금	연결자본잉여금	연결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연결이익잉여금 (결손금)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자본 합계
	당기순이익					(3,650,090,823)	(3,650,090,823)	(3,650,090,823)
	주식발행초과금							
	신주인수권대가							
2015.12.31 (2	기말자본)	44,148,622,000	58,464,138,461	608,353,997	(651,521)	(56,413,575,047)	46,806,887,890	46,806,887,890
2015.01.01 (2	기초자본)	43,313,433,000	57,681,858,387	401,922,011	(651,521)	(52,393,918,277)	49,002,643,600	49,002,643,600
	지분의 발행							
	주식선택권			95,018,295			95,018,295	95,018,295
	신주인수권행사							
자본의 변동	보험수리적손익					37,495,553	37,495,553	37,495,553
	당기순이익					(516,043,598)	(516,043,598)	(516,043,598)
	주식발행초과금							
	신주인수권대가							
2015.06.30 (2	기말자본)	43,313,433,000	57,681,858,387	496,940,306	(651,521)	(52,872,466,322)	48,619,113,850	48,619,113,850
2016.01.01 (2	기초자본)	44,148,622,000	58,464,138,461	608,353,997	(651,521)	(56,413,575,047)	46,806,887,890	46,806,887,890
	지분의 발행	205,000,000	949,626,571	(488,430,171)			666,196,400	666,196,400
	주식선택권			61,651,464			61,651,464	61,651,464
	신주인수권행사							
자본의 변동	보험수리적손익					156,647,596	156,647,596	156,647,596
	당기순이익					536,206,397	536,206,397	536,206,397
	주식발행초과금		0				0	0
	신주인수권대가		0				0	0
2016.06.30 (2	기말자본)	44,353,622,000	59,413,765,032	181,575,290	(651,521)	(55,720,721,054)	48,227,589,747	48,227,589,747

### 연결 현금흐름표

제 16 기 반기 2016.01.01 부터 2016.06.30 까지 제 15 기 반기 2015.01.01 부터 2015.06.30 까지 제 15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제 14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제 16 기 반기	제 15 기 반기	제 15 기	제 14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889,217,942	(164,453,669)	2,410,204,602	724,893,280
당기순이익(손실)	536,206,397	(516,043,598)	(3,650,090,823)	158,038,851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308,741,132	276,728,175	5,922,487,980	216,501,089
이자비용		65,161,887	79,830,155	122,839,915
이자수익	(36,734,010)	(79,695,920)	(109,661,718)	(270,164,541)
외화환산손실	163,610	1,404,697	1,404,697	5,717,792
감가상각비	852,350,968	859,761,961	1,685,740,077	1,391,412,210
퇴직급여	292,473,770	259,434,981	518,869,962	326,387,478
대손상각비	228,132,755	250,063,431	1,261,933,670	382,047,338
무형자산상각비	190,974,572	61,179,522	204,306,347	73,432,625
주식보상비용	76,369,461	95,018,295	206,431,986	197,560,896

	제 16 기 반기	제 15 기 반기	제 15 기	제 14 기
재고자산폐기손실	109,816,202	89,549,053	190,043,695	35,494,929
재고자산평가손실	37,816,166	4,211,624	3,796,633	
유형자산처분손실				819,557
무형자산손상차손	62,891,869		1,286,911,673	
기타의대손상각비	11,111,490			
유형자산처분이익	(2,544,454)			
무형자산처분이익	(42,000,000)			
법인세비용	(58,900,652)			
지분법손실				92,954,528
외화환산이익		(2,139)	(277,956)	(8,343,962)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환입				(60,000,000)
대손충당금 환입				(2,761,961)
반품보증충당부채	39,185,942		224,589,895	
매출채권의감소(증가)	500,594,624	(995,901,892)	(134,064,451)	(2,787,657,779)
미수금의감소(증가)	(52,939,911)	(8,536,908)	(2,783,409)	(234,892)
선급금의감소(증가)	32,348,001	241,899,336	180,329,234	(376,635,407)
선급비용의감소(증가)	24,744,571	(17,489,634)	(22,192,231)	(45,692,267)
기타유동금융자산의 감소(증가)	3,188,800			75,751,200
재고자산의감소(증가)	(1,371,251,633)	379,626,358	(736,354,628)	(329,880,167)
매입채무의증가(감소)	403,517,192	(982,437,455)	124,592,059	807,653,545
미지급금의증가(감소)	(959,410,853)	177,213,106	779,497,839	609,679,190
선수금의증가(감소)	(25,315,128)	(9,320,840)	34,240,294	64,656,067
예수금의증가(감소)	311,697,930	(15,705,065)	484,270,097	77,960,770
미지급비용의증가(감소)	(152,979,310)	(73,613,453)	239,601,020	74,402,043
예수보증금의증가(감소)	(50,000,000)	5,000,000	5,000,000	41,277,920
기타유동비금융부채의 증가(감소)			0	
사외적립자산의감소(증가)	382,766,730	90,918,335	(373,207,555)	4,887,828
퇴직금의 승계				C
퇴직금의지급	(499,327,570)	(121,011,105)	(210,359,405)	(287,063,766)
반품보증비용				
이연법인세자산의 감소(증가)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의 감소(증가)				
이자수취	32,436,683	44,147,915	113,310,370	264,445,260
이자지급		406,849	407,405	C
법인세납부(환급)	11,833,730	30,306,990	24,089,670	85,908,080
투자활동현금흐름	(1,960,521,789)	(4,930,652,440)	(8,670,779,793)	(13,611,108,626)
금융상품의취득				(100,000,000)
금융상품의처분				120,000,000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2,988,328,768)	(5,000,000,000)	
유형자산의취득	(167,727,480)	(112,079,168)	(674,433,423)	(9,420,914,983)
보증금의 감소	3,955,000	3,746,212		

	제 16 기 반기	제 15 기 반기	제 15 기	제 14 기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101,400,000)			
보증금의 증가		(5,000,000)		
무형자산의취득	(1,809,894,763)	(1,828,990,716)	(2,961,011,842)	(4,013,575,351)
기타비유동자산의취득			(45,000,000)	(196,618,292)
기타비유동자산의처분			9,665,472	0
유형자산의 처분	2,545,454			
무형자산의 처분	112,000,000			
재무활동현금흐름	666,196,400	552,130	822,130	5,451,190
주식의 발행	666,196,400			
금융부채의차입		100,552,130	822,130	5,451,190
금융부채의상환		(100,000,000)	0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163,610)	(1,402,558)	(1,126,741)	2,626,170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405,271,057)	(5,095,956,537)	(6,260,879,802)	(12,878,137,986)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2,566,166,683	8,827,046,485	8,827,046,485	21,705,184,471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2,160,895,626	3,731,089,948	2,566,166,683	8,827,046,485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주)CMG제약)은 2001년 8월 피혁 및 관련제품의 제조, 가공 그리고 판매를 목적으로 신설되어 피혁제품 가공 및 생산을 하였으나 2006년 경영권이 양도된 이후 기존의 사업을 중단하고 의약품 개발, 제조, 판매회사로 업종을 변경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피엠케이에서 주식회사 스카이뉴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03월 29일 이사회 결의로 주식회사 CMG제약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34-4에 공장을,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6길 1 4(청담동)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당반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주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주식수(주)	지 분 율
(주)차바이오텍	23,211,676	26.17%
기타소액주주	65,495,568	73.83%
합계	88,707,244	100.00%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배회사 소유 주식수(주)	지분율(%)
(주)스카이뉴홀딩스(*1)	50,000	100.00%
SGN(유)(*2)	_	100.00%

- (\*1) (주)스카이뉴홀딩스는 경영컨설팅업 및 엠엔에이컨설팅업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1년 9월 26일 설립되었습니다.
- (\*2) SGN(유)은 해외종속기업으로 2009년 전액 손상으로 장부가액이 제거되었으며, 이후 실질적인 폐업상태입니다.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의 주요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회사명	자산	부채	자기자본	매출액	당기순손익
(주)스카이뉴홀딩스	80,733,969	115,166,280	(34,432,311)	_	_
SGN(유)	_	_	_	_	_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 (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실체의 2016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반기연결재무 제표는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요약반 기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간종료일인 2016년 6월 30일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① 당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
-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중요성에 따라 공시항목의 생략, 추가, 통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 또한,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의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였으며, 기타 주석공시 순서 등에 대한 일부 규정을 추가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38호 '무형자산' 개정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소비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판매수량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제한된 상황에서 무형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 음을 명확히 함.

②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 였으며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12월 공표된 금융상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은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을 규정한 기준서 제1039호를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을 사업모형과 상품의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할 것을 규정하고 해당 분류에 따른 손익인식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상모형은 기대신용손실과 그 변동을 인식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위험회피회계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위험관리와 일관되도록 부분적인 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고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손익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적 조기적용도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개정 기준서적용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2월 공표한 수익인식에 대한 새로운 기준은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익인식 기준인 기준서 제1018호와 건설계약 수익인식 기준인 제1011호 및 관련 해석서를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현행 수익인식 기준의 위험과 보상 이전 모형을 대체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수익을 인식한다는 원칙에 기초하여 5단계의 과정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현행 수익인식과 주요한 차이로 재화나 용역이 묶음으로 제공될 때 구분되는 수행의무 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변동대가 인식에 대한 제약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익을 일정 기간에 걸쳐 인식하기 위한 조건과 증가된 공시사항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

연도부터 적용되고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개정 기준서 적용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2) 회계정책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에서 설명하는 제·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연간 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 및 보고되는 자산과 부채및 이익과 비용의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 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 3. 재무위험 관리

#### (1) 재무위험 관리요소

연결실체의 위험관리정책은 연결실체가 직면한 위험을 식별 및 분석하고, 적절한 위험 한계치 및 통제를 설정하고, 위험이 한계치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위험관리정책과 시스템은 시장상황과 연결실체의 활동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훈련 및 관리기준, 절차를 통해 모든 종업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이해할 수 있는 엄격하고 구조적인 통제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이사회는 경영진이 연결실체의 위험관리정책 및 절차의 준수여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감독하고, 연결실체의 위험관리체계가 적절한지 검토합니다.

재무위험관리의 대상이 되는 연결실체의 금융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매도가능금 융자산,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부채는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시장위험

## ① 외환위험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기능통화에 대한 환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과 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환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부채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될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환위험 노출에 대한 최대 환손실 규모가 위험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의 중요한 외화금융자산 및 외화금융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USD)

구분	당반기	전기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38,201.67	6,212.7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외화에 대한 원화 환율 10% 변동 시 환율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ח⊔	당	<b></b>	전	기
구분	10% 상승시	10% 하락시	10% 상승시	10%하락시
USD	3,252,490	(3,252,490)	728,133	(728, 133)

#### ② 이자율위험

연결실체는 시장금리 변동으로 인한 재무상태표 항목의 가치변동(공정가치) 위험 또는 투자위험에서 비롯한 투자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비용의 현금

흐름의 변동 등의 이자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실체의 이자율 변동위험은 주로 이자수취자산에의 투자, 예금 및 변동금리부 차입금에서 비롯됩니다. 연결실체는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금융비용의 위험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0.5% 변동 시 이자율 변동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당빈	반기	전반기	
T C	0.5% 상승시	0.5% 하락시	0.5% 상승시	0.5% 하락시
이자비용	_	_	_	-
이자수익	12,397,260	(12,397,260)	28,166,177	(28,166,177)

####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 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을 관리하 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거래처 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 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습니 다.

연결실체의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은 주로 각 고객별 특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고객이 영업하고 있는 산업 및 지역의 파산위험 등의 고객분포는 신용위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결실체는 표준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이전에 모든 신규 고객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용도를 검토하도록 하는 신용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검토 시에는 외부적인 등급과은행의 평가 등을 고려합니다. 별도의 승인요청 없이 가능한 최고 구매한도가 개별고객별로 정해지며, 이한도는 분기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신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고객은 담보를 제공 시에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연결실체는 매출채권과 투자자산에 대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충당금은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손

상차손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 집합의 발생하였으나 아직 식별되지 않은 손 상으로 구성됩니다. 금융자산 집합의 충당금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회수에 대한 과거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각 지역별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 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내역	당반기	전기
국내	11,671,623,902	12,358,522,860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거래대상별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워)

내역	당반기	전기
도매업체	8,753,717,627	9,021,722,000
기타	2,917,906,275	3,336,800,860
합계	11,671,623,902	12,358,522,860

#### 3)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은 연결실체의 경영환경 또는 금융시장의 악화로 인해 연결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적기에 이행하지 못할 위험으로 정의합니다. 연결실체는 유동성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금흐름 및 유동성 계획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에 표시된 현금흐름은 원리금이며, 현재가치 할인을 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 (당반기)

구분	1년 미만	1년에서 5년 이하	합계
매입채무	5,247,613,517	_	5,247,613,517
기타채무	1,980,636,500	_	1,980,636,500
단기차입금	6,273,320	_	6,273,320
합계	7,234,523,337	_	7,234,523,337

(전기)

(단위 : 원)

구분	1년 미만	1년에서 5년 이하	합계
매입채무	4,844,096,325	_	4,844,096,325
기타채무	3,093,026,663	_	3,093,026,663
단기차입금	6,273,320	_	6,273,320
합계	7,943,396,308	_	7,943,396,308

## (2) 자본위험관리

연결실체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부채비율 및 순차입금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 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의 부채비율 및 순차입금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반기	전기
부채총계(A)	9,267,711,271	9,725,932,819
자본총계(B)	48,227,589,747	46,806,887,890
현금및현금성자산(C)	2,160,895,626	2,566,166,683
차입금(D)	6,273,320	6,273,320
부채비율(A ÷ B)	0.19	0.21

구분	당반기	전기
순차입금비율(D - C) ÷ B (*)	-	_

## (\*) 부의 금액으로서 그 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함

## (3) 공정가치 측정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71.0	당반	<u></u> ・ ・ ・ ・ ・ ・ ・ ・ ・ ・ ・ ・ ・ ・ ・ ・ ・ ・	전	기	
과목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지	다산				
현금및현금성자산	2,160,895,626	2,160,895,626	2,566,166,683	2,566,166,683	
기타금융자산	5,299,227,708	5,299,227,708	5,294,930,381	5,294,930,38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1,671,623,902	11,671,623,902	12,358,522,860	12,358,522,86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770,028,292	770,028,292	672,583,292	672,583,292	
합계	19,901,775,528	19,901,775,528	20,892,203,216	20,892,203,216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부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7,228,250,017	7,228,250,017	7,937,122,988	7,937,122,988	
단기금융부채	6,273,320	6,273,320	6,273,320	6,273,320	
합계	7,234,523,337	7,234,523,337	7,943,396,308	7,943,396,308	

### (4) 공정가치 서열체계

연결실체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 공시가격
- · 수준 2: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활용한 공정가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
- 수준 3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활용한 공정가치

연결실체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른 수준별 공시를 요하는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4. 현금및현금성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	전기
요구불예금	2,160,895,626	2,566,166,683

## 5. 범주별 금융상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금융자산

(단위 : 원)

71.0	당반	<u></u> ピン	전기	
과목 	대여금및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2,160,895,626		2,566,166,683	_
기타금융자산	5,299,227,708	_	5,294,930,381	_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1,671,623,902	_	12,358,522,860	_
기타비유동금융자산	468,628,292	301,400,000	472,583,292	200,000,000
소계	19,600,375,528	301,400,000	20,692,203,216	200,000,000

## 2) 금융부채

구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TE	당반기	전기
매입채무및기타채무	7,228,250,017	7,937,122,988
단기금융부채	6,273,320	6,273,320
소계	7,234,523,337	7,943,396,308

(2) 당반기 및 전반기의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반기)

(단위 : 원)

구분	금융	금융부채	
TE	대여금및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부채
이자수익	36,734,010	_	_
외화환산이익	-	-	_
외환차익	8,073,416	_	_
외화환산손실	163,610	_	_
외환차손	13,582,819	_	-
대손상각	239,244,245	_	_

# (전반기)

구분	금융	금융부채	
<b>十</b> 正	대여금및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부채
이자수익	79,695,920	_	_
외화환산이익	2,139	_	_
외환차익	2,869,177	_	_
이자비용	_	_	65,161,887
외화환산손실	1,404,697	_	_
외환차손	2,619,590	_	_
대손상각	250,063,431	_	_

## 6. 기타금융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 전기	
기타유동금융자산		
단기금융상품	5,000,000,000	5,000,000,000
단기대여금	303,990,000	303,990,000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25,800,000)	(25,800,000)
미수수익	21,053,168	16,755,841
미수수익대손충당금	(15,460)	(15,460)
합계	5,299,227,708	5,294,930,381
기타비유동금융자산		
장기금융상품	2,000,000	2,0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	301,400,000	200,000,000
보증금	466,628,292	470,583,292
합계	770,028,292	672,583,292

## (2) 매도가능금융자산

기타비유동금융자산 중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78 80744		TIELO	당반기		전기	
구분	보유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금액	취득원가	장부금액
수익증권	10좌	10.0%	100,000,000	_	100,000,000	_
(주)천지산	524,833주	6.73%	670,194,000	_	670,194,000	-
수익증권(*)	100좌	1.67%	300,000,000	300,000,000	200,000,000	200,000,000
출자금	14좌	-	1,400,000	1,400,000	-	_
합계			1,071,594,000	301,400,000	970,194,000	200,000,000

(\*) 수익증권은 IBKC-솔리더스 미래창조펀드 바이오세컨더리 계정조합에 대한 출자 지분증권으로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7.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	전기
매출채권	15,337,461,308	15,838,055,932
매출채권대손충당금	(3,728,691,139)	(3,500,558,384)
미수금	1,220,679,433	1,167,739,522
미수금대손충당금	(1,157,825,700)	(1,146,714,210)
합계	11,671,623,902	12,358,522,860

연결실체의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은 단기수취채권으로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원가로 측정하였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연령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당반기	전기	
만기미도래	12,298,112,364	12,643,595,906	
120일 이내	591,589,738	380,306,209	
180일 이내	164,095,759	289,498,938	
180일 초과	3,504,342,880	3,692,394,401	
합계	16,558,140,741	17,005,795,454	

연결실체는 개별적인 손상사건이 파악된 채권에 대해 개별 분석을 통한 회수가능금 액을 산정하여 산정된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손상사건이 개별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발생 후 8개월 이하까지의 채권은 정상채권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발생 후 8개월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의 연체기간에 따른 유사한 신용위험특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대손율을적용,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	전기	
기초금액	4,647,272,594	4,468,420,618	
대손상각비	239,244,245	1,261,933,670	
대손환입	_	-	
제각	_	(1,083,081,694)	
기말금액	4,886,516,839	4,647,272,594	

## 8. 재고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현황 및 평가충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	전기
상품	400,129,778	157,149,861
평가손실충당금	(3,699,806)	(1,198,611)
제품	4,700,319,608	3,318,108,740
평가손실충당금	(9,177,172)	(4,237,560)
재공품	858,149,681	1,164,328,734
원재료	675,941,890	694,199,683
평가손실충당금	(45,785,464)	(15,410,105)
부재료	103,357,987	142,676,495
합계	6,679,236,502	5,455,617,237

## 9. 기타유동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자산과 기타비유동자산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	전기
기타유동자산		
선급금	454,150,856	486,498,857
선급비용	67,134,438	91,879,009
당기법인세자산	2,976,570	14,810,300
기타의유동자산	_	3,188,800
합계	524,261,864	596,376,966
기타비유동자산		
장기선급금(*)	3,500,000,000	3,500,000,000
장기선급금대손충당금	(3,500,000,000)	(3,500,000,000)
합계	_	_

<sup>(\*)</sup> 장기선급금은 100% 대손설정하여 현재가치평가를 생략하였습니다.

## 10. 관계기업투자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성격	보유 주식수(주)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금액	
콘센트릭스솔라코리아	관계기업	5,000	20%	2,000,000,000	_	

# 11. 유형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	전기
토지	2,709,384,274	2,709,384,274
건물	10,239,918,350	10,239,918,350
감가상각누계액	(1,104,422,927)	(974,720,603)
구축물	66,078,179	66,078,179
감가상각누계액	(18,942,401)	(17,620,839)
기계장치	8,344,035,744	8,328,335,744
감가상각누계액	(4,474,965,169)	(3,959,213,313)
차량운반구	41,188,323	34,366,896
감가상각누계액	(20,577,401)	(21,542,146)
공구와기구	2,119,975,253	2,031,776,253
감가상각누계액	(1,410,343,808)	(1,311,153,266)
비품	1,234,988,707	1,212,906,270
감가상각누계액	(955,176,414)	(893,246,169)
시설장치	532,784,633	522,521,113
감가상각누계액	(188,081,361)	(145,322,273)
건설중인자산	22,000,000	_
합계	17,137,843,982	17,822,468,470

# (2) 당반기 중 유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목	기초장부금액	개별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당기장부금액
토지	2,709,384,274	-		1	2,709,384,274
건물	9,265,197,747	_	_	(129,702,324)	9,135,495,423
구축물	48,457,340	_	_	(1,321,562)	47,135,778
기계장치	4,369,122,431	15,700,000	_	(515,751,856)	3,869,070,575

과목	기초장부금액	개별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당기장부금액
차량운반구	12,824,750	9,482,523	(1,000)	(1,695,351)	20,610,922
공구와기구	720,622,987	88,199,000	_	(99,190,542)	709,631,445
비품	319,660,101	22,082,437	_	(61,930,245)	279,812,293
시설장치	377,198,840	10,263,520	_	(42,759,088)	344,703,272
건설중인자산	_	22,000,000	_	_	22,000,000
합계	17,822,468,470	167,727,480	(1,000)	(852,350,968)	17,137,843,982

# (3) 전반기 중 유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과목	기초장부금액	개별취득	대체액	감가상각비	당기장부금액
토지	2,709,384,274	_	_	_	2,709,384,274
건물	9,340,333,806	2,342,329	118,200,000	(128,802,620)	9,332,073,515
구축물	51,100,466	_		(1,321,562)	49,778,904
기계장치	4,993,105,748	41,188,205		(498,697,024)	4,535,596,929
차량운반구	16,689,062	_		(2,299,662)	14,389,400
공구와기구	782,492,694	52,830,000	_	(121,534,116)	713,788,578
비품	432,531,660	13,569,634	_	(72,305,528)	373,795,766
시설장치	353,904,596	1,000,000	_	(34,801,449)	320,103,147
건설중인자산	154,232,818	1,149,000	(118,200,000)	_	37,181,818
합계	18,833,775,124	112,079,168		(859,761,961)	18,086,092,331

# 12. 무형자산

##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반기	전기
특허권	70,079,635	34,011,992
산업재산권	140,618,366	123,794,205
소프트웨어	284,772,832	203,549,233
개발비	12,358,132,309	10,936,219,390
회원권	398,580,000	468,580,000
합계	13,252,183,142	11,766,154,820

## (2) 당반기 중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기초금액	개별취득	내부개발	처분	상각	손상	기말금액
특허권	34,011,992	44,443,047	_	1	(8,375,404)	1	70,079,635
산업재산권	123,794,205	50,620,240	-	1	(33,796,079)	1	140,618,366
소프트웨어	203,549,233	120,000,000	-	-	(38,776,401)	-	284,772,832
개발비	10,936,219,390	_	1,594,831,476	-	(110,026,688)	(62,891,869)	12,358,132,309
회원권	468,580,000	-	-	(70,000,000)	_	-	398,580,000
합계	11,766,154,820	215,063,287	1,594,831,476	(70,000,000)	(190,974,572)	(62,891,869)	13,252,183,142

## (3) 전반기 중 무형자산의 취득, 처분 내역 및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기초금액	개별취득	내부개발	상각	손상차손	기말금액
특허권	40,295,041	_	-	(7,555,320)	-	32,739,721
산업재산권	181,495,959	685,756	_	(29,485,201)	-	152,696,514
소프트웨어	29,677,833	197,000,000	_	(24, 139, 001)		202,538,832
개발비	9,503,232,165	_	1,631,304,960	-		11,134,537,125
회원권	541,660,000	_	-	-	-	541,660,000
합계	10,296,360,998	197,685,756	1,631,304,960	(61,179,522)	_	12,064,172,192

## 1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반기	전기
매입채무	5,247,613,517	4,844,096,325
미지급금	1,366,791,550	2,326,202,403
미지급비용	613,844,950	766,824,260
합계	7,228,250,017	7,937,122,988

## 14. 기타유동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	전기
기타유동부채		
선수금	150,552,122	175,867,250
예수금	908,428,277	596,730,347
예수보증금	84,000,000	134,000,000
소계	1,142,980,399	906,597,597
기타비유동부채		
반품충당부채	263,775,837	224,589,895

## 15. 퇴직급여채무

연결실체는 종업원의 퇴직시 임금수준과 근속년수에 따라 정해지는 퇴직급여를 종업 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확정급여제도로 분류됩니다. 퇴직급여제 도는 법적 요건 충족시 종업원에게 중간정산을 허용하며,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 을 위한 근속연수는 정산시점으로부터 새로이 기산됩니다.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당반기	전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857,461,078	2,248,882,959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231,029,380)	(1,597,533,940)
합계	626,431,698	651,349,019

## (2) 확정급여채무

당반기와 전반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확정급여채무 기초잔액	2,248,882,959	1,563,629,984
당기근무원가	288,675,903	255,729,722
이자원가	23,926,795	20,883,626
보험수리적손실(이익)	(204,697,009)	(47,982,860)
지급액	(499,327,570)	(121,011,105)
확정급여채무 기말잔액	1,857,461,078	1,671,249,367

## (3) 사외적립자산

당반기와 전반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	1,597,533,940	1,217,149,914
사용자의 기여금	_	_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20,128,928	17,178,367
보험수리적이익(손실)	(3,866,758)	(10,487,307)
급여지급액	(382,766,730)	(90,918,335)
기말	1,231,029,380	1,132,922,639

## (4) 보험수리적가정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반기	전기
기대임금상승률	4%	4%
할인율	2.52%	2.52%

## (5) 민감도 분석

당반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의적인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한 민감도분석은 다음과

### 같습니다.

			(단위 : 원)	
7 🖽	확정급여채무에 미치는 영향			
구 분 	가정의 변경	상승	하락	
기대임금상승률	1.00%	120,979,788	(108,225,722)	
할인율	1.00%	(108,615,208)	123,985,916	

#### 16.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 (1) 지급보증 및 기타 약정사항

당반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비씨카드와 한도 500백만원의 법인카드 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공탁보증 받은 금액은 68백만원입니다.

- (2) 당반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배서어음은 68,965,879원입니다.
- (3) 연결실체는 (주)천지산과 항암치료제 테트라스의 판권대행 계약을 2006년에 체결하였으며 총계약금액 80억원 중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35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동 금액은 장기선급금에 계상된 후 전액 손상처리되었습니다. 2차 중도금은 임상 2상 신청시 지급하며, 잔금은 국내시판 허가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추가적인 진행사항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 17. 자본금

지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이며, 발행한 주식의 수는 88,707,2 44주(액면 500원)입니다.

### 18. 주식선택권

(1) 연결실체가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회차	대상자	부여방법	부여일	부여주식	부여수량	최장만기	행사가액	가득조건
8회	임원(4인)	신주교부	2013.03.29	기명식 보통주	195,000	2019.03.28	1,631	3년 근무조건
8회	고문(3인)	신주교부	2013.03.29	기명식 보통주	55,000	2019.03.28	1,631	3년 근무조건
8회	직원(75인)	신주교부	2013.03.29	기명식 보통주	434,000	2019.03.28	1,631	3년 근무조건
		8회차 합기	<del></del> -		684,000			
9회	임원(2인)	신주교부	2014.03.31	기명식 보통주	105,000	2021.03.30	1,065	3년 근무조건
9회	고문(3인)	신주교부	2014.03.31	기명식 보통주	95,000	2021.03.30	1,065	3년 근무조건
9회	직원(3인)	신주교부	2014.03.31	기명식 보통주	90,000	2021.03.30	1,065	3년 근무조건
		9회차 합기	· 비		290,000			
10회	직원(1인)	신주교부	2015.03.30	기명식 보통주	30,000	2022.3.29	1,155	3년 근무조건
10회차 합계				30,000				
11회	직원(1인)	신주교부	2016.03.25	기명식 보통주	30,000	2023.03.24	2,641	3년 근무조건
	11회자 합계				30,000			

- ① 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전 2개월, 1개월 및 1주일간의 거래대금을 거래 량으로 가중산술평균값을 산술평균한 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가액
- ② 행사가격의 조정: 부여일 이후 실시한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 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액면분할 및 병합, 합병 등을 실시하여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이뤄지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및 관계법령에 의해 그 행사가격 및 수량 등을 조정한다.
- ③ 행사기간: 이사회 결의일(부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 이내
- (2) 당반기 및 전기 중 주식선택권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구분	당반기	전기
기초	741,000	776,000
부여	30,000	30,000
상실	(5,000)	(65,000)
행사	(410,000)	-
기말	356,000	741,000

(3) 연결실체는 블랙-숄즈 평가모형에 의한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보상원가를 산정하였으며, 공정가치 산정에 사용된 방법과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제11회차	제10회차	제9회차	제8회차
가중평균주가(기준주가)	2,640	1,150	1,070	1,740
행사가격	2,641	1,155	1,065	1,631
기대주가변동성(*1)	72.93%	77.80%	82.23%	88.96%
옵션만기(기대존속기간)	5년	5년	5년	5년
기대배당금	_	_	_	_
무위험이자율(*2)	1.60%	1.85%	3.15%	2.51%
공정가치	2,036	727	718	1,191

- (\*1) 지배회사의 과거 5년간 주간 주가 변동성을 기초로 변동성을 산정하였습니다.
- (\*2) 무위험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을 이용하였습니다.
- (4) 보상원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급액
전기까지 인식한 누적보상비용	608,353,997
당반기 인식한 보상비용	76,369,461
당반기 이후 인식할 보상비용	74,438,125
총 보상원가	759,161,583

# 19. 결손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반기	전기
기초 결손금	56,413,575,047	52,393,918,277
당기순손실(이익)	(536,206,397)	3,650,090,823
보험수리적손실(이익)	(156,647,596)	369,565,947

구분	당반기	전기
기말 결손금	55,720,721,054	56,413,575,047

# 20. 기타자본항목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자본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	전기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51,791,218,389	50,841,591,818
감자차익	4,676,667,000	4,676,667,000
기타자본잉여금	2,945,879,643	2,945,879,643
소계	59,413,765,032	58,464,138,461
자본조정		
주식선택권	181,575,290	608,353,997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지분법자본변동	(651,521)	(651,521)

# 21. 매출액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매출액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	<u>나</u> 기	전반기		
구분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상품매출	886,233,939	1,383,512,089	537,772,599	1,022,180,025	
제품매출	7,216,614,222	14,098,107,320	5,850,885,613	11,300,114,436	
용역매출	190,069,998	353,431,818	146,698,484	242,355,150	
합계	8,292,918,159	15,835,051,227	6,535,356,696	12,564,649,611	

# 22. 매출원가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매출원가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78	당반	<u>ル</u> フ	전반기		
구분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상품매출원가	389,454,223	677,906,036	147,360,235	327,080,841	
제품매출원가	4,742,619,911	8,725,066,422	4,262,781,809	7,734,531,149	
용역매출원가	203,403,900	322,768,814	131,411,697	221,209,260	
합계	5,335,478,034	9,725,741,272	4,541,553,741	8,282,821,250	

## 23. 판매관리비

당반기와 전반기 중 연결실체의 판매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8	당반	<u></u> け기	전반기		
구분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급여	884,371,411	1,803,944,050	766,463,430	1,566,126,720	
퇴직급여	46,844,745	126,732,527	58,572,596	110,741,021	
복리후생비	205,020,670	365,685,087	128,444,339	224,545,646	
여비교통비	163,476,329	284,292,168	129,074,231	235,640,243	
접대비	99,829,010	128,398,858	40,316,079	103,541,442	
통신비	22,853,731	42,794,967	17,087,465	35,068,753	
수도광열비	1,523,797	3,549,411	1,695,802	5,491,037	
세금과공과	44,120,550	117,241,245	43,418,520	87,847,028	
감가상각비	71,035,770	141,575,469	65,646,829	131,056,637	
지급임차료	62,928,339	102,977,397	43,334,249	86,177,639	
보험료	28,000	719,500	_	_	
차량유지비	9,262,542	19,785,390	11,021,552	21,985,835	
경상시험연구비	74,711,109	162,404,975	66,279,101	229,553,939	
운반비	32,697,640	62,581,140	28,473,010	55,422,250	

	당반	·············	전반기		
구분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교육훈련비	880,000	1,096,910	4,578,578	6,382,214	
도서인쇄비	1,756,555	3,912,328	9,811,193	18,333,412	
사무용품비	5,372,243	16,907,398	5,437,273	9,368,550	
소모품비	10,896,385	28,211,966	4,303,742	9,839,600	
지급수수료	245,568,844	499,800,212	364,935,267	558,943,152	
광고선전비	136,717,742	278,023,762	51,788,745	70,717,835	
대손상각비	(29,961,003)	228,132,755	239,178,003	250,063,431	
판매수수료	443,027,000	942,898,000	517,191,000	858,381,670	
견본비	29,629,642	46,348,715	31,978,064	49,683,768	
주식보상비용	19,551,687	66,899,985	50,043,921	75,541,305	
무형자산상각비	96,020,295	190,974,572	30,606,904	61,179,522	
합계	2,678,163,033	5,665,888,787	2,709,679,893	4,861,632,649	

# 24.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와 전반기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재고자산의 변동	1,261,435	562,936
원재료 및 상품매입액	5,859,591	5,513,701
감가상각 및 무형자산상각	1,043,326	920,941
인건비	3,157,746	2,748,076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615,971	234,385
주식보상비용	76,692	95,018
임차료	119,992	86,178
판매수수료, 지급수수료	1,545,668	1,416,631
기타비용	1,711,209	1,566,588
합계(*)	15,391,630	13,144,454

(\*) 포괄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25.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융수익과 금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	반기	전반기	
TE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금융수익	36,821,209	44,807,426	45,310,611	82,567,236
이자수익	30,112,639	36,734,010	44,237,323	79,695,920
외화환산이익	(205,615)	_	(105,228)	2,139
외환차익	6,914,185	8,073,416	1,178,516	2,869,177
금융원가	23,859,752	24,857,919	34,351,241	69, 186, 174
이자비용	_	_	32,963,249	65,161,887
외환환산손실	163,610	163,610	(101,837)	1,404,697
외환차손	12,584,652	13,582,819	1,489,829	2,619,590
기타의대손상각비	11,111,490	11,111,490	_	_

## 26. 기타수익과 기타비용

당반기와 전반기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	ולין	전반기	
十七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기타수익	5,574,147	108,528,296	528,912	51,047,968
잡이익	3,029,693	63,983,842	528,912	51,047,968
무형자산처분이익	_	42,000,000	_	_
유형자산처분이익	2,544,454	2,544,454	-	_
기타비용	11,129,148	94,593,226	132,450	668,340
잡손실	8,972,352	27,044,561	132,450	668,340
기부금	2,156,796	4,656,796	_	_
무형자산손상차손	_	62,891,869	_	_

## 27. 법인세비용

당반기 및 전반기의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과 법인세비용 간의 관계는 다음

# 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477,305,745	(516,043,598)
적용세율에 따른 세부담액	105,007,264	(113,529,592)
조정사항		
비공제비용	_	36,895,663
자본에 가감하는 당기법인세	(58,900,652)	_
미인식 이연법인세자산 등	(105,007,264)	76,633,929
법인세비용	(58,900,652)	_
법인세유효세율	_	_

# 28. 주당이익

(1) 당반기 및 전반기의 기본주당이익 및 희석주당이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기본주당이익(손실)	3.9	6.1	(8.1)	(6.0)
희석주당이익(손실)	3.9	6.1	(8.1)	(6.0)

# (2) 기본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된 순이익과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78	당반기		전반기	
구분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반기순이익(손실)	345,584,200	536,206,397	(704,521,106)	(516,043,598)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88,585,728	88,441,486	86,626,866	86,626,866

#### (3) 희석주당이익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된 순이익과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78	당반기		전반기	
구분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반기순이익(손실)	345,584,200	536,206,397	(704,521,106)	(516,043,598)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88,585,728	88,441,486	87,047,866	87,047,866

### 29. 특수관계자

(1) 당반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특수관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회사명
지배기업	(주)차바이오텍
관계기업	(주)콘센트릭스솔라코리아
	(주)차케어스
	(주)차메디텍
기타 특수관계자	(의)성광의료재단 차움의원
	(주)차바이오에프앤씨
	(주)차헬스케어

(2)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78	당반기		전반기	
구분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단기급여	78,887,270	157,774,540	43,500,000	119,122,000
주식보상비용	9,533,079	18,141,694	13,706,180	27,412,360

연결실체의 주요경영진에는 등기 임원인 이사(사외이사 포함) 및 감사위원회 위원(감사)을 포함하였습니다.

(3) 당반기 및 전반기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시키게티	סון ווורו ר	급액		71.0	
특수관계자 	기래내용 	당반기	전반기	과목	
(주)차바이오텍	경영자문 용역료	30,589,764	10,026,000	지급수수료 등	
	신약사업부 위탁연구비등	137,913,670	_	지급수수료 등	
㈜차메디텍	품질관리팀 시약 구입	_	105,856,592	경상개발비	
	상품 매입	234,179,872	31,175,000	상품	
㈜차케어스	통합그룹웨어 사용	5,449,706	456,009	지급수수료 등	
㈜차바이오에프엔씨	직원 선물 구입비	28,354,544	23,408,182	복리후생비	
차바이오컴플렉스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87,581,158	_	지급임차료	
(0) 47101771151 7180101	매출	34,804,546	30,963,636	제품 매출	
(의)성광의료재단 차움의원	차움레트로아 사용료	16,772,727	8,181,819	복리후생비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특수관계자	과목	급액		LIIQ	
국구선계사	) 기독	당반기	전기	내용	
(주)차헬스케어	임차보증금	20,000,000	20,000,000	서울 본점 임차보증금	
(주)차바이오텍	미지급금	6,730,690	11,028,600	경영자문료	
(의)성광의료재단 차움의원	외상매출금	38,285,000	36,904,323	차움건진의원 매출	
(주)차메디텍	미지급금	111,530,219	64,612,675	시약구입 및 위탁연구비	

# 4.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제 16 기 반기말 2016.06.30 현재

제 15 기말 2015.12.31 현재

제 14 기말 2014.12.31 현재

	제 16 기 반기말	제 15 기말	제 14 기말
자산			
유동자산	26,394,396,842	26,330,765,367	28,359,822,877
현금및현금성자산	2,160,892,623	2,566,163,680	8,826,926,485

	제 16 기 반기말	제 15 기말	제 14 기말
기타금융자산	5,358,382,351	5,354,085,024	357,733,676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11,671,623,502	12,358,522,460	13,483,456,140
재고자산	6,679,236,502	5,455,617,237	4,913,102,937
기타유동자산	524,261,864	596,376,966	778,603,639
비유동자산	31,160,055,416	30,261,206,582	29,767,274,886
투자주식		0	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770,028,292	672,583,292	637,138,764
유형자산	17,137,843,982	17,822,468,470	18,833,775,124
무형자산	13,252,183,142	11,766,154,820	10,296,360,998
기타비유동자산		0	
자산총계	57,554,452,258	56,591,971,949	58,127,097,763
부채			
유동부채	8,370,837,456	8,843,327,625	8,713,579,065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7,227,909,747	7,936,782,718	6,792,498,225
단기금융부채			1,538,046,324
기타유동부채	1,142,927,709	906,544,907	383,034,516
유동성장기금융부채			
비유동부채	890,207,535	875,938,914	346,480,070
장기금융부채			
기타비유동비금융부채	263,775,837	224,589,895	
확정급여부채	626,431,698	651,349,019	346,480,070
부채총계	9,261,044,991	9,719,266,539	9,060,059,135
자본			
자본금	44,353,622,000	44,148,622,000	43,313,433,000
자본잉여금	59,413,765,032	58,464,138,461	57,681,858,387
자본조정	181,575,290	608,353,997	401,922,011
이익잉여금(결손금)	(55,655,555,055)	(56,348,409,048)	(52,330,174,770)
자본총계	48,293,407,267	46,872,705,410	49,067,038,628
자본과부채총계	57,554,452,258	56,591,971,949	58,127,097,763

## 포괄손익계산서

제 16 기 반기 2016.01.01 부터 2016.06.30 까지

제 15 기 반기 2015.01.01 부터 2015.06.30 까지 제 15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제 14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단위 : 원)

	제 16 기 반기		제 15 기 반기		TII 15 71	TII 14 7I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제 15 기	제 14 기
수익(매출액)	8,292,918,159	15,835,051,227	6,535,356,696	12,564,649,611	27,041,894,373	22,752,583,609
매출원가	5,335,478,034	9,725,741,272	4,541,553,741	8,282,821,250	17,237,814,081	14,318,048,120
매출총이익	2,957,440,125	6,109,309,955	1,993,802,955	4,281,828,361	9,804,080,292	8,434,535,489
판매관리비	2,678,163,033	5,665,888,787	2,709,522,876	4,860,346,076	12,374,957,987	7,988,517,640
영업이익(손실)	279,277,092	443,421,168	(715,719,921)	(578,517,715)	(2,570,877,695)	446,017,849
기타이익	5,574,147	108,528,296	528,904	51,047,940	424,303,749	141,369,988
기타손실	11,129,148	94,593,226	450	536,340	1,531,925,890	540,020,398
금융수익	36,821,209	44,807,426	42,902,779	82,567,211	109,661,660	339,929,300
금융원가	23,859,752	24,857,919	34,351,241	69,186,174	79,830,155	215,794,44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86,683,548	477,305,745	(706,639,929)	(514,625,078)	(3,648,668,331)	171,502,296
법인세비용	(58,900,652)	(58,900,652)				
계속영업당기순이익(손실)	345,584,200	536,206,397	(706,639,929)	(514,625,078)	(3,648,668,331)	171,502,296
당기순이익(손실)	345,584,200	536,206,397	(706,639,929)	(514,625,078)	(3,648,668,331)	171,502,296
보험수리적손익	156,647,596	156,647,596	9,684,847	37,495,553	(369,565,947)	(350,237,541)
총포괄손익	502,231,796	692,853,993	(696,955,082)	(477, 129, 525)	(4,018,234,278)	(178,735,245)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4	6	(8)	(6)	(42)	2
희석주당이익(손실)	4	6	(8)	(6)	(42)	2

#### 자본변동표

제 16 기 반기 2016.01.01 부터 2016.06.30 까지 제 15 기 반기 2015.01.01 부터 2015.06.30 까지 제 15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제 14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2014.01.01 (2	기초자본)	43,313,433,000	57,681,858,387	204,361,115		(52, 151, 439, 525)	49,048,212,977
	지분의 발행						
	주식선택권			197,560,896			197,560,896
	신주인수권행사						0
자본의 변동	보험수리적손익					(350,237,541)	(350,237,541)
	당기순이익					171,502,296	171,502,296
	주식발행초과금						
	신주인수권대가						
2014.12.31 (2	기말자본)	43,313,433,000	57,681,858,387	401,922,011		(52,330,174,770)	49,067,038,628
2015.01.01 (2	기초자본)	43,313,433,000	57,681,858,387	401,922,011		(52,330,174,770)	49,067,038,628
	지분의 발행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주식선택권			206,431,986			206,431,986
	신주인수권행사	835,189,000	782,280,074				1,617,469,074
자본의 변동	보험수리적손익					(369,565,947)	(369,565,947)
	당기순이익					(3,648,668,331)	(3,648,668,331)
	주식발행초과금						
	신주인수권대가						
2015.12.31 (7	·  말자본)	44,148,622,000	58,464,138,461	608,353,997		(56,348,409,048)	46,872,705,410
2015.01.01 (7	기초자본)	43,313,433,000	57,681,858,387	401,922,011		(52,330,174,770)	49,067,038,628
	지분의 발행						
	주식선택권			95,018,295			95,018,295
	신주인수권행사						
자본의 변동	보험수리적손익					37,495,553	37,495,553
	당기순이익					(514,625,078)	(514,625,078)
	주식발행초과금						
	신주인수권대가						
2015.06.30 (7	リ말자본)	43,313,433,000	57,681,858,387	496,940,306	0	(52,807,304,295)	48,684,927,398
2016.01.01 (7	기초자본)	44,148,622,000	58,464,138,461	608,353,997		(56,348,409,048)	46,872,705,410
	지분의 발행	205,000,000	949,626,571	(488,430,171)			666,196,400
	주식선택권			61,651,464			61,651,464
	신주인수권행사						
자본의 변동	보험수리적손익					156,647,596	156,647,596
	당기순이익					536,206,397	536,206,397
	주식발행초과금		0				0
	신주인수권대가		0				0
2016.06.30 (7	l말자본)	44,353,622,000	59,413,765,032	181,575,290	0	55,655,555,055	48,293,407,267

#### 현금흐름표

제 16 기 반기 2016.01.01 부터 2016.06.30 까지 제 15 기 반기 2015.01.01 부터 2015.06.30 까지 제 15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제 14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제 16 기 반기	제 15 기 반기	제 15 기	제 14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889,217,942	(163,720,359)	2,411,253,729	730,446,629
당기순이익(손실)	536,206,397	(514,625,078)	(3,648,668,331)	171,502,296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308,741,132	276,042,990	5,922,114,673	208,591,229
이자비용		65,161,887	79,830,155	122,839,915
이자수익	(36,734,010)	(79,695,895)	(109,661,660)	(279,929,300)
외화환산손실	163,610	1,404,697	1,404,697	5,717,792
감가상각비	852,350,968	859,761,961	1,685,740,077	1,391,412,210
퇴직급여	292,473,770	259,434,981	518,869,962	326,387,478
대손상각비	228,132,755	250,063,431	1,261,933,670	382,047,338
기타의 대손상각비	11,111,490	0	0	

	제 16 기 반기	제 15 기 반기	제 15 기	제 14 기
무형자산상각비	190,974,572	61,179,522	204,306,347	73,432,625
주식보상비용	76,369,461	95,018,295	206,431,986	197,560,896
반품보증비용	39,185,942		224,589,895	
유형자산처분이익	(2,544,454)			
무형자산처분이익	(42,000,000)			
법인세비용	(58,900,652)			
재고자산폐기손실	109,816,202	89,549,053	190,043,695	35,494,929
재고자산평가손실	37,816,166	4,211,624	3,796,633	
유형자산처분손실			0	819,557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92,954,528
외화환산이익		(2,139)	(277,956)	(8,343,962)
무형자산손상차손	62,891,869		1,286,911,673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환입				(60,000,000)
대손충당금환입				(2,761,961)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500,594,624	(995,901,892)	(134,064,451)	(2,690,617,039)
미수금의 감소(증가)	(52,939,911)	(8,560,883)	(2,935,539)	(97,123,102)
선급금의 감소(증가)	32,348,001	241,899,336	180,329,234	(376,635,407)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24,744,571	(17,489,634)	(22,192,231)	(45,692,267)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3,188,800			75,751,200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1,371,251,633)	379,626,358	(736,354,628)	(329,880,167)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403,517,192	(982,437,455)	124,592,059	807,653,545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959,410,853)	176,145,022	778,869,199	611,381,559
선수금의 증가(감소)	(25,315,128)	(9,320,840)	34,240,294	64,656,067
예수금의 증가(감소)	311,697,930	(15,705,065)	484,270,097	77,960,770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152,979,310)	(73,206,604)	240,008,425	74,402,043
기타비유동비금융부채의 증가(감소)			0	
예수보증금의 증가(감소)	(50,000,000)	5,000,000	5,000,000	41,277,920
사외적립자산의감소(증가)	382,766,730	90,918,335	(373,207,555)	4,887,828
퇴직금의 승계				C
퇴직금의 지급	(499,327,570)	(121,011,105)	(210,359,405)	(287,063,766)
이연법인세자산의 감소(증가)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의 감소(증가)				
제품보증충당부채의 증가(감소)				
이자수취	32,436,683	44,147,890	113,310,312	264,445,024
이자지급		406,849	407,405	
법인세납부(환급)	11,833,730	30,306,990	24,089,670	85,908,080
투자활동현금흐름	(1,960,521,789)	(4,930,762,440)	(8,670,889,793)	(13,611,108,626)
매도가능증권의감소	(101,400,000)			120,000,000
보증금의 감소	3,955,000	3,636,212	9,555,472	0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2,988,328,768)	(5,000,000,000)	
	ı l			

	제 16 기 반기	제 15 기 반기	제 15 기	제 14 기
유형자산의 취득	(167,727,480)	(112,079,168)	(674,433,423)	(9,420,914,983)
무형자산의 취득	(1,809,894,763)	(1,828,990,716)	(2,961,011,842)	(4,013,575,351)
보증금의 증가		(5,000,000)	(45,000,000)	(196,618,292)
유형자산의 처분	2,545,454			
무형자산의 처분	112,000,000			
재무활동현금흐름	666, 196, 400	0		
주식발행비용	666, 196, 400			
사채의 상환				
단기차입금의 상환		(100,000,000)		
단기차입금의 증가		100,000,000		
주식의 발행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163,610)	(1,402,558)	(1,126,741)	2,626,170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405,271,057)	(5,095,885,357)	(6,260,762,805)	(12,878,035,827)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2,566,163,680	8,826,926,485	8,826,926,485	21,704,962,312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2,160,892,623	3,731,041,128	2,566,163,680	8,826,926,485

# 5. 재무제표 주석

#### 1. 회사의 개요

당사는 2001년 8월 피혁 및 관련 제품의 제조, 가공 그리고 판매를 목적으로 신설되어 피혁제품 가공 및 생산을 하였으나 2006년 경영권이 양도된 이후 기존의 사업을 중단하고 의약품 개발, 제조, 판매회사로 업종을 변경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피엠케이에서 주식회사 스카이뉴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29일에 주식회사 스카이뉴팜에서 주식회사 CMG제약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34-4에 공장을,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6길 14 (청담동)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당반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주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주식수(주)	지 분 율
(주)차바이오텍	23,211,676	26.17%
기타소액주주	65,495,568	73.83%
합계	88,707,244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2016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반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요약반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종료일인 2016년 6월 30일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작성되었습니다.

① 당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

#### -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중요성에 따라 공시항목의 생략, 추가, 통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 또한,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의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였으며, 기타 주석공시 순서 등에 대한 일부 규정을 추가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38호 '무형자산' 개정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소비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판매수량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제한된 상황에서 무형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 음을 명확히 함.

②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 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12월 공표된 금융상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은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을 규정한 기준서 제1039호를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을 사업모형과 상품의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할 것을 규정하고 해당 분류에 따른 손익인식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상모형은 기대신용손실과 그 변동을 인식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위험회피회계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위험관리와 일관되도록 부분적인 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

도부터 적용되고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손익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적 조기적용도 허용됩니다. 당사는 개정 기준서 적용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2월 공표한 수익인식에 대한 새로운 기준은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익인식 기준인 기준서 제1018호와 건설계약 수익인식 기준인 제1011호 및 관련 해석서를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현행 수익인식 기준의 위험과 보상 이전 모형을 대체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수익을 인식한다는 원칙에 기초하여 5단계의 과정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현행 수익인식과 주요한 차이로 재화나 용역이 묶음으로 제공될 때 구분되는 수행의무 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변동대가 인식에 대한 제약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익을 일정 기간에 걸쳐 인식하기 위한 조건과 증가된 공시사항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고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개정 기준서 적용에 따른 영향을과 악하고 있습니다.

#### (2) 회계정책

요약반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에서 설명하는 제·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연간 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요약반기재무제표 작성시 당사의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 및 보고되는 자산과 부채 및 이익과 비용의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 3. 재무위험 관리

#### (1) 재무위험 관리요소

당사의 위험관리정책은 당사가 직면한 위험을 식별 및 분석하고, 적절한 위험 한계치 및 통제를 설정하고, 위험이 한계치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위험 관리정책과 시스템은 시장상황과 당사의 활동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훈련 및 관리기준, 절차를 통해 모든 종업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이해할 수 있는 엄격하고 구조적인 통제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진이 당사의 위험관리정책 및 절차의 준수여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감독하고, 당사의 위험관리체계가 적절한지 검토합니다.

재무위험관리의 대상이 되는 당사의 금융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부채는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시장위험

#### ① 외환위험

당사의 경영진은 기능통화에 대한 환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과 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환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부채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될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환위험 노출에 대한 최대 환손실 규모가 위험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중요한 외화금융자산 및 외화금융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USD)

구분	당반기	전기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38,201.67	6,212.7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외화에 대한 원화 환율 10% 변동 시 환율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당반기		전	기	
구분 	10% 상승시	10% 하락시	10% 상승시	10%하락시
USD	3,252,490	(3,252,490)	728,133	(728, 133)

#### ② 이자율위험

당사는 시장금리 변동으로 인한 재무상태표 항목의 가치변동(공정가치) 위험 또는 투자위험에서 비롯한 투자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비용의 현금흐름의 변동 등의 이자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이자율 변동위험은 주로 이자수취자산에의 투자, 예금 및 변동금리부 차입금에서 비롯됩니다. 당사는이자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금융비용의 위험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0.5% 변동 시 이자율 변동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다. 다반기		전반기		
1 4	0.5% 상승시	0.5% 하락시	0.5% 상승시	0.5% 하락시	
이자비용	_	_	_	_	
이자수익	12,397,260	(12,397,260)	28,166,177	(28,166,177)	

####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 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 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 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 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은 주로 각 고객별 특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고객이 영업하고있는 산업 및 지역의 파산위험 등의 고객분포는 신용위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당사는 표준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이전에 모든 신규 고객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용도를 검토하도록 하는 신용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검토 시에는 외부적인 등급과 은행의 평가 등을 고려합니다. 별도의 승인요청 없이 가능한 최고 구매한도가 개별고객별로 정해지며, 이한도는 분기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신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고객은 담보를 제공 시에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당사는 매출채권과 투자자산에 대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충당금은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손상차 손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 집합의 발생하였으나 아직 식별되지 않은 손상으로 구성됩니다. 금융자산 집합의 충당금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회수에 대한 과거자료에 근거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각 지역별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 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내역	당반기	전기
국내	11,671,623,502	12,358,522,460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거래대상별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역	당반기	전기
도매업체	8,753,717,627	9,021,722,000
기타	2,917,905,876	3,336,800,460

내역	당반기	전기
합계	11,671,623,502	12,358,522,460

#### 3)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은 당사의 경영환경 또는 금융시장의 악화로 인해 당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적기에 이행하지 못할 위험으로 정의합니다. 당사는 유동성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금흐름 및 유동성 계획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에 표시된 현금흐름은 원리금이며, 현재가치 할인을 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 (당반기)

(단위:원)

구분	1년 미만	1년에서 5년 이하	합계
매입채무	5,247,613,517	_	5,247,613,517
기타채무	1,980,296,230	_	1,980,296,230
합계	7,227,909,747	_	7,227,909,747

#### (전기)

(단위:원)

구분	1년 미만	1년에서 5년 이하	합계
매입채무	4,844,096,325	_	4,844,096,325
기타채무	3,092,686,393	-	3,092,686,393
합계	7,936,782,718	_	7,936,782,718

#### (2)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부채비율 및 순차입금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의 부채비율 및 순차입금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당반기	전기
부채총계(A)	9,261,044,991	9,719,266,539
자본총계(B)	48,293,407,267	46,872,705,410
현금및현금성자산(C)	2,160,892,623	2,566,163,680
차입금(D)	-	-
부채비율(A ÷ B)	0.19	0.21
순차입금비율(D - C) ÷ B (*)	-	_

(\*) 부의 금액으로서 그 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함

#### (3) 공정가치 측정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71.0	당반기		전기	
마목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지	다산			
현금및현금성자산	2,160,892,623	2,160,892,623	2,566,163,680	2,566,163,680
기타금융자산	5,358,382,351	5,358,382,351	5,354,085,024	5,354,085,02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1,671,623,502	11,671,623,502	12,358,522,460	12,358,522,46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770,028,292	770,028,292	672,583,292	672,583,292
합계	19,960,926,768	19,960,926,768	20,951,354,456	20,951,354,456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7,227,909,747	7,227,909,747	7,936,782,718	7,936,782,718

### (4) 공정가치 서열체계

당사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 공시가격

· 수준 2 :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활용한 공정가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

• 수준 3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활용한 공정가치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른 수준별 공시를 요하는 금융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4. 현금및현금성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당반기	전기
요구불예금	2,160,892,623	2,566,163,680

#### 5. 범주별 금융상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금융자산

	당반기		전기	
마목 	대여금및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2,160,892,623	-	2,566,163,680	_
기타금융자산	5,358,382,351	-	5,354,085,024	_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1,671,623,502	-	12,358,522,460	_
기타비유동금융자산	468,628,292	301,400,000	472,583,292	200,000,000

당반기		전기		
과목 	대여금및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소계	19,659,526,768	301,400,000	20,751,354,456	200,000,000

# 2) 금융부채

(단위 : 원)

구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十七	당반기 전기	
매입채무및기타채무	7,227,909,747	7,936,782,718

(2) 당반기 및 전반기의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반기)

(단위 : 원)

구분	금융자산		금융부채
TE	대여금및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부채
이자수익	36,734,010	_	_
외화환산이익	_	_	-
외환차익	8,073,416	-	-
외화환산손실	163,610	_	_
외환차손	13,582,819	_	_
대손상각	239,244,245	_	-

# (전반기)

금융자산		금융부채	
T &	대여금및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부채
이자수익	79,695,895	-	_
외화환산이익	2,139	_	-

구분	금융	금융부채	
T.C.	대여금및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부채
외환차익	2,869,177	-	-
이자비용	_	-	65,161,887
외화환산손실	1,404,697	-	-
외환차손	2,619,590	_	-
대손상각	250,063,431	_	_

# 6. 기타금융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	전기
기타유동금융자산		
단기금융상품	5,000,000,000	5,000,000,000
단기대여금	332,490,000	332,490,000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25,000,000)	(25,000,000)
미수수익	50,892,351	46,595,024
합계	5,358,382,351	5,354,085,024
기타비유동금융자산		
장기금융상품	2,000,000	2,0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	301,400,000	200,000,000
보증금	466,628,292	470,583,292
합계	770,028,292	672,583,292

## (2) 매도가능금융자산

기타비유동금융자산 중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8	HOTALA TIBO		당반기		전기	
구분	보유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금액	취득원가	장부금액
수익증권	10좌	10.0%	100,000,000	_	100,000,000	_
(주)천지산	524,833주	6.73%	670,194,000	_	670,194,000	_
수익증권(*)	100좌	1.67%	300,000,000	300,000,000	200,000,000	200,000,000
출자금	14좌	_	1,400,000	1,400,000	_	_
합계			1,071,594,000	301,400,000	970,194,000	200,000,000

(\*) 수익증권은 IBKC-솔리더스 미래창조펀드 바이오세컨더리 계정조합에 대한 출자 지분증권으로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7.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	전기
매출채권	15,337,461,308	15,838,055,932
매출채권대손충당금	(3,728,691,139)	(3,500,558,384)
미수금	1,220,679,033	1,167,739,122
미수금대손충당금	(1,157,825,700)	(1,146,714,210)
합계	11,671,623,502	12,358,522,460

당사의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은 단기수취채권으로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원가로 측정하였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연령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당반기	전기	
만기미도래	12,298,112,364	12,643,595,906	
120일 이내	591,589,738	380,306,209	
180일 이내	164,095,759	289,498,938	

구분	당반기	전기	
180일 초과	3,504,342,480	3,692,394,001	
합계	16,558,140,341	17,005,795,054	

당사는 개별적인 손상사건이 파악된 채권에 대해 개별 분석을 통한 회수가능금액을 산정하여 산정된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 다. 한편, 손상사건이 개별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발생 후 8개월 이 하까지의 채권은 정상채권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발생 후 8개월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의 연체기간에 따른 유사한 신용위험특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대손율을 적용,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구분 당반기	
기초금액	4,647,272,594	4,468,420,618
대손상각비	239,244,245	1,261,933,670
대손환입	_	-
제각	_	(1,083,081,694)
기말금액	4,886,516,839	4,647,272,594

#### 8. 재고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현황 및 평가충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당반기	전기
상품	400,129,778	157,149,861
평가손실충당금	(3,699,806)	(1,198,611)
제품	4,700,319,608	3,318,108,740
평가손실충당금	(9,177,172)	(4,237,560)
재공품	858,149,681	1,164,328,734

구분	당반기	전기
원재료	675,941,890	694,199,683
평가손실충당금	(45,785,464)	(15,410,105)
부재료	103,357,987	142,676,495
합계	6,679,236,502	5,455,617,237

# 9. 기타유동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자산과 기타비유동자산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	전기
기타유동자산		
선급금	454,150,856	486,498,857
선급비용	67,134,438	91,879,009
당기법인세자산	2,976,570	14,810,300
기타의유동자산	_	3,188,800
합계	524,261,864	596,376,966
기타비유동자산		
장기선급금(*)	3,500,000,000	3,500,000,000
장기선급금대손충당금	(3,500,000,000)	(3,500,000,000)
합계	_	_

<sup>(\*)</sup> 장기선급금은 100% 대손설정하여 현재가치평가를 생략하였습니다.

# 10.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성격	보유 주식수(주)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금액
콘센트릭스솔라코리아	관계기업	5,000	20%	2,000,000,000	
SGN(유)	종속기업		100%	1,493,010,000	ı
(주)스카이뉴홀딩스	종속기업	50,000	100%	250,000,000	
합계		55,000		3,743,010,000	_

# 11. 유형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반기	전기
토지	2,709,384,274	2,709,384,274
건물	10,239,918,350	10,239,918,350
감가상각누계액	(1,104,422,927)	(974,720,603)
구축물	66,078,179	66,078,179
감가상각누계액	(18,942,401)	(17,620,839)
기계장치	8,344,035,744	8,328,335,744
감가상각누계액	(4,474,965,169)	(3,959,213,313)
차량운반구	41,188,323	34,366,896
감가상각누계액	(20,577,401)	(21,542,146)
공구와기구	2,119,975,253	2,031,776,253
감가상각누계액	(1,410,343,808)	(1,311,153,266)
비품	1,234,988,707	1,212,906,270
감가상각누계액	(955,176,414)	(893,246,169)
시설장치	532,784,633	522,521,113
감가상각누계액	(188,081,361)	(145,322,273)
건설중인자산	22,000,000	_
합계	17,137,843,982	17,822,468,470

# (2) 당반기 중 유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과목	기초장부금액	개별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당기장부금액
토지	2,709,384,274	_	_		2,709,384,274
건물	9,265,197,747	_	_	(129,702,324)	9,135,495,423
구축물	48,457,340	_	_	(1,321,562)	47,135,778
기계장치	4,369,122,431	15,700,000	_	(515,751,856)	3,869,070,575
차량운반구	12,824,750	9,482,523	(1,000)	(1,695,351)	20,610,922
공구와기구	720,622,987	88,199,000	_	(99, 190, 542)	709,631,445
비품	319,660,101	22,082,437	_	(61,930,245)	279,812,293
시설장치	377,198,840	10,263,520	_	(42,759,088)	344,703,272
건설중인자산	_	22,000,000	_		22,000,000
합계	17,822,468,470	167,727,480	(1,000)	(852,350,968)	17,137,843,982

# (3) 전반기 중 유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과목	기초장부금액	개별취득	대체액	감가상각비	당기장부금액
토지	2,709,384,274	_	_	_	2,709,384,274
건물	9,340,333,806	2,342,329	118,200,000	(128,802,620)	9,332,073,515
구축물	51,100,466	_	_	(1,321,562)	49,778,904
기계장치	4,993,105,748	41,188,205	_	(498,697,024)	4,535,596,929
차량운반구	16,689,062	_	_	(2,299,662)	14,389,400
공구와기구	782,492,694	52,830,000	_	(121,534,116)	713,788,578
비품	432,531,660	13,569,634	_	(72,305,528)	373,795,766
시설장치	353,904,596	1,000,000		(34,801,449)	320,103,147
건설중인자산	154,232,818	1,149,000	(118,200,000)	_	37,181,818
합계	18,833,775,124	112,079,168	_	(859,761,961)	18,086,092,331

# 12. 무형자산

#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반기	전기
특허권	70,079,635	34,011,992

구분	당반기	전기
산업재산권	140,618,366	123,794,205
소프트웨어	284,772,832	203,549,233
개발비	12,358,132,309	10,936,219,390
회원권	398,580,000	468,580,000
합계	13,252,183,142	11,766,154,820

## (2) 당반기 중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기초금액	개별취득	내부개발	처분	상각	손상차손	기말금액
특허권	34,011,992	44,443,047	-		(8,375,404)		70,079,635
산업재산권	123,794,205	50,620,240	-	-	(33,796,079)	-	140,618,366
소프트웨어	203,549,233	120,000,000	-	-	(38,776,401)	-	284,772,832
개발비	10,936,219,390	_	1,594,831,476	-	(110,026,688)	(62,891,869)	12,358,132,309
회원권	468,580,000	1	-	(70,000,000)	-	1	398,580,000
합계	11,766,154,820	215,063,287	1,594,831,476	(70,000,000)	(190,974,572)	(62,891,869)	13,252,183,142

## (3) 전반기 중 무형자산의 취득, 처분 내역 및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기초금액	개별취득	내부개발	상각	손상차손	기말금액
특허권	40,295,041	-	-	(7,555,320)	_	32,739,721
산업재산권	181,495,959	685,756	-	(29,485,201)	_	152,696,514
소프트웨어	29,677,833	197,000,000	-	(24,139,001)	_	202,538,832
개발비	9,503,232,165	-	1,631,304,960	-	_	11,134,537,125
회원권	541,660,000	-	-	-	_	541,660,000
합계	10,296,360,998	197,685,756	1,631,304,960	(61,179,522)	_	12,064,172,192

## 1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반기	전기
매입채무	5,247,613,517	4,844,096,325
미지급금	1,366,451,280	2,325,862,133

구분	당반기	전기
미지급비용	613,844,950	766,824,260
합계	7,227,909,747	7,936,782,718

## 14. 기타유동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	전기
기타유동부채		
선수금	150,552,122	175,867,250
예수금	908,375,587	596,677,657
예수보증금	84,000,000	134,000,000
소계	1,142,927,709	906,544,907
기타비유동부채		
반품충당부채	263,775,837	224,589,895

#### 15. 퇴직급여채무

당사는 종업원의 퇴직시 임금수준과 근속년수에 따라 정해지는 퇴직급여를 종업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확정급여제도로 분류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법적 요건 충족시 종업원에게 중간정산을 허용하며,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는 정산시점으로부터 새로이 기산됩니다.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반기	전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857,461,078	2,248,882,959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231,029,380)	(1,597,533,940)

구분	당반기	전기
합계	626,431,698	651,349,019

# (2) 확정급여채무

당반기와 전반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확정급여채무 기초잔액	2,248,882,959	1,563,629,984
당기근무원가	288,675,903	255,729,722
이자원가	23,926,795	20,883,626
보험수리적손실(이익)	(204,697,009)	(47,982,860)
지급액	(499,327,570)	(121,011,105)
확정급여채무 기말잔액	1,857,461,078	1,671,249,367

#### (3) 사외적립자산

당반기와 전반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	1,597,533,940	1,217,149,914
사용자의 기여금	_	_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20,128,928	17,178,367
보험수리적이익(손실)	(3,866,758)	(10,487,307)
급여지급액	(382,766,730)	(90,918,335)
기말	1,231,029,380	1,132,922,639

## (4) 보험수리적가정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반기	전기
기대임금상승률	4%	4%
할인율	2.52%	2.52%

## (5) 민감도 분석

당반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의적인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한 민감도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7 🖽	확정급여채무에 미치는 영향			
구 분	가정의 변경	상승	하락	
기대임금상승률	1.00%	120,979,788	(108,225,722)	
할인율	1.00%	(108,615,208)	123,985,916	

#### 16.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 (1) 지급보증 및 기타 약정사항

당반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비씨카드와 한도 500백만원의 법인카드 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공탁보증 받은 금액은 68백만원입니다.

- (2) 당반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배서어음은 68,965,879원 입니다.
- (3) 당사는 (주)천지산과 항암치료제 테트라스의 판권대행 계약을 2006년에 체결하였으며 총계약금액 80억원 중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35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동금액은 장기선급금에 계상된 후 전액 손상처리되었습니다. 2차 중도금은 임상 2상신청시 지급하며, 잔금은 국내시판 허가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추가적인진행사항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 17. 자본금

당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이며, 발행한 주식의 수는 88,707,244 주(액면500원)입니다.

#### 18. 주식선택권

(1) 당사가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대상자	부여방법	부여일	부여주식	부여수량	최장만기	행사가액	가득조건
임원(4인)	신주교부	2013.03.29	기명식 보통주	195,000	2019.03.28	1,631	3년 근무조건
고문(3인)	신주교부	2013.03.29	기명식 보통주	55,000	2019.03.28	1,631	3년 근무조건
직원(75인)	신주교부	2013.03.29	기명식 보통주	434,000	2019.03.28	1,631	3년 근무조건
8회차 합계		684,000					
임원(2인)	신주교부	2014.03.31	기명식 보통주	105,000	2021.03.30	1,065	3년 근무조건
고문(3인)	신주교부	2014.03.31	기명식 보통주	95,000	2021.03.30	1,065	3년 근무조건
직원(3인)	신주교부	2014.03.31	기명식 보통주	90,000	2021.03.30	1,065	3년 근무조건
9회차 합계		290,000					
직원(1인)	신주교부	2015.03.30	기명식 보통주	30,000	2022.3.29	1,155	3년 근무조건
10회차 합계		30,000					
직원(1인)	신주교부	2016.03.25	기명식 보통주	30,000	2023.03.24	2,641	3년 근무조건
11회차 합계		30,000					
	임원(4인) 고문(3인) 직원(75인) 임원(2인) 고문(3인) 직원(3인)	임원(4인) 신주교부 고문(3인) 신주교부 직원(75인) 신주교부 용회차 합고 임원(2인) 신주교부 고문(3인) 신주교부 직원(3인) 신주교부 의회차 합고 직원(1인) 신주교부	임원(4인) 신주교부 2013.03.29 고문(3인) 신주교부 2013.03.29 직원(75인) 신주교부 2013.03.29 용회차 합계 임원(2인) 신주교부 2014.03.31 고문(3인) 신주교부 2014.03.31 직원(3인) 신주교부 2014.03.31 의회차 합계 직원(1인) 신주교부 2015.03.30 10회차 합계 직원(1인) 신주교부 2016.03.25	임원(4인) 신주교부 2013.03.29 기명식 보통주 고문(3인) 신주교부 2013.03.29 기명식 보통주 직원(75인) 신주교부 2013.03.29 기명식 보통주 용회차 합게 임원(2인) 신주교부 2014.03.31 기명식 보통주 고문(3인) 신주교부 2014.03.31 기명식 보통주 직원(3인) 신주교부 2014.03.31 기명식 보통주 직원(3인) 신주교부 2014.03.31 기명식 보통주 의회차 합계 직원(1인) 신주교부 2015.03.30 기명식 보통주	임원(4인) 신주교부 2013.03.29 기명식 보통주 195,000 고문(3인) 신주교부 2013.03.29 기명식 보통주 55,000 직원(75인) 신주교부 2013.03.29 기명식 보통주 434,000 용회차 합게 684,000 임원(2인) 신주교부 2014.03.31 기명식 보통주 105,000 고문(3인) 신주교부 2014.03.31 기명식 보통주 95,000 직원(3인) 신주교부 2014.03.31 기명식 보통주 90,000 의회차 합계 290,000 직원(1인) 신주교부 2015.03.30 기명식 보통주 30,000 직원(1인) 신주교부 2016.03.25 기명식 보통주 30,000	임원(4인) 신주교부 2013.03.29 기명식 보통주 195,000 2019.03.28 고문(3인) 신주교부 2013.03.29 기명식 보통주 55,000 2019.03.28 직원(75인) 신주교부 2013.03.29 기명식 보통주 434,000 2019.03.28 8회차 합게 684,000 임원(2인) 신주교부 2014.03.31 기명식 보통주 105,000 2021.03.30 고문(3인) 신주교부 2014.03.31 기명식 보통주 95,000 2021.03.30 직원(3인) 신주교부 2014.03.31 기명식 보통주 90,000 2021.03.30 의회차 합게 290,000 직원(1인) 신주교부 2015.03.30 기명식 보통주 30,000 2022.3.29 10회차 합계 30,000 직원(1인) 신주교부 2016.03.25 기명식 보통주 30,000 2023.03.24	임원(4인) 신주교부 2013.03.29 기명식 보통주 195,000 2019.03.28 1,631 고문(3인) 신주교부 2013.03.29 기명식 보통주 55,000 2019.03.28 1,631 직원(75인) 신주교부 2013.03.29 기명식 보통주 434,000 2019.03.28 1,631 8회차 합계 684,000 의원(2인) 신주교부 2014.03.31 기명식 보통주 105,000 2021.03.30 1,065 고문(3인) 신주교부 2014.03.31 기명식 보통주 95,000 2021.03.30 1,065 직원(3인) 신주교부 2014.03.31 기명식 보통주 90,000 2021.03.30 1,065 의회차 합계 290,000 의료자합계 290,000 2021.03.30 1,155 10회차 합계 30,000 2022.3.29 1,155 10회차 합계 30,000 2023.03.24 2,641

- ① 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전 2개월, 1개월 및 1주일간의 거래대금을 거래 량으로 가중산술평균값을 산술평균한 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가액
- ② 행사가격의 조정: 부여일 이후 실시한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 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액면분할 및 병합, 합병 등을 실시하여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이뤄지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및 관계법령에 의해 그 행사가격 및 수량 등을 조정한다.
- ③ 행사기간: 이사회 결의일(부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 이내
- (2) 당반기 및 전기 중 주식선택권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구분	당반기	전기
기초	741,000	776,000
부여	30,000	30,000
상실	(5,000)	(65,000)
행사	(410,000)	-
기말	356,000	741,000

(3) 당사는 블랙-숄즈 평가모형에 의한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보상원가를 산정하였으며, 공정가치 산정에 사용된 방법과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제11회차	제10회차	제9회차	제8회차
가중평균주가(기준주가)	2,640	1,150	1,070	1,740
행사가격	2,641	1,155	1,065	1,631
기대주가변동성(*1)	72.93%	77.80%	82.23%	88.96%
옵션만기(기대존속기간)	5년	5년	5년	5년
기대배당금	_	_	_	_
무위험이자율(*2)	1.60%	1.85%	3.15%	2.51%
공정가치	2,036	727	718	1,191

- (\*1) 당사의 과거 5년간 주간 주가 변동성을 기초로 변동성을 산정하였습니다.
- (\*2) 무위험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을 이용하였습니다.
- (4) 보상원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급액
전기까지 인식한 누적보상비용	608,353,997
당반기 인식한 보상비용	76,369,461
당반기 이후 인식할 보상비용	74,438,125
총 보상원가	759,161,583

# 19. 결손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반기	전기
기초 결손금	56,348,409,048	52,330,174,770
당기순손실(이익)	(536,206,397)	3,648,668,331
보험수리적손실(이익)	(156,647,596)	369,565,947

구분	당반기	전기
기말 결손금	55,655,555,055	56,348,409,048

# 20. 기타자본항목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자본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	전기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51,791,218,389	50,841,591,818
감자차익	4,676,667,000	4,676,667,000
기타자본잉여금	2,945,879,643	2,945,879,643
소계	59,413,765,032	58,464,138,461
자본조정		
주식선택권	181,575,290	608,353,997

# 21. 매출액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매출액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당반기		전반기	
구분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상품매출	886,233,939	1,383,512,089	537,772,599	1,022,180,025
제품매출	7,216,614,222	14,098,107,320	5,850,885,613	11,300,114,436
용역매출	190,069,998	353,431,818	146,698,484	242,355,150
합계	8,292,918,159	15,835,051,227	6,535,356,696	12,564,649,611

# 22. 매출원가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매출원가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78	당반기		전반기	
구분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상품매출원가	389,454,223	677,906,036	147,360,235	327,080,841
제품매출원가	4,742,619,911	8,725,066,422	4,262,781,809	7,734,531,149
용역매출원가	203,403,900	322,768,814	131,411,697	221,209,260
합계	5,335,478,034	9,725,741,272	4,541,553,741	8,282,821,250

## 23. 판매관리비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사의 판매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b>7</b> H	당빈	반기	전변	반기
구분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급여	884,371,411	1,803,944,050	766,463,430	1,566,126,720
퇴직급여	46,844,745	126,732,527	58,572,596	110,741,021
복리후생비	205,020,670	365,685,087	128,444,339	224,545,646
여비교통비	163,476,329	284,292,168	129,074,231	235,640,243
접대비	99,829,010	128,398,858	40,316,079	103,541,442
통신비	22,853,731	42,794,967	17,003,448	34,476,180
수도광열비	1,523,797	3,549,411	1,695,802	5,491,037
세금과공과	44,120,550	117,241,245	43,418,520	87,847,028
감가상각비	71,035,770	141,575,469	65,646,829	131,056,637
지급임차료	62,928,339	102,977,397	43,334,249	86,177,639
보험료	28,000	719,500	_	_
차량유지비	9,262,542	19,785,390	11,021,552	21,985,835
경상시험연구비	74,711,109	162,404,975	66,279,101	229,553,939
운반비	32,697,640	62,581,140	28,473,010	55,422,250
교육훈련비	880,000	1,096,910	4,578,578	6,382,214
도서인쇄비	1,756,555	3,912,328	9,811,193	18,333,412
사무용품비	5,372,243	16,907,398	5,437,273	9,368,550
소모품비	10,896,385	28,211,966	4,303,742	9,839,600
지급수수료	245,568,844	499,800,212	364,862,267	558,249,152
광고선전비	136,717,742	278,023,762	51,788,745	70,717,835

78	당반	반기	전반	<u></u>
구분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대손상각비	(29,961,003)	228,132,755	239,178,003	250,063,431
판매수수료	443,027,000	942,898,000	517,191,000	858,381,670
견본비	29,629,642	46,348,715	31,978,064	49,683,768
주식보상비용	19,551,687	66,899,985	50,043,921	75,541,305
무형자산상각비	96,020,295	190,974,572	30,606,904	61,179,522
합계	2,678,163,033	5,665,888,787	2,709,522,876	4,860,346,076

#### 24.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와 전반기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재고자산의 변동	1,261,435	562,936
원재료 및 상품매입액	5,859,591	5,513,701
감가상각 및 무형자산상각	1,043,326	920,941
인건비	3,157,746	2,748,076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615,971	234,385
주식보상비용	76,692	95,018
임차료	119,992	86,178
판매수수료, 지급수수료	1,545,668	1,416,631
기타비용	1,711,209	1,565,301
합계(*)	15,391,630	13,143,167

(\*) 포괄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25.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융수익과 금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반기		전반기	
구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금융수익	36,821,209	44,807,426	42,902,779	82,567,211
이자수익	30,112,639	36,734,010	41,829,491	79,695,895
외화환산이익	(205,615)	_	(105,228)	2,139
외환차익	6,914,185	8,073,416	1,178,516	2,869,177
금융원가	23,859,752	24,857,919	34,351,241	69, 186, 174
이자비용	_	_	32,963,249	65,161,887
외환환산손실	163,610	163,610	(101,837)	1,404,697
외환차손	12,584,652	13,582,819	1,489,829	2,619,590
기타의대손상각비	11,111,490	11,111,490	_	_

### 26. 기타수익과 기타비용

당반기와 전반기 당사의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TE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기타수익	5,574,147	108,528,296	528,904	51,047,940
잡이익	3,029,693	63,983,842	528,904	51,047,940
무형자산처분이익	_	42,000,000	_	_
유형자산처분이익	2,544,454	2,544,454	_	_
기타비용	11,129,148	94,593,226	450	536,340
잡손실	8,972,352	27,044,561	450	536,340
기부금	2,156,796	4,656,796	_	_
무형자산손상차손	_	62,891,869	_	_

### 27. 법인세비용

당반기 및 전반기의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과 법인세비용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반기	전반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477,305,745	(514,625,078)
적용세율에 따른 세부담액	105,007,264	(113,217,516)
조정사항		

구분	당반기	전반기
비공제비용	_	36,895,663
자본에 가감하는 당기법인세	(58,900,652)	_
미인식 이연법인세자산 등	(105,007,264)	76,321,853
법인세비용	(58,900,652)	_
법인세유효세율	_	_

#### 28. 주당이익

(1) 당반기 및 전반기의 기본주당이익 및 희석주당이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당반기 경		전변	반기
7~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기본주당이익(손실)	3.9	6.1	(8.2)	(5.9)
희석주당이익(손실)	3.9	6.1	(8.2)	(5.9)

#### (2) 기본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된 순이익과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78	당반기		전반기	
구분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반기순이익(손실)	345,584,200	536,206,397	(706,639,929)	(514,625,078)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88,585,728	88,441,486	86,626,866	86,626,866

### (3) 희석주당이익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된 순이익과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ПШ	당반기		전반기	
구분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반기순이익(손실)	345,584,200	536,206,397	(706,639,929)	(514,625,078)

78	당반기		전반기	
구분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88,585,728	88,441,486	87,047,866	87,047,866

### 29. 특수관계자

(1) 당반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특수관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회사명				
지배기업	(주)차바이오텍				
관계기업	(주)콘센트릭스솔라코리아				
종속기업	SGN몽골				
0 7 7 8	(주)스카이뉴홀딩스				
	(주)차케어스				
	(주)차메디텍				
기타 특수관계자	(의)성광의료재단 차움의원				
	(주)차바이오에프앤씨				
	(주)차헬스케어				

(2)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78	당반	반기	전반기		
구분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단기급여	78,887,270	157,774,540	43,500,000	119,122,000	
주식보상비용	9,533,079	18,141,694	13,706,180	27,412,360	

당사의 주요경영진에는 등기 임원인 이사(사외이사 포함) 및 감사위원회 위원(감사)을 포함하였습니다.

(3) 당반기 및 전반기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 A DINITI	סון ווורו ר	TI II	어	71.0
특수관계자 	기래내용 	당반기	전반기	과목
(주)차바이오텍	경영자문 용역료	30,589,764	10,026,000	지급수수료 등
	신약사업부 위탁연구비등	137,913,670	_	지급수수료 등
㈜차메디텍	품질관리팀 시약 구입	_	105,856,592	경상개발비
	상품 매입	234,179,872	31,175,000	상품
㈜차케어스	통합그룹웨어 사용	5,449,706	456,009	지급수수료 등
㈜차바이오에프엔씨	직원 선물 구입비	28,354,544	23,408,182	복리후생비
차바이오컴플렉스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87,581,158	_	지급임차료
(01) H21012THEL F190191	매출	34,804,546	30,963,636	제품 매출
(의)성광의료재단 차움의원	차움레트로아 사용료	16,772,727	8,181,819	복리후생비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人 ⊅し게 エリ	71.0	급	액	1110	
특수관계자 	과목	당반기	전기	· 내용 	
(주)스카이뉴홀딩스	단기대여금	108,500,000	108,500,000	종속회사 자금대여	
(주)차헬스케어	임차보증금	20,000,000	20,000,000	서울 본점 임차보증금	
(주)차바이오텍	미지급금	6,730,690	11,028,600	경영자문료	
(의)성광의료재단 차움의원	외상매출금	38,285,000	36,904,323	차움건진의원 매출	
(주)차메디텍	미지급금	111,530,219	64,612,675	시약구입 및 위탁연구비	

##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 (1) 채무증권 발생실적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 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주) CMG제약	회사채	사모	2012.09.28	20,000	3.0	-	2015.09.28	전액상환	-
합 계	1	1	1	20,000	-	_	1	1	-

### (2)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원)

잔여	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계
DI 11=1	공모	_	_	_	-	_	-	-	_	_
미상환 자액	사모	_	_	_	_	_	-	-	_	_
	합계	=	=	=	=	_	=	=	=	=

### (3)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원)

잔여	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0141=1	공모	_	_	_	-	-	-	-	_
미상환 자액	사모	_	_	_	_	_	_	_	_
	합계	-	_	_	_	_	_	_	_

#### (4)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원)

잔여	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계
01/1=1	공모	_	-	-	_	-	_	_	-
미상환 자액	사모	_	_	_	_	_	_	_	_
	합계	_	_	_	_	_	_	_	_

### (5)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원)

잔0:	1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계
01/1=1	공모	_	-	-	_	-	_	_	-
미상환 자액	사모	_	_	_	_	_	_	_	_
	합계	-	_	_	-	-	_	_	_

#### (6)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원)

잔여	I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공모	-	-	_	_	_	_	_	-	_	_
미상환   잔액	사모	_	_	_	-	-	-	_	-	_	_
	합계	_	_	_	_	_	_	_	_	_	_

### (7)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가.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기준일: 2016.06.30 ) (단위:천원, %)

구분	계정과목	채권 총액	대손충당금	대 <del>손충</del> 당금 설정률
	매출채권	15,337,461	3,728,691	24.31
	단기대여금	303,990	25,800	8.49
제16기	미수금	1,220,679	1,157,826	94.85
반기	미수수익	21,053	15	0.07
	장기선급금	3,500,000	3,500,000	100.00
	합계	20,383,183	8,412,332	41.27
	매출채권	15,838,056	3,500,558	22.10
	단기대여금	303,990	25,800	8.49
	미수금	1,167,740	1,146,714	98.20
제15기	미수수익	16,756	15	0.09
	선급금	486,499	-	-
	장기선급금	3,500,000	3,500,000	100.00
	합계	21,313,041	8,173,087	38.35
	매출채권	16,787,073	3,321,706	19.79
	단기대여금	303,990	25,800	8.49
	미수금	1,164,956	1,146,714	98.43
제14기	미수수익	20,404	15	0.07
	선급금	666,828	=	=
	장기선급금	3,500,000	3,500,000	100.00
	합계	22,443,251	7,994,235	35.62

주) 기재된 내용은 K-IFRS 연결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나.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기준일: 2016.06.30 ) (단위:원)

구분	제16기 반기	제15기	제14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8,173,088,054	7,994,236,078	7,614,950,701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_	1,083,081,694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_	1,083,081,694	_
② 상각채권회수액	_	-	_
③ 기타증감액	_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239,244,245	1,261,933,670	379,285,377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8,412,332,299	8,173,088,054	7,994,236,078

주) 기재된 내용은 K-IFRS 연결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다.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개별분석과 과거대손경험률에의한 장래의 대손예상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2016.06.30 ) (단위:천원)

기간	8개월 이내 8개월초과 12개월 이내		12개월 초과 14개월 이하	14개월 초과	
금액	351,391	101,678	33,321	2,800,940	
설정율(%)	5%	29%	49%	78%~100%	

#### 라. 당해 당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기준일: 2016.06.30 ) (단위:천원)

	구분	8개월 이하	8개월초과 12개월 이내	12개월 초과 14개월 이하	14개월 초과	계
금액	일반	12,020,213	346,552	67,835	2,902,861	15,337,461
	백 특수관계인	-	-	-	_	_
	합계	12,020,213	346,552	67,835	2,902,861	15,337,461
구성	성비율(%)	78.37 %	2.26 %	0.44 %	18.93 %	100%

#### (8) 재고자산의 보유 및 실사내역

(기준일: 2016.06.30 ) (단위:천원,%

사업부문	계정과목	제16기 반기	제15기	제14기	비고
	상품	396,430	155,951	225,803	_
	제품	4,691,142	3,313,871	2,497,849	_
	재공품	858,150	1,164,329	1,198,743	_
제약사업부문	원재료	630,156	675,657	885,210	_
	부재료	103,358	142,676	105,497	_
	미착품		3,133	_	_
	소계	6,679,236	5,455,617	4,913,102	_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	11.62	9.64	8.46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	: 100]	11.02	9.04	0.40	_
재고자산회전율(회수)		3.2	3.3	3.0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	재고)÷2}]	3.2	3.3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제16기 반기(당기)	한길우림회계법인	-	-
제15기(전기)	한길우림회계법인	적정	_
제14기(전전기)	회계법인이촌	적정	_

#### 2. 감사용역 체결현황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보수	총소요시간
제16기 반기(당기)	한길우림회계법인	-	65	_
제15기(전기)	한길우림회계법인	반기ㆍ 개별ㆍ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65	752 시간
제14기(전전기)	회계법인이촌	반기ㆍ 개별ㆍ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65	664 시간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16기 반기(당기)	_	_	-	_	_
제16기 단기(영기) 	_	_	-		_
제15기(전기)	_	_	-	_	-
제15기(전기)	_	_	1		ı
제14기(전전기)	_	_	_	_	_
제1 구기(단단기)	_	_	_	_	_

<sup>-</sup> 해당사항 없음

### 4.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은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를 검토하고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 가. 이사회 구성

본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4명으로 상근 사내이사 2명, 비상근 사내이사 1명, 비상근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내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인적사항은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의 "가. 임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나.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 (1)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2)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결의 합니다.
- (3)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 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합니다.
- (4)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 다. 주요 의결사항

회차	JUZIOITI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손태규)	
외사	개최일자	크린대 <del>용</del>	기절어구	참석	찬반
	2016-02-25	제1호 의안: 제15기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참석	찬성
1		제2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가결	참석	찬성
		제3호 의안 :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가결	참석	찬성
2	2016-03-08	제1호 의안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보고의 건	가결	참석	찬성
		제2호 의안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가결	참석	찬성

회차	וודוסודו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손태규)	
외사	개최일자	크인대중	기끌어구	참석	찬반
		제1호 의안 : 제1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불참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불참	-
3		제3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가결	불참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불참	-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불참	_

#### 라.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이사회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마. 이사회내의 위원회 활동 내역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바. 이사의 독립성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선임 관련하여 관련법규에 의거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주주총회에 의안으로 제 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일 현재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직무	성명	선임배경	추천인	상근여부	활동분야 (담당업무)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와의 이해관계
대표이사	이주형	총괄수행	이사회	상근	전체업무총괄	해당없음	-
0171	김상기	경영관리	이사회	상근	경영지원총괄	해당없음	_
0171	윤경욱	경영자문	이사회	비상근	-	해당없음	임원
사외이사	손태규	경영자문	이사회	비상근	경영감독	해당없음	-

<sup>\* 2015</sup>년 11월 6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주형 대표이사 와 김상기 사내이사가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 (1)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는 정관 제47조에 의거하여 1인 이상 2인 이내의 감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현재 1명의 비상근감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3) 감사의 직무와 의무
-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 당사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특별한 내부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 다. 단, 당사의 경우 이사회 소집 및 이사회 의사록 서명날인 또는 서명 시 감사가 참여함 으로서 각 이사와 동등한 경영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다.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명	주요경력	비고
이세원	성광의료재단고문	비상근

주) 이세원 감사는 2015년 3월 30일 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 되었습니다.

#### 라. 감사의 주요 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제1호 의안 : 제15기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1	2016-02-25	제2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가결
		제3호 의안 :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가결
2	2010 00 00	제1호 의안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보고의 건	가결
2	2016-03-08	제2호 의안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가결
		제1호 의안 : 제1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3	2016-03-25	제3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가결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 382조의 2에서 규정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며 "의결권 대리행사"에 의하면,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 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Ⅵ. 주주에 관한 사항

###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T. (10)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성 명	관 계	주식의 '	2016 01 01		증권신고서 제출일		비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차바이오텍 최대주주		보통주	23,211,676	26.29	23,211,676	26.17	-
THI.		보통주	23,211,676	26.29	23,211,676	26.17	_
계 		우선주	_	_	_	_	_

나. 최대주주의 개요

(1) 최대주주명 : (주)차바이오텍

(2) 법인의 개요

### ① 최대주주 법인의 연혁

일자	연혁
2010년 01월 06일	(주)핸슨바이오텍과 흡수 합병
2010년 03월 24일	황영기 대표이사 취임(황영기, 박일 각자대표)
2010년 10월 28일	안티에이징센타 Chaum 오픈
2010년 10월 28일	중국 화빈그룹과 MOU 체결
2011년 01월 25일	전문백신기업 (주)차백신연구소(구(주)두비엘) 인수
2011년 03월 28일	대표이사 박 일 임기만료(황영기 단독대표)
2011년 05월 04일	국내 첫 배아줄기세포 실명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
2011년 11월 01일	스포츠 메디슨 회사 Andrew's 와 MOU 체결
2011년 12월 19일	미국 줄기세포 전문기업 Athersys사와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2011년 12월 29일	[아이코드] 제대혈은행 개설 허가(보건복지부)
2012년 06월 28일	2012년 투명경영대상 우수기업 선정(한국회계학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2012년 07월 20일	양원석 대표이사 취임
2013년 03월 28일	유효성 대표이사 취임(양원석, 유효성 각자 대표)

일자	연혁
2013년 06월 26일	물적분할계획서 승인
2013년 08월 01일	분할 신설법인 (주)씨에이치오, (주)차메디텍 설립
2013년 12월 17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Pluristem Therapeu tics Inc(이스라엘))
2013년 12월 18일	제3자배정((Pluristem Therapeu tics Inc) 유상증자
2014년 03월 31일	인적분할계획서 승인
2014년 03월 31일	최종수 대표이사 취임
2014년 05월 07일	(주)차바이오텍으로 사명변경 및 본점 이전
2014년 08월 22일	차바이오컴플랙스 입주

② 본점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42, 3층

③ 전화번호: 031-881-7400

#### ④ 최대주주 법인의 임원

성명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여부	상근여부	담당업무	주요경력
최종수	1956년 01월	대표이사	등기임원	상근	경영총괄	□삼성캐피탈 기획/홍보 임원 상무 □삼성카드 상근고문
송종국	1960년 07월	사장	등기임원	상근	파라메딕사업본부	□성광의료재단 이사
이수형	1961년 01월	전무이사	등기임원	상근	경영지원/관리	□제일기획 재무, 관리담당 상무 □삼성엔지니어링 구매팀장 상무
김중호	1943년 05월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경영감독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이사
박인수	1942년 11월	감사	등기임원	상근	감사	□성광의료재단경리이사

#### ⑤ 최대주주의 주요주주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구분	주주명	주식수(보통주)	지분율
1	차광렬 및 특수관계인	13,022,698	25.78 %

주) 상기 '주식수 및 지분율'은 2016년 3월 31일 기준입니다.

### (3) 재무현황

(기준일: 2016년 06월 30일 ) (단위:백만원)

	급액	
	자산총계	698,531
재무상태표	부채총계	234,571
	자본총계	463,960
	매출액	216,903
손익계산서	영업이익	24,464
	당기순이익	15,886

<sup>\*</sup>상기 재무현황은 연결기준 재무정보 입니다.

#### (4) 사업현황

(주)차바이오텍은 제대혈 보관 및 공여, 줄기세포연구 및 세포치료제등을 개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 2. 최대주주의 변동 사항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2011년 12월 31일	김원정	1,009,701	2.23	_
2012년 10월 12일	노연호	1,750,000	3.86	_
2012년 11월 09일	(주)차바이오텍	20,000,000	30.60	_

(단위 : 주, %)

#### 3. 주식 소유현황

가. 5%이상 주주의 주식 소유 현황

(기준일: 2016년 06월 30일 ) (단위: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주)차바이오텍	23,211,676	26.17	-
	_	_	_	_
C <sub>T</sub>	- 리사주조합	_	_	_

#### 나. 소액주주현황

주) 변동일 기준 지분율입니다.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구분		주주		보유주4	ш¬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비고
소액주주		14,532	99.98	63,852,425	72.32	_

(단위 : 주)

주1) 2015년말 기준 폐쇄 주주명부 기준입니다.

주2) 상기 기재한 소액주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입니다

### 4. 주식사무

		 제 10조(신주	이수귀)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							
	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아	ll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입	법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l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					
정관상	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의 내용	2. 상법 제542조의 3의 규	P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범위내에서 우리	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							
	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처리 방법은 이사회							
	의 결의로 정한다.							
결산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					
************************************	1. 매년 01월 01일부터 01월 31일까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주주명부	2.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폐쇄시기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주권의 종류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8종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주주의 특전	_	공고방법	전자공고 또는 한국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					

### 5.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원)

	종류		2016-02	2016-03	2016-04	2016-05	2016-06	2016-07
		최고	2,305	3,285	5,120	7,770	8,370	6,180
	주가	최저	1,860	2,060	3,540	5,040	5,140	5,120
보통주		월평균	2,056	2,502	4,114	5,928	6,669	5,715
エラナ		최고(일)	2,121,591	34,328,967	39,430,983	44,323,804	18,237,819	4,934,282
	거래량	최저(일)	344,185	404,124	2,544,856	2,418,877	3,078,003	1,356,973
		월평균	866,152	7,387,108	12,456,901	10,106,345	8,787,687	2,730,883

주) 상기 최고 및 최저가는 종가기준입니다.

#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 (1) 임원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기正글 ·	. 01		들은 언제 /								(리커・干)
				E310101	, L ¬	CICI		소유국	두식수		0171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경부	다 다 접	주요경력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이주형	ەك	1962.08	대표이사	등기임원	상근	전체업무 총괄	□Georgetown Univ. MBA □알보젠코리아 CEO	1	-	15.10.20~현재	2018.11.06
김상기	ĊO	1962.11	시이	등기임원	상근	경영지원총괄	□고려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삼성카드 재무담당 상무	-	-	15.04.27~현재	2018.11.06
윤경욱	ᇷ	1967.02	시시	등기임원	비상근	경영감독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페어차일드 Controller	_	-	12.11.08~현재	2018.03.30
손태규	ᇷ	1956.08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경영감독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美)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언론학 박사	-	-	12.11.08~현재	2018.03.30
이세원	泊	1944.08	감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	□성광의료재단 고문		-	15.03.30~현재	2018.03.30
김제학	山	1961.03	사장	미등기임 원	상근	연구총괄	□서울대학교 약학 □보령제약 중앙연구소장	_	-	13.10.21~현재	-
배원주	ەت	1968.08	상무이사	미등기임 원	상근	생산총괄	□천지산 이사	20,000	_	10.04.13~현재	-
이달영	ەث	1965.02	상무이사	미등기임 원	상근	전략사업	□수원대학교 공업경영학 □스포렉스	ı	-	12.12.10~현재	_
서정법	ەك	1963.12	상무이사	미등기임 원	상근	신약연구	□Wayne State University 유기화학 박사 □ArrayBiopharma 합성신약개발	-	-	14.01.01~현재	-
김병조	늄	1965.11	상무이사	미등기임 원	상근	개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원 □종근당 선임연구원	_	_	14.08.20~현재	-
유윤승	ᇷ	1963.09	상무이사	미등기임 원	상근	영업	□영일약품	8,000	_	03.04.01~현재	-
윤명순	여	1974.01	상무이사	미등기임 원	상근	영업지원	□한국사이버대학교 벤처경영학 □케이엠에스제약 총무부 이사	8,500	-	10.11.01~현재	-

### (2) 직원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천원)

				직 원 수	≥					
사업부문 성별	성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미고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제약 등	남	121		9	_	130	2.90	3,041,737	23,398	_
제약 등	여	58				58	4.59	1,032,205	17,797	ı
합겨	1	179		9	_	188	7	4,073,942	41,195	-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천원)

구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등기임원	4	700,000	_
감사 및 감사위원회	1	100,000	_

#### 2. 보수지급금액

(단위: 천원)

구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3	145,775	48,592	ı
사외이사	1	12,000	12,000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1	0	0	-
à	5	157,775	31,555	_

주1) 해당 인원은 제출일 현재 이사회인원(등기임원)입니다.

주2) 보수총액란에는 2016.1.1~2016.6.30 등기임원이었던 인원에게 지급된 총액을 기재 (퇴사인원 포함) <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_	_	_	-
_	_	_	-

- 해당사항 없음
- 2. 산정기준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丑1〉

(단위: 천원)

구분	인원수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비고
등기이사	1	17,185	_
사외이사	1	957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1	_	_
à	3	18,142	_

주1)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은 당기 손익에 주식보상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丑2〉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원, 주)

부여 관계		부여일	부여방법	주식의		변동수량		미행사	행사기간	행사
받은자	선 게		구여당답	종류	부여	행사	취소	수량	왕사기간	가격
양원석	등기임원	2013.03.29	신주발행	보통주	80,000	_	80,000	_	2016.3.29~2019.3.28	1,631
윤경욱	등기임원	2013.03.29	신주발행	보통주	80,000	80,000	_	_	2016.3.29~2019.3.28	1,631
손태규	등기임원	2013.03.29	신주발행	보통주	10,000	10,000	_	_	2016.3.29~2019.3.28	1,631
강윤현외 78명	직원	2013.03.29	신주발행	보통주	514,000	320,000	138,000	56,000	2016.3.29~2019.3.28	1,631

부여	관 계	부여일	부여방법	주식의		변동수량		미행사	행사기간	행사
받은자	선계		구여당답	종류	부여	행사 취소 수량		수량	용사기신	가격
윤경욱	등기임원	2014.03.31	신주발행	보통주	80,000	-	-	80,000	2017.3.31~2021.3.30	1,065
최준원	등기임원	2014.03.31	신주발행	보통주	25,000	-	25,000	-	2017.3.31~2021.3.30	1,065
김제학	미등기임원	2014.03.31	신주발행	보통주	40,000	-	40,000	_	2017.3.31~2021.3.30	1,065
이달영외 4명	직원	2014.03.31	신주발행	보통주	145,000	-	-	145,000	2017.3.31~2021.3.30	1,065
김제학	미등기임원	2015.03.30	신주발행	보통주	30,000	-	30,000	-	2018.3.30~2022.3.31	1,155
김제학	미등기임원	2016.03.25	신주발행	보통주	30,000	_	30.000		2019.3.25~2023.3.24	2,641

##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 1. 계열회사에 소속된 회사

본 보고서 작성일 현재 당사의 계열회사는 당사를 제외하고 2개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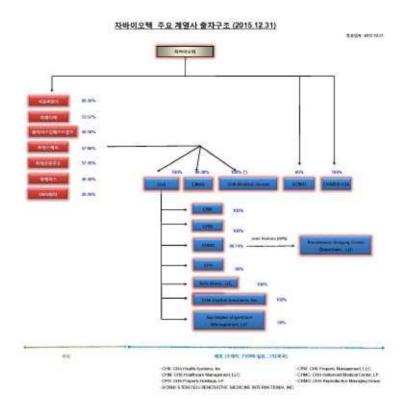
구분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상장	(주)CMG제약 (주)차바이오텍	134-81-71976 135-81-58340
비상장	(주)차헬스케어 (주)차메디텍 Stem Cell & Regenerative Medicine International (주)차케어스 (주)차백신연구소 (주)서울씨알오 (주)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CHA Biotech USA, Inc (주)스카이뉴홀딩스 SGN(유)	220-88-63460 314-86-50515 - 220-81-98242 209-81-25738 119-86-16396 220-88-20194 - 211-88-66269

주1) (주)스카이홀딩스는 당사가 100% 소유한 자회사입니다.

주2) SGN(유)는 당사가 100% 소유한 해외종속회사로 2009년 전액 손상으로 장부가 액이 제거되었으며, 현재 실질적인 폐업상태입니다

주3)Stem Cell & Regenerative Medicine International, CHA Biotech USA, Inc, SG N(유)은 외국법인 입니다.

#### 2. 계통도



계통도

### 3. 계열회사중 회사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

- (주)차바이오텍 : 최대주주

### 4. 당사 임원의 계열회사 임원 겸직 현황

검적	직임원	겸직	회사		
성명	직위	회사명	직위	상근여부	담당업무
		(주)차바이오텍	사장	상근	경영기획/관리
		(주)차헬스케어	대표이사	비상근	경영총괄
	사내이사	(주)차메디칼서비스	대표이사	비상근	경영총괄
		(주)차메디텍	대표이사	비상근	경영총괄
윤경욱		(주)서울씨알오	대표이사	비상근	경영총괄
		(주)차백신연구소	에사	비상근	경영관리
		(주)차바이오메드	에사	비상근	경영관리
		(주)차바이오에프앤씨	이사	비상근	경영관리

검적	직임원	겸직회사						
성명	직위	회사명	직위	상근여부	담당업무			
		(주)차라이브셀	이사	비상근	경영관리			

#### 5.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백만원, 주, %)

HOIR	하는 최도 이고 출자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법인명	최초취득일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스라	스랴   지부유  -	장부	취득(	처분)	평가	수량	1 0	장부	총자산	당기
				수당		가액	수량	금액	손익	75	지분율	가액	동시선	순손익
SGN(유)	2008.02.05	자회사출자	9	-	100.0	-	_	-	-	-	100.0	_	-	-
CXK	2011.01.25	투자수익획득	2,000	5,000	20.0	-	_	-	-	5,000	20.0	-	1	-
㈜스카이뉴홀딩스	2011.09.23	자회사출자	250	50,000	100.0	-	_	-	-	50,000	100.0	_	81	-1
(주)천지산	2012.05.10	현물출자전환	-	174,944	6.7	-	_	-	-	174,944	6.7	_		-
	합계				-	-	_	-	_	_	-	_	-	-

주1) 상기 기재된 내용은 K-IFRS 연결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상기 기재된 CXN은 전기 전액 손상으로 장부가액이 제거되었습니다 주3) (주)천지산은 보고서일 현재 재무제표를 신뢰하기 어려워 재무정보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 IX.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가. 채무보증내역

- 해당사항 없음

#### 나. 대주주 등과의 채권·채무의 내역

(기준일: 2016년 6월 30일) (단위 : 원)

특수관계자	구분	과목	급	<u> </u>	내용	
국구선계사	구근	파득	당반기	전기	ਪਾਰ	
(주)스카이뉴홀딩스	종속기업	단기대여금	108,500,000	108,500,000	종속회사 자금대여	
(주)차헬스케어	기타 특수관계자	임차보증금	20,000,000	20,000,000	서울 본점 임차보증금	
(주)차바이오텍	지배기업	미지급금	6,730,690	11,028,600	경영자문료	
(의)성광의료재단 차움의원	기타 특수관계자	외상매출금	38,285,000	36,904,323	차움건진의원 매출	
(주)차메디텍	기타 특수관계자	미지급금	111,530,219	64,612,675	시약구입 및 위탁연구비	

### 다. 대주주 등과의 자금거래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 대주주 등과의 자산양수도 등

### 가. 영업 양수 · 도 내역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백만원)

계약일자	계약의 종류	계약상대방	관계	거래내용	비고		
게극철자	계약의 중류	ମାକ୍ଷ୍ୟାଷ	선계	대상	급액	0177	
2014년 01월 02일	영업양수 계약	(주)차바이오메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계약상대방의 신약개발사업부 일체	820	-	
	820	_					

#### 나. 자산양수 • 도 내역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백만원)

계약일자	계약의 종류	계약상대방	관계	거래내용		비고
계약결사	계약의 중류	ମାକ୍ଷ୍ୟାଷ	전계 1	대상자산	럡	0174
2013년 07월 09일	자산양수 계약	(주)차바이오텍	최대주주	개량신약 ODF 6개 품목	4,800	_

계약일자	계약의 종류	계약상대방 관계		거래내용	비고	
계약될사	계속의 중류	/ ମସ୍ଟମସ	선계	대상자산	금액	0111
합계						-

### 3. 대주주 등과의 영업거래

(기준일: 2016년 6월 30일) (단위:원)

특수관계자	구분	거래내용	금액		과목	
국구건게 <b>사</b>	구도 	기대대용	당반기	전반기	파크	
(주)차바이오텍	지배기업	경영자문 용역료	30,589,764	10,026,000	지급수수료 등	
		신약사업부 위탁연구비등	137,913,670	-	지급수수료 등	
㈜차메디텍	기타 특수관계자	품질관리팀 시약 구입	_	105,856,592	경상개발비	
		상품 매입	234,179,872	31,175,000	상품	
㈜차케어스	기타 특수관계자	통합그룹웨어 사용	5,449,706	456,009	지급수수료 등	
㈜차바이오에프엔씨	기타 특수관계자	직원 선물 구입비	28,354,544	23,408,182	복리후생비	
차바이오컴플렉스	기타 특수관계자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87,581,158	_	지급임차료	
(이) 선과이근케다 뒤우이의	기디 투스까게지	매출	34,804,546	30,963,636	제품 매출	
(의)성광의료재단 차움의원	기타 특수관계자	차움레트로아 사용료	16,772,727	8,181,819	복리후생비	

### 4. 대주주 등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기타 특수관계자와의 주요거래내역, 채권/채무잔액 및 주요 경영진 보상 내역 등은 'Ⅲ. 재무에관한사항'의 '특수관계자'의 주석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 공시내용의 진행 · 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 (1) 공시내용의 진행·변경상황

신고일자	제목	신고내용	신고사항의 진행사항
2014.06.30	신규 시설투자등	개량신약 생산을 위한 제조설비의 구축	완료

주) 해당 공시건은 2014년 9월 30일 부로 완료되었습니다.

### (2)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건	결의내용	비고
정기주주총회 (2016.03.25)	제1호 의안: 제1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임시주주총회 (2015.11.06)	제1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 1-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이주형) 제 1-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김상기)	원안대로 승인	-
정기주주총회 (2015.03.30)	제1호 의안: 제1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정기주주총회 (2014.03.31)	제1호 의안: 제1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사업목적 추가외) 제3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제4호 의안: 이사선임의 건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정기주주총회 (2013.03.29)	제1호 의안: 제1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상호변경 외) 제3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주총일자	안건	결의내용	비고
임시주주총회 (2012.11.08)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

### 2. 우발채무등

- 해당사항 없음

#### 3. 중요한 소송사건

- 해당사항 없음

### 4.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5.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 (1) 공시관련

- 당사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또는 공시와 관련하여 제재조치 등을 받은 사실 및 한국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2012년 4월 30일

#### 소속부변경

변경내용: 중견기업부 -> 투자주의환기종목(소속부없음)

변경사유: 소속부제외 투자주의 환기종목지정

변경일: 2012년 5월 2일

#### ② 2012년 9월 26일

#### 상장폐지 실질심사관련 매매거래정지

당사(舊(주)스카이뉴팜)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의2의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에 해당되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지정('12.05.02)되었으며, '12.09.26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의 "경영권 변경사실"이 코스닥시 장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제11항에 의거, 상장폐지 실질

#### 상장폐지 실질심사관련 매매거래정지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12.09.27일부터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 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당사 주권은 매매거래정지 조치 되었습니다.

#### ③ 2012년 10월 19일

####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결정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 항 제6호에 따라 동사의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검토하였으며, 투자주의환 기종목 상태에서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체결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 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동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당해 법인에 해당사실을 통보하였으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해 법인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예정입니다.

#### ④ 2012년 11월 9일

####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당사에 대한 '12.11.9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의 주권은 '12.11.12 부터 매매거래가 재개 되었습니다.

#### ⑤ 2013년 4월 30일

#### 소속부변경

변경내용: 투자주의환기종목(소속부없음) -> 중견기업부

변경사유 : 중견기업부 해당 변경일 : 2013년 5월 2일

#### (2) 처벌관련

- 당사가 상법, 법, 외감법, 공정거래법, 조세관련법, 환경관련법 등 국내외의 금융, 조세 및 환경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리베이트 혐의로 인한 제재

당사는 (주)차바이오텍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기 이전 2011년 5월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스카이뉴팜(현 (주)CMG제약)에 대하여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전국 379개 병의원 소속 의사 및 약사에게 청탁의 대가로 총 15.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인하여 2015년 12월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수사단으로부터 전·현직 영업총괄본부장 등 4명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으며 당사 영업사원 1명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원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2014년 11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만원 및 2015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000만원의 처분을 받은 한편, 식약처로부터 13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는 영업사원 등에 대한 교육 강화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전략적으로 우수한 영업인력의 채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한 제품 경쟁력 확대로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License-in(원재료 및 반제품을 매입하여 추가가공을 거쳐 판매하는 방식) 및 Co-promotion(완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통한 오리지널 의약품 판매 역시 확대 함에 따라 리베이트 관련 규제의 영향을 완화하고 영업환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② 지분공시 오류로 인한 제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차바이오텍은 2012년 9월 26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당사(舊 (주)스카이뉴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총 20,000,000주를 취득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 11월 9일 지분취득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 11월 13일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를 공시 하였습니다. 한편, 2012년 11월 13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공시 이전 2012년 9월 26일에 (주)차바이오텍의 특수관계자인 차원태가 당사(舊 (주)스카이뉴팜)의 신주인수권부사채 15억원을 취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차바이오텍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관한 법률 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해석의 착오가 있어 차원태 지분을 포함하지 않고 2012년 11월 13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공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013년 7월 3일에 (주)차바이오텍에 당사 지분취득관련 자료제출요구를 하였으며,이에 (주)차바이오텍은 2013년 7월 18일에 지분공시 오류에 대한 경위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 후 2013년 7월 19일에 정정공시를 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스닥협회에서 주최하는 공 시담당자 전문교육의 참가인원 증가 및 사내 공시담당경력자의 내부교육 강화등의 노력을 통해 위와 같은 공시오류 및 공시누락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3)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6.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사업 명도		2016-01-01	35 a m/s	v = -11			웹 인 명	(4)08	2000年
		2016.10.21	827	검 등 기준검	<b>生</b> 进		arenst.	124-81-	L-T1978
7	ලිසි සි			() 작 보 내 용			() 석합 어부	IB) 작성 어무	
		# A		348 SW	21500年後至三	4182	中心資料	1171	126
				(01) ( No.54 Mo.) (	(04) 848901	(57) 67)	141,594,272	(1)	
	2	O작성방업1.예약	SPORT ARE	(or)	(oe)	(56)	CHERRICA	~~	
	e a			(03) 그밖부시점	(06)	(09)		무석합	
				N N		87,	141,394,273	(N)	
8	# #	会共業分 (の参考の) 公開選集 (等ながら) 開設 人間的、関連と同じ記述が、第三 の参考を (知義等) の出来() のになる)		及 明春時 一 計 第44 (16) ( - 7時之刊(27時間		0.4 98		[18]	(F)
7)	바라			4			N) c(8)	(3)	
22	ž.	(기를 함께도 - 자신품액 6 단역	N 中別)	나 자연속에 17)   869.5 역원)				부산합· (N)	
	10 40	Facil <b>S</b> ales (Alexandra)		- 7회의가에 및 공연 대통 성호출자에 한다 - 지난층의 호합의의 건설적으로 소유한경	마당인 했던의 주식 무료서 회타 <b>속</b> 지자:	등위30%의 1기업이 0	의상적 기술 기술	( ) ( ) ( ) ( ) ( ) ( ) ( ) ( ) ( ) ( )	8
	* 20 %	① 중요가 없이 귀요의 확대 중요요 (102) N.		· 등소가입기에면 시험하고 변호되었으며 다른 3년 기업에 역하는 기업으로서 없는 이 한 소설에 대한 시험한 사는트리아, 자기보다 대한 지난 등에 인접 통하여만에 시험하고 변호되기를 기업에 다른 중소가입기를 (설치기가) 이 나는 기업을 기			M (98) (1) (1) (1) (1) (1) (1) (1) (1) (1) (1	) ## ×	# (K)
	8-th =			G/4위발에 앤트(	13] [		ve:	(数)	
	10.72			unicos de arranant				무석함 (N)	
4	0.48	B+4학교2) 및 확립성요간을 용목할 것		중소리인 업회 이 중 독립에요(2), 10 등 중	주리 시 <u>간으로</u> 되다 목하는지 어무	純江		(r) (v)	6 
7	방이에 요간다. 마를 동시에 충족합성 다녀출력이 100억이 만입을 것 다 그 보다 있는 사람이는 게이스 5학 각 보다 있는 사람이는 중인하는 요간을 충족합성		가, 대출액 (14) 나, 성사 사용하는)	( R989) (4820)	99	NO:	(22)	(Y)	
<b>н</b>			- St 新43 (16) ( - 1至10年時代的 世界715(16) (	, massmas) 4 s		<b>1</b> 65	ty) twi	# (N)	

중소기업기준검토표(2015)

### 7. 직접금융 자금의 내용

(1)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구분	납입일	납입금액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현황	차이발생 사유 등
유상증자(소액공모)	2012.01.04	999	1. 운영자금 : 997 2. 발행제비용 : 2	1. 운영자금 : 994 2. 발행제비용 : 5	발행제비용 증가

(단위:백만원)

### (2)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구분	납입일	납입금액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현황	차이발생 사유 등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2012.09.28	20,000	운영자금 외 : 20,000	운영자금 외 : 20,000	_
유상증자(제3자배정)	2012.11.09	16,340	운영자금 외 : 16,340	운영자금 외 : 7,746	_

(단위 : 백만원)

## (3)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전문가의 확인 】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